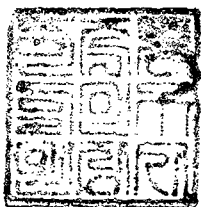


북한인권백서

1996



민족통일연구원

- 이 白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연구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人權情報資料센터

옥 태 환(자료조사실장)
전 현 준(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제 성 호(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최 춘 흠(자료조사실 책임연구원)
최 수 영(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김 병 로(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이 금 순(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손 기 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송 정 호(북한인권정보자료센터 연구원)

序 文

민주주의와 참다운 인권 보장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오늘날 세계사 흐름의 주류가 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 동안 나치즘과 파시즘이 보여준 인간 박해는 인류에게 인권존중의 소중한 교훈을 심어 주었고, 이를 계기로 세계평화와 집단안전보장을 위해 탄생한 국제연합(UN)은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갔다.

유엔에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대적 인권사상을 집약하고 있다. 나아가 유엔이 제정한 「국제인권규약」은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 법규로서 인권존중의 국제화시대를 열어 놓았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연합의 회원국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여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기본적인 인권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 위반국에 대해서는 비난과 더불어 국제적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소련·동구권 붕괴 이후 인권문제는 국제관계에서 점차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인권의 보호·증진을 통한 국제질서 및 평화

의 유지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인 인권존중의 정신과 노력은 우리의 헌법에도 받아들여져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통일방안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7,000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인의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통일된 조국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존중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상의 특수성만을 내세워 국제적인 인권운동을 외면하고 자국민을 탄압하는 사례들이 국제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그런 국가들 중 ‘인권의 사각지대’, ‘인권의 동토’로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를 비롯한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 사회가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행복한 생활을 고루 누리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천부적인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고 있는 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논리하에 오로지 수령과 당에 의해서 부여되고 보장된 ‘공민’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1당 독재체제의 강화·유지라는 일관된 정치적 목표 아래 기본적 인권의 박탈은 물론, 방대한 정보·억압기구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강압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격리 수용하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등 인권침해의 실상은 어느 누구도 쉽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상태이다.

북한사회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이 없는 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은 달성될 수 없으며,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이 전제된 평화통일만이 민족의 번영 발전을 이룩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당원에서는 1994년 12월 「북한인권정보자료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인권 관련 정보·자료를 조사·수집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 각 분야에 대한 연구·분석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첫 결실을 보게 되었다.

본 백서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존엄성과 권리를 향유하는 평화통일의 성취가 우리 민족의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하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아직까지 자료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되지만, 아무쪼록 본 백서가 남북한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사계의

전문학자들과 통일정책 입안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6. 2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목 차

I.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인권개념 / 1

II. 분야별 인권침해실태 / 16

1.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16
2. 정치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37
3. 경제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54
4.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82
5. 여성차별과 인권침해 / 111
6. 환경권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 138

III.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실태 / 161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161
2. 시베리아벌목장내 인권침해 실태 / 187
3.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 200

<부록> 남북억류자 명단 / 217

I.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인권개념

북한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미 국무부,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등이 발간하는 각종 인권보고서에서 대표적인 인권최빈국으로 꼽히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집단주의에 입각,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경제·사회적 행동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인권문제를 철저히 ‘우리식’으로 해석,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최빈국이라는 사실은 세계적 인권단체들이 인정하고 있고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우리가 더이상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북한인권 개선없이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까지도 각종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개선없이 북한내 민주정부 수립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 결과로서 통일은 보다 지연될 것이다. 또한 통일이 달성된다 할지라도 인권피해자들의 복수 등으로 인해 사회안정 유지가 어려울 것이고, 이로 인해 통일의 근본 목적인 한민족의 공동 번영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원만한 통일과 통일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북한인권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한 현실적 개선방안 모색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장에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상황을 최악으로 만든 북한의 체제적 특성, 북한인권실태 등에 대해 고찰한다.

근대 인권문제의 등장배경과 개념화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이고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공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함께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의미에서 기본권 또는 기본적 인권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나치즘이나 파시즘 등에 의해 인권유린과 전쟁의 참혹상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존중을 제국가의 공통된 과제로 제기하였다. 집단안전보장 유지를 위해 탄생한 유엔(UN)은 헌장에서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을 유엔설립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유엔헌장의 인권존중 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 의하여 천명된 기본적인 인권의 내용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유엔총회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이 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B규약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3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은 모두 1976년에 각각 발효되었다.

「A규약」과 「B규약」에 대한 강조점은 체제와 이념적 특징에 따라 다르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B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우선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주의국가에서는 「A규약」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우선을 강조한다. 집단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국가는 개인권리를 철저히 억제하고 집단권리만을 강조하는 반면, 자본주의국가들은 개인의 실리 보호를 더 중시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국가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강조하는 반면, 사회주의국가들은 이를 주권침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김정일은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전무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탈냉전 후 국제사회는 세계적 주요관심사인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개념은 본질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 인권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에게 최고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그 전제로 한다. 둘째, 인권은 그 권리가 국가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유해야 하는 권리로서 인권은 국가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인권이 내포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이지만 정치적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주체사상과 인권개념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을 설명해 주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체사상의 제1 명제는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제2 명제는 사람 중에서도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제3의 명제는 수령의 영도를 받는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결국 주체사상의 귀결점은 수령론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의 주인으로 규정하는데, 사람 중에서도 부르주아를 제외한 근로인민대중만을 세계의 주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나아가 진정한 주인은 '수령의 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근로인민대중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수령론을 그 기본핵심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또한 맑스-레닌주의에서 주장된 집단주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집단의 의사 즉, 수령의 의사에 의해 행동하는 것으로 논리적 비약을 이룩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모체는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이며, 인간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성원으로서 수령과 혈연적으로 연결된다. 당과 수령의 지도하에 조직사상적으로 통일 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인민대중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여 이 집단의 최고 수뇌인 수령의 지시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따를 때만 사회정치적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해 무조

건 충성하는 것이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라고 이론화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집단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에 서의 집단은 사회·국가·당을 지칭하고, 결국에는 수령(김일성)으로 귀결된다. 이것은 수령 김일성의 신격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집단주의적 생활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이것은 곧 ‘생명의 창시자’인 수령중심의 생활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에서 이탈한 자들은 자유주의자로 규정되어 인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수령론의 요체는 수령은 절대자이고 절대적 지위에서 인민을 완벽히 사랑하므로 인민들은 수령의 지시만 충실히 이행하면 행복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령론을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해석해 보면 수령은 인민의 문제를 미리 미리 해결해 주므로 북한내에는 인권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김정일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헐뜯고있지만 진짜 인권유린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에게 정치테러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미제의 사주에 따라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는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인권옹호>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파렴치한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이 반동적지배계급의 반인민적통치수단으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집행됩니다. 우리 인민은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인권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북한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정을 수행하고 있고 따라서 인권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인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할 제도적 장치나 기회는 별로 없다. 만일 인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 집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사회주의의 파괴자로 몰려 인권을 유린당한다. 즉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인 주체적 인간을 통해 공산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김일성만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물인격화된 비주체적 인간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인민들의 인권을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이념이라는 선전은 수

령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가식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수령만이 유일한 인권수혜자가 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 특성과 인권

북한이 현재처럼 인권최빈국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 때문이다.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인 수령론적 유일지배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자연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오늘날과 같은 견고한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의 카리스마 창출과 김정일의 카리스마 전수운동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그의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계우상화, 항일빨치산투쟁 과장, 한국전쟁 미화를 시도하였고 김정일은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였다.

김일성은, 과장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항일빨치산투쟁, 한국전후 복구 및 사회주의 혁명 등을 통해 인민들에게 국부적(國父的)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복종에 의한 체제유지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김일성은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의거하여 국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강제적 측면이 보다 강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강제적 수단이라 함은 심리적·물리적 폭력을 통한 인민들의 자유와 재산, 즉 인권의 구속·제한을 의미하는 바, 김일성은 생명·자유·재산 등의 가치통제를 통해 인

권을 탄압하여 복종자를 확대시켜 왔다.

김일성은 정권초기에 이념적 속성을 지닌 맑스-레닌주의를 북한 내에 이식시키기 위해 투쟁하였고 결국 성공하였다. 또한 그는 스탈린식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원용하여 반대파들을 제거하였다. 김일성은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까지도 자기에겐 충성하지 않으면 부르주아적·개인주의적 ‘품성’의 소유자로 규정하여 제거하였다. 즉 그는 개인적 의견차이까지도 맑스-레닌주의에 반대하고 자본주의로 회귀하려는 반동주의자로 규정, 제거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인간이 유적(類的) 존재로서 근본적으로 집단생활을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고 집단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바, 이것은 김일성의 강제정책을 이론적으로 합리화시켜 주었고, 주체사상이 체계화될 때까지 인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맑스-레닌주의는 1950년대부터 김일성에 의해 자의적으로 수정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소위 ‘북한식 실용주의’ 논리인 ‘주체’가 등장하였다. 김일성은 1955년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김일성과 이외에는 ‘주체주의자’가 아닌 ‘사대주의자’로 지목,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김일성의 주체론은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로 더욱 정교화되었고, 1970년 당규약 전문과 1972년 헌법에 지배이데올로기로 명시되었다. 김일성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주체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주체와 반대되는 입장은 사대주의의에도 개인주의, 종파주의, 가족주의, 좌·우 편향주의, 모험주

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형식주의, 지방제일주의, 연고주의 등 다양하였고, 김일성은 그의 '좌수우수론'(左手右手論 :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밥만 먹으면 된다는 실용주의론)에 입각하여 이러한 예 중 하나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제거 대상을 숙청하였다.

주체사상의 수령론에서 고찰되어지듯이 수령, 즉 김일성은 '신'으로, 김정일은 '신의 아들'로 추앙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은 국가와 동일시되고, 인민들은 이들의 언어행동을 무오류성을 지닌 '성서'로 받아들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천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일성·김정일은 존경의 대상이자 외경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인 김일성이 지녔던 카리스마가 결여되어 있어 자연히 대중적인 지지기반이 김일성에 비해 현저히 취약한 상태이다.

김정일은 후천적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인민들의 욕망과 욕구를 감지하는 능력, 문제점에 대한 저돌적 해결능력, '통이 큰' 결정능력, 예술에 대한 탁월한 감각 등을 소유한 자로서 일상적인 문제를 전투, 투쟁 등으로 전환시켜 김일성처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좌편향적 업무행태를 취함으로써 반대자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여 왔다. 물론 김정일은 혁명후 세대로서 김일성의 강경정책 대신 상징조작과 구호에 의한 동원수단을 창안해 내는 등의 강·온 양면책을 사용, 이중성격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의 구호중심 정책은 인간개조와 사상개조를 중요시

하도록 하였고,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믿도록 함으로써
인민들을 우민화하였다. 김정일은 북한을 주체사상의 기본
논리인 ‘자주와 창조’를 상실한 기계적 인간만이 생존할 수
있는 사회로 전락시켰다. 김정일이 등장한 1970년대초 이후
북한의 인권탄압 정책이 인간개조라는 명분으로 사상탄압에
보다 많은 비중이 주어진 것도 이러한 맥락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정적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들까지도 철저하게 숙청하
는 김일성의 빨치산식 문제해결 방식과 탄압기구의 체계화를
통해 인민을 비인간적으로 통제한 김정일의 조직적 통제가
북한을 현재와 같은 인권최빈국으로 전락시킨 결정적 요인이
었다.

가부장제적 정치문화와 인권침해

유교사상은 한국 고대사회가 중국문화와 교류하는 과정에
서 신라·고려 때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유교사상은 한
반도에 전래된 이래 삼국시대에는 충·효·의·용의 도덕정
신으로 전화되었고 고려 전반기를 통해 사회제도 및 교육제
도로 발전되었다. 또한 유교사상은 충성과 효도를 공동체규
범으로 제시하였고 예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왕
조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채택되었다. 조선왕조시대에는 상명
하복을 요체로 하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배태되었고 왕은 부
모와 동일시됨으로써 왕의 권위는 절대시되고 국민은 이에

복종해야 하는 가부장제적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치문화는 상하간 의리와 위계질서의 중시, 관존민비사상, 순종의 미화, 국가와 지도자의 동일시, 가족주의의 중시, 사대주의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정치문화적 속성 때문에 구한말 개화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화를 거치지 못하고 일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제는 신격화된 천황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다. 천황에 대한 불복은 곧 신에 대한 불복으로 등식화되었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탄압이 가해졌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일제는 식민통치에 유리한 유교적 복종문화를 발굴·교육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맹아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특히 일제는 한국민을 사리사욕에 입각한 당파싸움에만 열중하는 열등민족으로 비하시켰고 ‘우등한’ 천황의 지도에 의해서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우민화교육을 반복함으로써 한국민들의 자율능력을 상실케 조장하였다.

한편 해방후 북한에는 남한과는 달리 맑스-레닌주의에 근거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가 수립되었다. 김일성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스탈린식 독재로 변형시켜 반대자를 억압하고 인민을 탄압하는 이론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김일성은 소수의 유산자에 대한 다수의 무산자들의 ‘독재’를 통해 평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영원한 천국인 공산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 이론을 동원, 죄없는 유산자들을 처형하고 개인적 원한에 의한 살상까지도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을 동원하여 합리화하였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이

김일성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시켜 주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김일성은 권력유지를 위해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국민의 복종적 정치문화와 접목시켰다. 그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지배윤리였던 '혁명적 의리'를 매우 중시하였고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주장하여 국가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규정하였다. 즉 김일성은 국가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상정하고, 자신을 '국가의 아버지'로, 김정일을 장자로, 인민을 가족으로 치환(置換)하였다. 그는 정치적 통치행위까지도 부모와 자식간에만 형성될 수 있는 '육친적 배려'를 강조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자신과 부모를 동일시하도록 하였다. 육체적 생명을 준 아버지와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수령을 동일시하도록 의식화함으로써 부모의 책망을 감수하듯이 수령의 책망을 감수하도록 하고, 부모의 약점을 비난할 수 없듯이 수령의 약점을 비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김일성은 인민들의 사상개조를 통해 충성과 효성을 최고선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고 '충성동이', '효성동이'가 되는 것만이 인간의 최고목표라는 허위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김일성은 가부장제적 정치문화를 이용하여 세습까지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인 김일성이 장자인 김정일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기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민들은 세습체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들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도 일체의 반항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항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분단구조와 인권침해

북한은 자본주의체제인 남한과 경쟁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함으로써 한반도 내의 정통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데 두어져 왔다.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외교 목표는 남한을 고립화하고 그것을 점령 내지는 자체 붕괴하도록 유인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도자들은 어느 일부분에서라도 남한보다 낙후되면 한반도에서의 정통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동원'체제, '철통'체제를 통한 대남한 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남 군사·경제·외교적 우위의 확보는 김일성정권의 최대 현안이었고, 이를 위해 김일성은 남한과의 경쟁에서 '완전' 승리할 때까지 정치적 부자유와 경제적 궁핍을 인내하도록 인민들에게 사상교양을 실시하여 왔다.

한편 남한체제도 북한 인권통제 정책을 상승시켜 주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정권은 북한정권의 성격과는 반대되는 자본주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을 '해방'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남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그런데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시작한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의 심화로 최근 북한은 '붕괴 콤플렉스'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북한의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콤플렉스는 북한인권을 유보시키는 주요 요인

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 또한 북한 인권탄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이념을 발전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있는 남한은 고도성장 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빈부격차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적 요소들은 남한이 ‘악의 소굴’인 것처럼 북한 지배자들에 의해 과대 선전되고, 이것은 북한 인민들에게 실상으로 각인되어진다. 즉 북한주민들은 남한을 기아와 범죄, 부패, 부자유 국가의 표본처럼 인식하고 있고, 남한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인권유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남 인식이 북한 인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을 갖게 함으로써 정치적 나르시즘에 몰입되도록 하여 독재에 대한 항거의식을 마비시키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오늘날 북한인권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사회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비인도적인 법체계가 성립되었다. 둘째, 정치적 권리는 전무한 상태로 체제유지에 필요한 집회 이외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불평조차 허용되지 않는 암흑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북한주민들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의·식·주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북한주민들은 철저히 계층화되어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사회통제가 일상화되어 있

다. 다섯째, 여성에 대한 차별이 보편화되어 있다. 여섯째,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인간의 삶의 터를 황폐화시켰다. 일곱째, ‘특별독재대상구역’과 같은 수용소제도가 발달되어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이 인권최빈국으로 전락한 결정적 이유는 김일성 부자 때문이다. 김일성이 정권 확립을 위해 동원한 테러와 숙청은 그 방법에 있어서 비인간적이었고 대상 선정면에 있어서도 부도덕하였다. 즉 숙청대상자들에 대한 처벌방법은 대부분 사고나 자살을 위장한 테러를 사용하였고, 대상자도 소위 그들의 ‘빨치산 동료’ 뿐만 아니라 친·인척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비인간성을 노정하였다. 그 결과 구소련, 동구 등에서 보였던 최소한의 반체제 활동은 물론 그 징후조차도 북한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은 인권문제는 없고 평등사회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 ‘지상의 낙원’인지 또는 지상의 지옥인 ‘인권 사각지대’인지 부문별로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분야별 인권침해 실태

1.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북한법의 특징

북한의 법과 제도는 근본적으로 규정이나 형식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법제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상의 규정만을 보아서는 자유민주주의 법과의 차이점이나 인권침해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해석보다 북한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북한에서 법의 주체는 주민(공민)이 아닌 노동당이며 법의 본질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법이란 형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모든 법은 궁극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직시할 때만이 비로소 북한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북한에서 최고 규범성을 지니는 것은 이른바 ‘김일성의 교서’와 ‘김정일의 말씀’ 및 ‘당의 사법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법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국가주권의 법입니다”라고 말하여 법의 계급성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북한에서는 사

회주의체제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요소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일반(특히 형사법)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예리한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법의 노동계급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서구 자유민주주의국가나 기타 사회주의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에서는 제정된 법의 수가 적다. 김일성교시나 노동당정책이 법규범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교시나 정책이 법이 규율하지 않은 부분의 주민생활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북한은 법치국가라기 보다는 ‘교시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소위 ‘사회주의법무생활’이나 ‘혁명적 준법기풍운동’이라는 것도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수령과 당을 위한 정치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사회학에서 말하는 ‘죽은 법’(dead law)과 ‘살아있는 법’(living law)이란 표현을 빌린다면, 북한에서 법률은 장식물과 같이 죽은 법이요, 주석의 교시, 노동당 정책이 진정 살아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의 각종 성문법이라는 것은 ‘주체적’이라는 이름 아래 자세하고 복잡할 필요도 없고 그저 적당히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 즉 법의 장식적 성격이 북한에서 법이 차지하는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법과 인권과의 관계

북한헌법(1992년 4월 9일 개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노동당의 결정이 헌법에 우선하는 상위규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여 노동당은 김일성의 교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교시를 최고 상위규범으로 하고 다음으로 노동당의 결정이 있으며 헌법은 노동당결정보다 하위규범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물론 형법 등 일반 법률까지도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헌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조문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 바, 실제의 법규정과 법현실간에는 엄청난 괴리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당정책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인 북한헌법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하는 인권이 아니라 인권이 집단·전체의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인민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계급적 인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 예컨대 민족반역자, 반혁명분자 등

북한체제 전체를 위하지 않는 반동분자들에게는 인권이 인정·보장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생활원칙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이나 인권은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다.

북한식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인권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의 국가·사회에 대한 우월적 지배 내지 당적 지도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따라서 행정과 사법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법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3권 분립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음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적어도 공민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 그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고, 현실적 실현이 물질적으로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민은 평등한 조건에서 사회적 생산과 분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이 확대·발전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사실상 하나의 허구이며, 헌법상 인권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하나의 프로그램적·장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은 인권의 성격을 자연권 보다는 국가 내적인

것, 즉 국가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실정권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의 존립목적이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실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인권이 진정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북한헌법상 인권은 어디까지나 프롤레타리아독재권력에 의해 인정을 받는 시민 또는 공민이 향유하는 ‘공민의 권리’(Bürgerrechte)라는 점에서 개인의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한 ‘인간의 권리’(Menschenrechte)를 의미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인권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특히 인권은 집단 내지 전체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민의 권리는 곧 의무’라는 논리에 의해 북한의 인권은 의무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서로 결합하고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인권과는 달리 북한에서의 인권과 의무는 국가권력 작용과 병행하는 권리 및 의무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상의 인권은 곧 동일한 내용의 의무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국가에 대항하는 개인의 방어수단으로서의 인권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된다.

한편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주의 준법성 내지 준법교양을 강조하는 등 북한당국은 법을 통한 주민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부에 의해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공산주의국가인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만이 인권을 진정으로 보장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개인을 전체조직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공민으로서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권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여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인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최대한 존중·보장해야 한다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소위 천부인권개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헌법과 인권침해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당시 헌법은 아직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북한은 그동안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기반으로 1972년 소위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92년에 구사회주의헌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북한이 난국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은 그동안의 대외적인 상황의 변화, 즉 구사회주의권의 붕괴, 북한의 가중되는 경제난, 외교적 고립 심화, 김일성의 건강과 권력승계에 대한 대비 필요, 외부사조 유입에 따른 주민들의 사상이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이를 타개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63조는 인권보장의 대전제로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집단주

의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헌법 제82조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집단주의는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은 공민의 권리를 집단주의원칙에 종속시킴으로써 공민의 권리 행사는 그러한 원칙에서 일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민의 권리는 집단 내지 전체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여기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된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것이 생활원칙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이나 인권은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주민의 충성을 강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배제할 의무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인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헌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권리 보장만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고, 권리의 침해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북한헌법에는 이른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제도가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집단주의원칙에 의한 권리 관념

을 바탕으로 하여 평등권, 참정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기타 여러 가지 권리들을 북한헌법은 열거하고 있지만, 이들 권리가 국가에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권리의 침해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국가권력에 의한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보장만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주민의 권리는 단순한 이익개념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개정헌법 제69조 2항에서는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우리의 청원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신소와 청원을 할 경우 제기된 신소·청원을 조사하여 해결해 주는게 아니라 신소한 자를 불평·불만자로 몰아 세워 벌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신소와 청원권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결국 북한헌법상 인권규정은 그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다분히 ‘장식적 헌법’(semantische Verfassung)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법과 인권침해

1987년 형법은 형법의 제정목적을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조). 그러나 다른 한편 형법 제4조는 형법의 임무에 대하여

“주석을 보위하고, 혁명노선을 옹호하며,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함에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형법의 목적이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체제 구축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북한형법의 계급적 본질과 임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형법이 사회주의체도를 부정하는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실시하고 김일성 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가장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되므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입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북한형법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수단이자 김일성 부자를 보위하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형법이 1당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수호를 위한 법임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형법은 체제수호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고 가혹한 형벌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세력을 철저히 억제하고 있다.

북한은 범죄를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제9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 형법학자 김근식이 저술한 「형법학」(1986)에 의하면, 형법은 “반혁명분자들을 진압하고 일반범죄자들의 제재를 목적으로 한 범규범의 총체”라고 정의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형법의 주목적이 처음부터 정치범의 처벌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는 “이 범죄와의 투쟁에서 노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제2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형법의 기본정신이며 원칙이기도 하다.

북한형법은 ① 형법의 기본(제1장), ②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제2장), ③ 반국가범죄(제3장), ④ 사회주의경제 침해범죄(제4장), ⑤ 사회주의문화 침해범죄(제5장), ⑥ 국가의 일반행정질서 침해범죄(제6장), ⑦ 사회주의적 공동질서 침해범죄(제7장), ⑧ 국민의 생명·재산 침해범죄(제8장)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형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원칙인 법치주의 원리를 무시한 가장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즉 전술한 형법 제9조의 규정에서 보듯이 범죄행위를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0조에 “범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동일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그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그

책임의 기초와 범위 및 형벌을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추해석을 허용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범죄인으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형법에 있어서 개개의 형법조문은 범죄의 예시에 불과하여 사실상 형법조문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사회주의 제도나 노동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범죄로 변화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하여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북한형법에서는 범죄를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범죄를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 내지 전체(즉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형법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소급효를 인정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형법 제42조에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인은 죽는 날까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비·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형법 제15조에는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해서는 기수범과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는 “범죄를 부추긴자와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정범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김일성 부자를 비방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의 조항 및 제105조에 따라 무조건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여 사형이나 전재산 몰수형으로 처벌한다.

다섯째, 은닉법, 불신고법, 방임법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제54조, 제55조), 반국가범죄의 경우 이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형법의 반인권성 및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업무상 실수로 잘못 설계하거나 시공하여 불합격품을 만들어 내거나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도 제65조, 제78조, 제79조 및 제86조에 의거하여 가혹하게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생활질서범까지 형법 제80조부터 9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일곱째, 북한형법 제21조에는 형벌의 종류를 첫째 사형, 둘째 노동교화형, 셋째 선거권박탈형, 넷째 재산몰수형, 다섯째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북한 형벌의 특징은 반국가범죄의 경우 '0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의 '00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는 식과는 대조되는 중벌위주의 형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일단 형을 선고받은 자는 무한정 노동교화소를 벗어날 수 없는 인권 무시적 형벌체제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형법은 각종 범죄행위를 규정하면서도 주민 개 개인의 인권보장적 측면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



중한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 내지 주민계도의 측면만을 중시하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 특히 반국가범죄에 대해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북한주민에 대해 반국가범죄에 관한 예방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북한이 전체주의적 질서유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과 인권침해

북한은 1992년 1월 1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을 선언하고(제4조), 과학적·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형사사건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및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한편(제35조, 제36조),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에 신중성을 강조하는(제11조) 등 구법보다 인권보장 측면에서 외형상 진일보한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적 요소가 개정 형사소송법에도 상존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수사관과 예심원들의 증거조사, 구속처분, 수색·압수 등의 강제처분시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제40조, 제100조, 제111조, 제129조). 다만 구속처분결정에 따른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압수할 때에는 각각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속처분결정서나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하도록 하여(제107조, 제132조)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사기관인 검사에 의한 통제에 불과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재판소가 사법적 억제기능을 하는 영장제도와는 그 본질이 다른 것으로서 실질적인 인권보장장치로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재판소의 통제수단 미비는 북한 형사소송법이 인권보호보다는 수사의 효율과 통치의 편의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대중이 여러 형태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중의 광범위한 관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취급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고 하고(제2조), 재판소는 군중에 대한 각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지재판을 조직·진행하며, 이 경우 노동자·농민 대표에 의한 범죄자의 죄행의 폭로·규탄을 가능하게 하였다(제179조, 제230조).

이처럼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주민을 재판심리에 관여토록 한 것은 전근대적인 인민재판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에서의 형사소송절차가 구체적 진실의 발견 절차라기 보다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정치적 색채가 짙게 반영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를 위한 인민에 대한 교양 및 개조, 체제반대 행위에 대한 일반적·심리적 위협, 당의 사법정책의 확립 등을 위한 수단으로 보

는 데서 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재판소들(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간에 제1심관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도·직할시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당해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으며(제181조), 중앙재판소도 필요에 따라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지게 되어(제184조) 세 재판소가 모두 제1심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의 관할사건을 임의로 이송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상소권은 쉽게 박탈될 수 있다. 이는 재판관할제도가 인권보호보다 법집행기관의 자의성이 개재될 위험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넷째, 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에 해당하는 정치범에 대해서는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예심하도록 하고(제74조), 도·직할시재판소를 제1심관할로 정하여(제181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기관이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첩이나 반당·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치범죄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가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유린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1992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이 유일한 증거일 때 당해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기는 하나,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고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철저하게 밀실수사가 행해지는 등 인권옹호에 소홀한 북한의 수사절차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기 보다는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구현하고 노동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비민주적이고 비인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 형사절차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제도와 인권침해

북한의 재판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인권침해의 요소를 안고 있다.

개정 헌법은 제6장 제8절에서 재판소와 검찰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59조에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의 독립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재판 및 검찰기관에 관한 규정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인 재판 및 검찰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높이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 내지 보장하는데 있다. 실제로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및 당의

교시를 강령시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무기로서 재판 및 검찰제도의 기능을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북한의 재판제도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개정헌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

첫째, 북한의 재판소는 통상 판사 1인과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여(개정헌법 제156조, 재판소구성법 제31조) 이른바 인민참심원제도를 두고 있다. 인민참심원제도에 대해 북한은 인민정권의 본질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선전하지만, 사실 이것은 재판소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인민참심원은 비법률가이며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재판에 참여하며, 재판의 판결 및 결정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다수결에 의하도록 하여(재판소구성법 제39조) 사실상 당의 정책에 따른 재판의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자격에 관해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의 사법정책이 당의 정책에 기초한다고 한다는 점에서 당성이 바로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자격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재판을 통해 법의 객관적 타당성이나 인권보장을 구현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에서의 재판기관은 국가기관 체계상 최고인민회의,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을 상부구조로 하여 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북한

의 재판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의 사업지도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제대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만큼 인권침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다.

사회주의헌법은 제120조 3호에서 중앙인민위원회가 사법기관 사업을 지도하도록 하고, 제160조에서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 헌법 제161조에서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지도록 하고,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는 사법행정상의 감독과 재판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써 재판소의 직무상 독립을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헌법은 제91조 12호에서 중앙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소환되도록 하고, 제101조 9호에서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소환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36조 7항에서 해당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소환된다고 하였다. 사법기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채택했다는 판사의 선거제 및 소환제도 운용의 실재를 보면 노동당이 사실상 지명한 단일후보만이 판사로 피선될 수 있고, 또한 판사소환의 경우에도 소환사유가 법규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노동당 자의로 소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판사가 당의 정책에 위배되는 재판을 할 경우 노동당이 이를 이유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에서 판사

의 선거 및 소환제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개정헌법은 제157조에서 재판의 공개원칙을 정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판소구성법은 제32조에서 국가 및 군사적 비밀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법에 정해진 경우에는 재판소의 판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예외적인 비공개재판의 개념을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다섯째, 북한형법이 제129조에서 부당한 판결·판정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구형법 제184조에서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위협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재판소의 직무상 인사상 독립성을 침해하는 제도는 결과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재판소는 단적으로 당과 국가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음(재판소구성법 제1조)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상황 아래 북한에서 재판의 독립이란 원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를 위해 복무하는 사법제도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규정상으로는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보완하는 우리의 변호사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서구 자유민주주

의국가들의 변호사와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

우선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영업자라기 보다 당의 지도를 받는 변호사회의 직원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은 북한의 변호사제도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명목상 변호사들이 변호사회의 업무배분에 따라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주민들에 교육하고 선전하는 일종의 정치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변호사는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에게 정확하게 침투되어 실시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피의자가 범한 범죄혐의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요컨대 북한의 변호사는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인권보장을 실현하는데 조력을 제공하는 자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를 위해 복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감시·억제하고 형사절차상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변호사기능을 기대하기란 거의 어렵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이라는 개념대신에 공민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것은 정치적 개념으로서 일정한 체제를 인정하고 생활하는 인간만이 인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그것도 철저히 집단주의에 종속시키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는 개인이익이 아닌 전체 집단 또는 그 집단의 대표인 김일성·김정일의 이익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국가 내적인 실정권으로서 상대화되어 있는 인권의 범위와 실현 정도는 당의 이익에 따라서 측정되며 당의 지도적 의사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법의 정치 종속성 내지 당정책의 구현을 위한 도구적 측면은 헌법을 위시하여 형법, 형사소송법 및 재판제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법과 제도가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북한에서 참다운 인권보장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인권문제, 특히 북한의 법과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부단히 제기하고, 북한이 이러한 법제의 개선에 호응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정치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선거권 · 피선거권 침해

북한은 헌법 제66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연령을 만 17세 이상의 일체 공민과 군대에 복무하는 자에게 부여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박탈당한 자 및 정신병자 등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좌형벌에 의한 선거권 박탈이나 후보 추천과 등록, 투표방법 등에서 보면 북한에서의 선거 및 피선거를 통한 주민의 정치참여는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의 선거는 단지 대내적으로는 노동당에 대한 인민의 신임을 확신시키고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고시하기 위한 선전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후보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의해 지명되며 거의 100% 투표에 100% 찬성표가 나온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주민은 통치권자에 대해 반대도 기권도 할 수 없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해외출장이나 의식불명인 환자는 당세포나 부모형제가 대리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투표순서도 투표용지에 적혀 있는 일련번호 순서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다 투표하여야 하며 투표방법도 당원이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고 있다. 1991년 11월에 귀순한 장

기흥에 의하면, 투표용지에 아무런 기표도 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것이 찬성투표이며, 반대투표를 할 경우 별도의 기재를 요하기 때문에 발각될 소지가 많으며, 발각될 경우 강제수용소행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투표불참 역시 '수령에 대한 반대'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은 투표에 불참하는 것조차도 생각해 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의원 후보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역시 당에서 사전에 선정한 한 명의 입후보자를 찬·반투표로 결정토록 하고 있어 북한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피선거권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렇게 결정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조차 거수로 투표를 하고 있어 북한주민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통한 인권보장은 전무하다.

집회·결사의 자유권 침해

북한헌법 제67조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결사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적 소요행위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은 가맹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당의 외곽조직으로 존재하며 대중의 사상교양 선도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 교육기관,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하게 되어 있어, 노동당은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상호감시, 비판, 계도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사상과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있다.

1993년도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정부의 허가없이 대중집회를 열 수 없다. 정부가 만든 조직 외에 알려진 것은 없다. 이웃간 모임이나 동창회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조차도 금지한다. 각종 직업적 동맹이 이들 구성원에 대한 정부통제의 수단으로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부 불만을 가진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집회·결사를 행하고 있으며 체포되면 중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귀순자 윤용의 증언에 따르면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유학생들을 소환하여 사상검토를 한 후 전국 각지의 대학 등에 이들을 분산 배치하였는데, 1991년 5월 김일성대학에 배치된 학생들이 출신 유학국가별로 연계된 반체제활동을 주도하다 국가안전보위부에 전원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그가 다니던 청진 광산금속대학에 배속된 체코 유학생 출신 김동국(당시 30세)이라는 학생도 이 사건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권 침해

북한은 언론매체의 역할을 노동당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을 인정하고 있어 언론매체가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 및 각 민주국가의 헌법이 공히 언론의 자유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출판물 역시 사상교양의 전달수단으로만 인정하여 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직접 관장하고 검열·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67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언론은 노동당의 대변자로서 대중선동, 대중조직, 대중비판 및 폭로의 기능만을 가지며, 각종 출판물도 김일성·김정일 치적이나 정부선전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출판물의 내용은 반드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를 지지하고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혁명적 원칙 등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출판은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뿐이다.

귀순자 김성은 순수문학작품을 출판했다가 비판을 받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는 1984년 봄 해군으로 근무하던 당시 바닷가 초소에서 난생 처음으로 본 해당화꽃이 해풍속에서 곱게 피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 시 한편을 써서 조선인민군출판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상급정치부에서는 이

시가 사상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그는 결국 당의 비판도 받았다

어떤 작품을 쓰던지 간에 최종적으로 당 선전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북한주민이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출판할 경우, 북한당국은 형법 제46조의 '반동선전선동죄'라는 독소조항을 이용하여 사형, 전재산 몰수, 강제노역 등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반동선전선동죄는 당과 국가로부터 인민대중을 이탈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 및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치적 범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출판물에서 노동당이나 김일성 부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모두 이 조항에 저촉이 된다.

북한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부자에 관한 기사는 신문의 1면에 게재되며 김부자의 이름은 별도의 굵은 활자로 인쇄된다. 기사의 내용은 모두가 주민들에게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당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동시에 남한과 미국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북한은 통신수단의 통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사회안전부는 이를 3개월마다 1회씩 검열한다. 만일 봉인이 뜯겨져 있으면 주민이 남한방송이나 외국방송을 허가없이 청취한 것으로

로 간주하여 정치범으로 중벌한다. TV의 경우에도 휴전선 일대에는 채널을 고정시켜 놓았으며, 국경지역에서는 중국의 TV방송까지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언론의 접근도 통제하고 있다. 1994년 2월에 발표된 미 국무부의 「'93 각국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북한관련 모든 뉴스를 통제하고 있고, 일본 언론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며, 북한에 비판적인 기사를 싣고 있는 러시아 언론인도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을 취재하려는 외국 언론인들에게 북한당국과 안내원들은 북한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때로는 ‘보고 들은 대로만 쓰라’고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강요하기도 한다.

이처럼 북한주민들의 외부방송 청취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어 주민들이 세계의 정세변화에 무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욕구를 키우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윤웅의 증언에 의하면 1992년 4월 함경북도 청진경기장에서 개최된 ‘4·15 축구경기’ 관람 도중 청년 1명이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김정일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자유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전단 300여 매를 살포하다 현장에서 국가안전보위부원에게 체포되어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당하여 즉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언론역할을 하고 있는 유언비어, 즉 ‘비통’(비밀통신)을 통해 국내사정 및 남한사정 등

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선전내용에 비판을 하는 것은 간첩행위로 간주된다. 가장 극적인 예로 시인이자 번역가인 알리 라메다(Ali Lamed)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베네주엘라의 공산주의자로 1966년 평양의 한 기관으로부터 번역자로 초청받았다. 그는 북한의 선전내용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선전의 경우에는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가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6년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다.

청원 또는 신소할 권리 박탈

청원이란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 업무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제기하는 의견을 말하며, 신소란 국민들이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미흡한 점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이나 단체에 제기하는 의견을 말한다. 그리고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의 청원권 역시 헌법이나 형법으로는 규정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69조는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127조는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신고와 청원을 할 경우 제기된 신고·청원을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게 아니라, 신고한 자를 국가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전부에서 팔적조사를 통해 색출하여 불평불만자로 몰아 벌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나 청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신고자가 밝혀지면 “무엇때문에 신고를 하였는가? 왜 수령님께 근심을 끼쳤는가?”라는 식으로 심문하고 있어 주민들은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신고의 내용이 국가의 정책이나 지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형법 제103조와 105조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다. 103조는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흑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집단적 시위, 청원행위를 금지하였고, 제105조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여 항의나 신고를 불법화하고 있다.

귀순자 김운학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친구 김덕철이 1988년 2월말 경에 중앙당 신고과에 “공화국 경제정책이 현실정에 맞지 않으며 경제발전을 하려면 개인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비밀투서를 하였다가 얼마 후 팔적조사를 통해 검거되어 행방불명되었으며, 그의 조모, 가족, 삼촌 등 일가족도 통제구역으로 추방된 바 있다고 한다.

정치적 조직에 의한 통제

북한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로서 주민들의 생활이 철저히 통제되고 집단주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나라이다. 통제를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억압기구들이다.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북한헌법 제11조)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노동당은 절대적인 영향력과 지도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중추이며 국가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이다. 노동당은 거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인민대중들은 노동당이 결정한 노선과 정책을 준수하면서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피라밋식 위계질서와 당구조하에서 하급당조직이나 하급당원들은 상부의 결정과 지시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다. 당원들은 모든 기관, 단체, 직장에서 핵심적인 정치요원으로 기능하고, 일반 주민들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으로 주민을 동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독자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서구사회의 이익집단과는 달리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일반 주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하급당조직을 보면, 최

하 기층조직으로는 당원 5~30명으로 구성되는 당세포가 있다.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며 당주위에 대중을 결집시키고 대중속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당의 전투조직이다(당규약 41조). 당세포조직은 주로 생산단위를 바탕으로 초급당조직, 부문당조직, 시·군당조직 등으로 확대된다. “모든 당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당규약 11조)는 원칙에 따라 당정책 수행여부를 감시·통제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당원과 인민대중들의 생활 및 사상교양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집행해 나간다.

한편 당기구 중 당간부와 당원들을 비롯하여 정당 및 사회단체, 전체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는 부서는 노동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이다. 1974년부터 김정일이 장악하기 시작한 이 부서는 5개부로 나뉘어 국가 전기관과 해당분야의 당조직을 ‘3선(당조직계통, 행정계통, 보위부계통)·3일보고 통제체제’를 통해 지휘·통제하는 바, 구체적인 임무는 당생활 지도와 간부들의 인사를 관장하며 간부들의 사생활을 파악하는 등 두 가지이다. 또한 노동당 비서국 선전선동부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간부와 주민들을 재무장시키고 일체의 잡사상을 차단시키는 사상개조사업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상적 통제기구이다.

주석의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일성·김정일체제 유지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1974년 2월 ‘사상부문일꾼 강습회’에서 김정일이 작성해 발표했다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 대칭되는 10가지 범법규정을 마련하여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왔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사회안전부내 정치보위국으로 유지되다가 1973년 2월에 국가정치보위부로 독립되었다. 그 이후 1982년 국가보위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3년에 국가안전보위부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직은 부부장 7명에 18개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각 시·도·군에 지방 보위부를 설치하고 있고 군대 내에도 보위지도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 기구는 소위 반당·반체제 주모자 색출·검거, 특정지역내 잠입·부식된 간첩 색출,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남한 정보 수집·분석, 국경경비와 치외법권 지역 감찰, 일명 '종파분자' 및 정치범들의 특별관리 등을 비롯하여 간부와 일반주민들의 상시 동태를 파악하여 유사시 변절자와 지지자를 선별하는 '사상사찰'의 전담기관이다. 노동당은 국가안전보위부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며, 사회안전부는 업무수행에 있어 국가안전보위부에 절대로 협조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원칙적으로 김정일의 지시 아래 중앙당 조직지도 1부 제7과와 당 위원회의 지휘통솔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당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에 사찰의 손을 뻗치고 있고, 북한주민들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로 인한 공포심에서 체제비판은 물론 생활상의 불평조차 표출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복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사회안전부는 표면상 치안유지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체제를 떠받쳐 온 북한 최고의 버팀목이었다. 북한정권 수립 당시인 1948년 내무성 산하의 일개국으로 출발했던 사회안전부는 1951년 사회안전성으로 분리·독립한 다음, 1952년 10월 다시 내무성으로 흡수되었다. 그 후 1962년 또다시 사회안전성으로 분리된 후 1972년 신헌법 채택과 함께 사회안전부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안전부는 해방 직후부터 당시 일제잔재와 지주세력을 청산하는데 앞장섰고, 그 후 남로당계, 연안파, 소련파 등의 숙청에 최선봉 역할을 담당했으며, 1961년 4차 당대회 이후에는 독립된 부서로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노동당의 직명'으로 정치사찰을 폈다. 이러한 이 조직의 '악명'은 1973년 국가안전보위부가 정치사찰 기능을 분리해 갈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안전부는 국가치안을 담당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구로서 사회안전철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대주민사찰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즉 이 기구는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체의 요소를 적발, 제거하고 전체 주민을 김일성·김정일 1인 독재체제하에 순종케 하기 위한 주민탄압기능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사회안전부는 정무원의 한 부서로

서 중앙기구로는 사회안전부와 부직속기관, 도에는 사회안전국과 도직속기관, 시·군에는 사회안전부, 각 리단위에는 리분주소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공장, 기업소, 군에도 안전지도원이 파견되어 있다. 그리고 각급 기관에는 안전, 보안, 경비, 후방, 국토 등의 부부장급들이 있으며 분재소에는 3~5명의 안전원이 있다.

숙청에 의한 통제

“당내의 투쟁은 당의 강화를 위해 필요하며, 당은 스스로의 숙청을 통해서 더욱 강화된다”는 맑스의 언급처럼 사회주의 역사를 살펴볼 때 사회주의국가에서 숙청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숙청이란 낡고 부정적인 대상이 더 있을 수 없도록 깨끗이 지워 없애는 것”이고 “반혁명적 종파사상을 폭로, 숙정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의 사상체계를 바로 잡으며……당생활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북한의 경우, 정권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김일성 유일체제의 확립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치숙청은 여타 사회주의국가에서 있었던 숙청보다 광범하고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해방 직후 북한에는 국내외에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다양한 파벌이 유입되었고, 김일성의 권력기반은 타파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계열은 소련의 비호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그들의 권력 선점과 강화를 위해 테러, 사건조작, 비판 및 공포분위기 조

성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타파벌에 대한 철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숙청의 첫번째 대상은 가장 유력한 국내파 공산주의자 현준혁과 북한인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민족주의자 조만식이었다. 현준혁은 1945년 9월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장시우에 의해 살해되었고, 김일성의 회유와 협박에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조만식은 한국전쟁 중 제거되었다. 또한 현준혁 살해 이후 공산주의이론에 밝았던 오기섭은 김일성과 소련파 이론가 허가의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 내에서는 대대적인 숙청이 자행되었다. 김일성은 전쟁을 정적 제거의 기회로 삼기 위해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이들에게 패전의 책임을 전가시켰다. 1950년 12월 21일 소집된 노동당 중앙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연안파인 무정과 김한중, 국내파인 허성택, 박광희, 빨치산파와 소련파인 김일, 최광, 임춘추, 김열 등이 직위해제되고 축출되었다. 이 회의의 소집목적이 반김일성계의 지도층에게 패전의 책임을 돌리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후 대부분의 사람은 복권되었으나 팔로군 포병사령관 출신인 무정만은 영원히 축출되어 사인조차 분명하지 않다. 또한 소련파로서 공산주의이론에 밝았던 허가의도 당조직문제와 당원 축출문제를 둘러싸고 김일성과 대립하다가 몰락하였다. 그는 1951년 11월 전쟁기간 중 당조직 손실의 죄명으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에서 해임당하였고 김일성의 박헌영일파

제거 음모에 걸려 숙청되었다.

한편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계열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급속히 몰락하였다. 1953년 이승엽, 이강국, 임화 등 이승엽 일파가 무장쿠데타 음모, 미제스파이활동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사형당하였고, 국내외에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박헌영도 이승엽일파 조종, 간첩행위, 쿠데타 음모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1955년 12월 15일 처형되었다. 남로당계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는 이후 최원택 등 몇 명의 잔류 남로당계가 노동당 중앙위원이나 후보위원에 임명되었으나 이들마저 1957년에 이르러서는 모두 축출되었다.

김일성은 국내파와 남로당계를 숙청하자 이어 연안파와 소련파 잔여세력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전후복구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된 제3차 당대회에서 빨치산파들은 당 중앙위정위원에 11명, 후보위원에 6명이 진출하는 등 만만치 않은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3차 당대회가 폐회된 지 2개월이 채 안된 1956년 6월 1일 김일성은 전후복구자금 마련을 위해 소련을 비롯한 9개국을 순방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 연안파의 최창익, 윤공흠 등이 소련과 박창옥과 합작하여 정권에 대한 도전을 기도하였다. 김일성의 방문성과를 보고받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 '8월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들의 김일성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 이 회의를 통해 감행되었다. 일명 '8월종파사건'으로 불리는 동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이 당내 파파분자로 지목했던 최창익, 윤공흠 등 주로 연안파가 몰락하였고, 연안파의 최고지도자인 김두봉도 노동자로 숙청되었다.

그리고 소련파의 박창욱, 박의완, 국내파 오기섭 등이 이들과 협조했거나 당에 대한 충성이 미약했다는 죄로 숙청당했다.

이로써 김일성은 도전 가능한 모든 집단들을 제거하게 되었고, 1961년 9월 개최된 제4차 당대회를 통해 당과 정부, 그리고 군을 공식적으로 완전 장악하게 되었다. 빨치산파의 득세 이후 김일성은 급속히 우상화되기 시작하였고, 김정일의 등장 이후 그의 주관하에 유일사상체제와 족벌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내부적인 반발과 저항이 나타나게 되었고, 김일성은 이를 ‘반당·반혁명’, ‘기회주의·종파주의’ 등의 요소로 지목하고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다.

유일사상에 위배되는 선전활동을 했다는 구실로 1966년 구연안파 출신인 김창만이 제거되었고, 1967년 7월 개최된 당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이효순과 박금철이 반당 종파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다. 그리고 대남담당 총책 허봉학이 김종린으로 교체되었고, 이어 빨치산 출신의 고위장군인 김광협, 김창봉, 최광, 이영호, 석산 등이 숙청되었다. 빨치산 장군들의 숙청을 둘러싼 자세한 상황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최민철, 정병갑, 김자린, 김창덕 등도 이들과 같이 숙청되었다. 또한 김정일 권력승계체계가 보다 공고화되면서 이에 반대했던 남일, 이용무, 김동규, 지경수, 지병학, 유장식 등이 숙청당했다.

이상과 같이 김일성은 권력을 장악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들이 오랜 혁명동지라고 할

지라도 과감하게 숙청하였다. 김정일이 권력의 핵을 장악한 이후로는 검증을 거친 사람만이 권력의 요직에 기용되었고, 그물망처럼 이중삼중으로 짜인 당과 억압기구를 통해 더욱 철저하게 통제와 감시를 가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숙청과 권력변동은 없었다.

3. 경제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북한은 헌법 제20조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21조에는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는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이 포함되며 나라의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성장시키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제22조에서 북한은 국가소유 다음으로 중요한 협동단체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며, 국가가 협동단체소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협동단체는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단체소유에 대한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제23조)시켜 국유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를 우선 보호하는 북한이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개인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헌법 제24조에서 북한은 개인소유를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협동농장원들의 텃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의 대상이다.

비록 개인재산에 대한 제한적인 보호 규정이지만 북한도 헌법에서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제24조)한다. 그렇지만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제84조)이며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개인재산은 국가와 협동단체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체계상 하위의 개념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재산권 침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북한주민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노동에 따른 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그리고 개인의 텃밭과 부업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개인소유마저도 국가의 통제와 경제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세금이 없는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유일한 고용주로서 임금과 물가를 책정하고 이윤이나 잉여생산물을 모두 세입으로 착취하고 있다. 이같이 북한주민들은 생산물의 대부분을 국가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세금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는 개인(여성)의 부업이

성행하자 이들을 가내작업반에 가입시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바치도록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에서 면제되는 유일한 사유재산은 개인의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 곡식 등의 작물뿐이다.

국가와 당의 통제는 가정에서 쓰는 생활필수품의 구입에도 미치고 있다. 대개 물건은 월별로 인민반에서 할당되며 품목은 그릇, 밥솥, 신발, 옷, 부엌칼, 항아리(독), 찬장, 옷감 등의 생필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게 골고루 제때에 배당되지 않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배당시에도 인민반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구매권을 배당받는다. 구매권을 가진 주민은 상품별로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되면 이 때부터 그 물건은 개인소유가 된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하찮은 생필품조차도 국가의 통제와 물품부족 때문에 개인소유로 되기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다.

생필품과 마찬가지로 시계(손목시계, 벽시계)와 텔레비전,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같은 고가품도 구매권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 주민이 이러한 고가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 돈을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매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열성을 보여야 한다. 주민들은 노력동원(강제노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거나 당간부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 등을 통해 고가품의 구매권을 획득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개인소유가 허용되고 있는 생활필수

품조차 마음대로 가질 수 없다. 돈이 있어도 구매권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고, 구매권이 있어도 상점이나 시장에 원하는 생필품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 암시장에서 이러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지만 국정가격에 비해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북한이 말하는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인 혜택의 실체는 추가적인 혜택이라기 보다 추가적인 노력봉사에 따른 당연한 보수의 일부일 따름이다. 강제동원되는 경우 주민들은 비록 몸이 아프지만 공사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주위의 비난을 받지 않고 국가에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주민들은 각종 공사장의 강제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동원된 후 받게 되는 보상이란 밥주걱, 합지 등의 하찮은 물품이 대부분이며 때에 따라 다리미 등도 지급받는다.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한 물품 중 일부는 과연 개인이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린이·학생·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제복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이 선물로 하사한 세탁기, 텔레비전, 가전제품 등을 개인이 잘못 사용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은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된 행동으로 취급받게 되므로 함부로 다룰 수 없다. 즉 최고지도자가 제공한 물품은 개인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장기간 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구나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전횡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평양에 세워진 김일성 기념동상을 도금하는데 580kg의 금이 필요하자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특별징세를 부과했다. 일정량의 금을 공출하도록 지시받은 평양과 각 지역의 여성 동맹은 소속 가정을 강압해서 할당량을 채웠다. 비록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등을 국가에 헌납하였다고 선전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제일 조총련동포들은 복송된 가족과 친척의 안위를 위해 북한에 돈과 물품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내진 돈과 물품의 상당 부분은 공식적, 비공식적 명목으로 당국에 바쳐지고 있다. 더구나 조총련동포에 의해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된 합영회사 중 2~3개는 북한당국이 헌납을 빙자하여 몰수했다는 보도도 있다. 결국 북한에서는 국가권력이 언제라도 마음대로 개인소유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는 주택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소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배정받은 주택이라 해도 주택부의 통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시가 내려오면 집을 비워야 한다. 또한 국가소유인 주택의 수리 및 보수는 응당 국가가 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에서 주택을 보수하려면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목재, 페인트,

모래 등)를 개인이 준비해 놓고 주택보수사업소에 기술지원을 요청해야 보수가 가능하다. 국가에서는 자재가 없다는 핑계로 보수에 소요되는 자금과 자재를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런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비가 새도 속수무책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만 한다.

식생활 통제

북한 주민들은 돈으로 식량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두 번씩 식량을 배급받아 생활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식량배급제는 ‘국가식량배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1952년부터 실시되었다. 북한이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전주민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한 목적은 절대공급 부족인 식량의 효율적인 분배와 식량배급을 통한 주민통제, 그리고 무위도식자를 배제하여 노동의 신성함을 양양하는데 있었다. 배급자 또는 지배자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

노동자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의 양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많은 활동이 요구되어 체력소모가 많은 힘든 작업과 특수한 일이나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하루 800g 또는 그 이상의 양곡을 배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각자의 성분분류에 따라 배급은 12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생존

의 필수조건인 식량배급마저 개인의 정치적 지위와 직업에 의해 결정된다.

<표 1> 직업별 일일 곡물배급량

수 량	대 상
900g	광부, 특수중공업 노동자, 방위 종사자, 공업 노동자, 원양어로 종사자
850g	군사정전위원회에 소속된 군사요원, 기타 고위장교
800g	공군조종사, 특수장교
700g	기타 모든 장교, 경공업 노동자, 사무직 종사자, 엔지니어, 교사, 정부관리, 대학생, 평양시민 대부분
700g 이하	평양 이외의 주민
400g	고교생, 장애인, 55세 이상의 부녀자, 61세 이상 남자
200~300g	취학전 아동
200g	죄수

* 출처 : 아시아감시위원회 ·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한의 인권」(서울: 고려원, 1990). p. 185~86.

물론 북한당국이 식량배급과 관련한 등급 구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가장 높은 2개 등급은 김일성의 가족과 특수 외빈용이며, 세번째 높은 10등급은 각료급 이상의 노동당 고위간부에 할당되어 '10호상점'을 통해 제공된다. 수감자 또는 최하위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된 자는 생명유지에 훨씬 미달되는 하루 200g 이하의 양곡만을 수령·섭취하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주민의

직업별 일일 곡물배급량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북한주민들은 공무원·노동자 기준으로 하루 700g씩 계산하여 한번에 15일분의 식량배급을 받게 되어 있다. 북한은 1973년 이후 전쟁비축용, 조국통일저축미, 절약미, 애국미 등의 명목으로 매월 배급표에서 5~10일분의 식량을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들은 하루 600g 이하의 곡물을 배급받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북한은 각종 명분을 내세워 감량배급을 실시하고 최근에는 배급일이 몇 달씩 지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대홍수로 인하여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배급량의 감소와 배급이 지연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대부분은 부족한 식량을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을 통하거나 농촌지역에 있는 친인척으로부터 조달하려 하지만, 식량이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감시·통제되기 때문에 이것마저 여의치 않다.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주민의 증가와 일부 산간지역에서의 소규모 폭동발생 보도 등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로 미루어 짐작할 때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불만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배급되는 곡물은 일반적으로 쌀에다 옥수수 또는 밀이 섞인 혼합곡이다. 평양시의 경우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이전까지 대체로 쌀과 잡곡의 혼합비율이 7대 3이었으나 축전 이후에는 거꾸로 3대 7로 바뀌었다고 한

다. 평양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5대 5의 비율이던 것이 2대 8 또는 그 이하로 쌀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을 선호하는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혼합곡에 포함된 쌀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른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잡곡도 모자라 감자 등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식생활 수준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곡물의 절대부족에 따른 식량난 타개의 일환으로 북한당국은 특이한 대체식품을 개발하고 방송이나 각종 선전물을 통해 이들 식품의 조리방법을 선전하고 있다. 북한이 개발한 대체식품은 옥쌀, 남새밥, 혼합국수, 속도전 가루 등인데 이러한 대체식품의 주목적은 밥량을 부풀리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 식품은 순간적으로 배만 부르게 할 뿐, 조악하고 거칠어 오히려 소화기계통에 부담만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량배급을 통한 주민통제의 방법으로 북한에서는 직장을 무단결근하는 자에게 결근한 날짜만큼 식량을 공제한다. 즉 직장에 나가지 않는 주민에게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식량이 배급되지 않는다. 다른 형태의 통제로는 주민들이 항상 허기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용하여 북한의 당기관과 행정기관은 김일성·김정일의 생일 또는 기념일에 비축된 식료품을 주민에게 선물로 풀어 주면서 지도자에 대한 은덕과 고마움을 느끼게 하여 충성심을 일으키게 한다.

의생활 통제

평양을 제외한 기타 지역 북한주민들의 의생활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하위계층은 질이 떨어지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 레이온과 나일론 의복을 주로 입고 있어 사실상 일반주민들의 의생활은 획일화되어 있다. 규격화된 기본 작업복과 내의 정도는 계절에 따라 염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지만 노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 이외의 일상복 등은 국가가 정책상 고가로 책정해 두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의류에 대한 통제도 각종 생산품의 양적, 질적 통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욕구수준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북한의 의류 공급 기준

대 상	회 수	품목 및 수량	비 고
노동자	연 1~2회	작업복 1착	무 상
학생	연 2회	교복 1착	염 가
기사, 교원	3~4년 1회	양복지 1착	염 가
4호대상이상	2년 1회	양복지 1착	반 액

* 출처 : 통일원, 「'92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2), p. 278.

** 4호대상은 시·구역·군 당비서, 시·구역·군 행정경제위 부위원장, 2급기업소 이상 당 부비서·지배인·기사장급 등을 말함.

의복은 다른 생필품처럼 국가로부터 배정을 받고 구입할 수도 있지만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매년 노동자들에게 한두 벌의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여름용과 겨울용 제복 한 벌씩을 염가로 제공하고 있다. 농촌지역에는 국가가 모든 의복을 제공하고 있다. 상류 계층에 속한 주민에게는 2년에 양복 한 벌을 할인가격으로 제공받도록 배려하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도 의복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관청에서 발행하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이 허가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비재를 구입하는 것조차도 정부가 부여하는 일종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된다. 김일성의 가족과 친척은 의복을 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성분이 좋은 부류인 핵심계층은 특별히 지정된 상점에서 양복, 모직물, 모피까지도 구입할 수 있다. 반면에 성분이 나쁜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에 속한 주민이 의복 구입에 필요한 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 주민들은 내의, 양말, 장갑, 외투 등 꼭 필요한 의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속내의는 입지만 양말은 신지 않는다고 한다. 의류 뿐만 아니라 신발류도 절대 부족하여 규정된 양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북한은 2개월에 1켤레씩 노동자에게는 노동화를, 학생에게는 운동화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년에 1켤레씩 지급하고 있다. 대학생이나 행정기관 관리들이 2년

에 구두 1켈레씩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무원에게 1년에 구두 1켈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생활 통제

먹는 문제 다음으로 북한이 당면한 과제는 주택문제이다. 북한은 지방기관 간부급 이상에게는 100% 주택을 배정하고 있으나, 일반 노동자의 경우 주택보급율은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흔히 두 세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1987~1993년) 중 북한은 평양, 남포, 원산 등 대도시에 연간 20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력을 집중하였으나, 심각한 자재부족과 에너지난으로 전기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현재 공사진척이 부진한 상태이다. 각지에서 주택건설 공사장에 차출된 노동자들은 고된 일과 열악한 숙식으로 작업열의를 상실하고 있다.

북한에서 주택배정은 당이나 정부기관이 통제하며 주택은 배정받을 사람의 정치적 지위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택만 보아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 평양의 경우 당간부들은 단독 고급주택 또는 쾌적한 고층아파트에 살지만, 근로자 및 사무원은 일반아파트와 집단공영주택, 협동농장원은 농촌문화주택에서 산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의 주생활 양식으로 집단거주 중심의 아파트형 또는 연립주택형의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주생활 양식에서 일반 주택은 개인과 가족의 문화생활을 위한 고려는 배제된 채, 침식위주로 설계되고 생활공간도 집단의 공동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계층에 따라 주택의 규모와 시설물을 달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분상승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당의 지시에 순종하도록 하는 통제 효과를 높이고 있다.

<표 3> 계층별 주택구조(평양)

구분	주택형	가옥구조	입주대상자
특호	독립고급주택	독립식 다층 또는 2층주택, 정원, 수세식 화장실, 냉온방 장치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고층아파트	방 2개 이상, 목욕탕 및 수세식 화장실, 베란다, 냉온수 시설	중앙당 과장급 이상, 정무원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인민군 대좌, 문예단체 간부,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방 2개, 부엌, 창고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급, 기업소 부장
2호	일반아파트	방 1~2개, 마루방 1, 부엌 1	인민학교·고등중학교장, 일반 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방 1~2, 부엌 1	말단 근로자 및 사무원
	농촌문화주택	단층 연립주택, 방 2, 부엌 1, 창고 1	협동농장원
	구옥	방 2~3의 농촌 기존 구옥	변두리 농민

* 출처 : 통일원, 「'92 북한개요」, p. 282.

이와 같이 북한은 주민들의 주거공간도 이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동원 및 지휘·통제를 용이하도록 만들고 있다. 북한은 최근 도시에 5~10층 아파트를 짓고, 농촌에 2층짜리 연립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집단주의 생활양식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주민의 편의보다는 전시 위주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적 감각이 살아나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의 높이나 외향에 치중하여 내부시설은 조잡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10~15층 아파트에 승강기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가동을 중지하여 주민들은 걸어서 오르내리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노약자들은 아파트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평양시는 형편이 좀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경우 공동화장실 사용에 따른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1988년에 건설된 사리원 시내의 사리원아파트는 연립주택형으로 가구당 7평규모로 2개의 방이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40가구를 위해 공동화장실 1개만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내부에 세면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 부엌에서 세수를 하거나 식구가 많은 집은 복도에서 세수하고 물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면에 지배계층은 냉·온수 설비와 수세식 변기가 딸린 단독주택이나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한다.

일반 아파트에 대한 급수도 에너지 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일 나은 평양에도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1~2시간씩 하루 3~6시간만 수도물이 공급된다. 지방에는 하루 1~2시간밖에 급수가 되지 않아 모든 가정에서는 식수, 세면을 위해 물통에 물을 받아 놓고 사용한다. 대부분의 집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가정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 간단하게 몸을 씻는다. 그렇지 않으면 동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해야 하지만 쉬는 날이 많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분기에 1장씩 공급하게 되어 있는 세수비누도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빨래비누로 세수, 머리감기, 목욕 등을 한다.

북한주민들은 매년 겨울철이 다가오면 땀감, 김장, 방한화, 방한복 등 겨울나기에 매우 고심하고 있으며 난방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평양시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석탄, 연탄을 사용하지만 그나마도 연탄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50% 정도는 직접 연탄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면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직장상사들의 처락을 받아 2~3일씩 가루탄과 배합용 진흙을 확보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의 일반 노동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석탄보일러를 가동하여 중앙난방이 되고 있으나 연료절약을 위해 난방시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따라서 주민들은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실내에서 옷을 두텁게 입거나 바닥에 이불을 깔고 지내야 한다.

평양 이외의 지역, 특히 농촌에서는 나무가지, 솔잎 및 소

똥까지도 땀감으로 사용한다. 말라죽은 나무 등은 산림보호원의 통제하에 줍도록 되어 있으나 수십년 동안 인근 지역의 나무를 이용한 결과 땀감용 나무가 부족하여 술, 담배 등의 뇌물을 주고 산림보호원의 묵인하에 생솔가지 등 산나뭇나무를 도벌하거나 아예 산림보호원의 감시를 피해 도벌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 북한 주민들이 농촌보다 도시를, 지방보다 평양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난방 때문이다.

평양에도 비핵심계층 주민들 대부분은 매우 조잡한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판잣집’이라 불리울 만큼 형편없는 건물에서 산다. 농촌 주택은 방이 한두 개 있는 단독주택인데 식수로는 우물물을 사용하고 화장실은 집밖에 위치해 있다. 방이 두 개인 농촌 주택에서는 보통 두 가구가 함께 산다. 이러한 조잡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땀감 걱정과 보온을 위해 창문에 비닐을 덧씌우거나 문풍지를 발라야 하므로 환기문제가 심각하고 목욕을 할 수 없는 비위생적 생활을 하고 있다.

주택부족에 따라 북한에서는 ‘동거’라는 독특한 임대방법을 사용하여 방이 2개 이상 있는 집에 동거살림 1세대를 들여 같이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구역(군) 당위원회 등은 긴박한 사정을 내세워 먼저 입주하고 있는 세대에게 방을 하나 비워 새로 오는 세대에게 주도록 지시한다.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주택배정을 받을 때까지 2~3년 또는 무한정 부모의 집에 얹혀 살거나 별거를 해야 하며, 핵심계층 신혼부부의 경우도 아파트 입주를 위해 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하는 것은 흔히 있

는 일이다.

직장선택 통제

북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헌법 제70조), 1958년 말부터 개인 상공업 활동이 금지되고 일체의 생산공장, 경제기관, 문화, 후생, 의료, 서비스기관들은 국영 또는 협동단체 경영이라는 명목하에 당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직업선택은 실제로는 국가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집행된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당과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동자의 경우 행정위원회의 노동부에서, 사무원 및 간부직원의 경우는 간부부를 통하여 '배치장(노력파견장)' 또는 소개장을 발부받아야만 해당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북한 인사정책의 기본원칙은 정치적 신임도를 최우선시하는 '간부정책'이며,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다만 참고용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는 유명무실한 것일 뿐이며 개인은 당의 지시에 따라 직장에 배치될 따름이다.

모든 고등중학교는 군입대 예정자와 전문학교 이상 대학진학 예정자를 제외한 졸업예정 학생들의 명단과 식량배급번호 및 학교장의 평점서가 첨부된 취업서류를 거주지 시·도·구역 인민위원회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 직원들은 서류심사로 대체적인 복안을 마련한 뒤 배정된 공장, 광산,

기업소 등을 비롯한 각종 취업장의 조별 배치 인원에 알맞게 졸업생들을 배치한다. 학교에서는 근무장소만 알려주고 졸업생들은 무조건 배치장(노력파견장)과 식량정지증명서를 배치된 기업소나 농장에 보내야 한다. 만약 졸업생들이 배치된 직장에 가지 않을 경우 출근할 때까지 식량배급이 중단되며 배치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군인들도 군대에서 전역할 때 출신성분과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노동과나 중앙당 간부과의 지시를 받아 배치된다. 대부분의 경우 김일성 부자의 교시에 따라 공장, 탄광,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 또는 작업장에 집단적으로 배당되는 '무리배치'가 이루어진다. 배치된 직장으로 제대자들의 제대증, 식량정지증명서, 당 및 사료청원 이동증이 발송되고 집단배치된 제대자들은 '호송군관'의 인솔로 배치된 직장 노동처에 인계된다. 집단배치에 따른 불만으로 제대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학교 졸업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을 수 없다. 집단배치되지 않은 제대자는 연고지에 배치되지만 직장은 지역 노동과에서 임의로 배정한다. 1990년 10월 20일 귀순한 신광호는 "무리배치가 되고 나면 고향에 갈 기회를 주지 않아 부모형제가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의 비인도적인 직장배치를 규탄하였다.

대체로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기 3년 전부터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출신성분을 파악한다. 특히 성분이 나쁜 학생들, 즉 친척 중 유일사상체계를 위반한 자가

있거나 남한에 친척이 있는 자, 6·25때 월남한 가족 또는 북한에 반대하여 치안대에 가담한 집안, 지주집안 출신의 학생들은 농촌, 탄광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된다.

한편 대학교 졸업자도 정치적 신임도가 높으면 당 또는 행정기관의 간부로 기용되지만 특권층의 뒷받침이 없으면 생산 현장에 배치된다. 북한은 변호사까지도 개인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 간부가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졸업생을 변호사, 판사, 검사 등에 일방적으로 지명 배치한다.

일단 취업을 한 후에는 직장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은 1953년 8월 31일 기업소 및 기관의 노동자, 사무원들이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노동력의 유동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의 방지와 노동력의 완전장악을 통해 계획 경제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직장을 통한 주민들의 제도적 규제는 곧 심리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며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노동과 인권침해

노동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제70조)은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이라는 북한에서는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는 이 권리는 권

리가 아니라 강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원칙하에서 국가가 예외로 정하지 않은 무노동자는 제반 권리가 박탈된다.

북한의 헌법과 노동법은 1일 8시간 노동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1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까지 작업시간의 연장을 강요당하고 있다. 의무적인 정치집회, 당이 하달한 혁명과업은 무조건 앞당겨 완수해야 한다는 직장의 목표, 그리고 다른 직장과의 경쟁을 부추기는 국가의 시책 때문에 8시간 노동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각 직장단위는 일별, 월별, 분기별로 노동사업을 계획해 놓고 과업의 초과달성을 위해 천리마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80년대속도창조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간의 연장은 불가피하고 노동강도 또한 가혹한 것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에게 삼질을 천 번 한 뒤에 휴식을 허용하는가하면 군인·어부가 바다에서 300일을 지내야 한다는 ‘300일어로원정’도 등장하였다.

노동법 제35조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노력을 마음대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은 ‘금요노동체계’를 만들어 놓고 일반 노동자들은 물론 각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간부와 행정요원들도 공사현장에 보충인력으로 동원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 동원수단으로 각종 전투

구호를 만들어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김일성의 지시를 앞세워 다양한 돌격대(‘4·25속도전청년돌격대’, ‘당원돌격대’, ‘사로청돌격대’, ‘충성의 야간돌격대’ 등)를 조직하여 주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력 동원의 대상이다.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8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략 10년을 복무한 후 만기제대하게 된다. 이들 군인은 건설 사업에 동원되어 부족한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메꾸게 된다. 학생들에게는 ‘자원노동’이 요청되는데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은 보통 1년에 1개월의 노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대개 미숙련작업과 모심기, 수확 등의 농사일을 하게 되지만 농사철뿐만 아니라 일요일, 방학, 학교 오후 시간에도 노력동원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야만 한다.

작업도중 손가락 절단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는 피해보상을 받기는 커녕 노동안전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도리어 수개월 무보수 노동과 같은 벌칙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치료가 끝나면 공장 노동과에서 실시하는 노동안전교양을 다시 받게 되어 있다. 안전사고로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이것을 문제 삼아 기업소나 당국에 항의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북한의 노동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작업반마다 ‘통계원’을 두어 노동자들의 출근 여부를 점검한다. 세 번 지각하면 한 번 결근으로

간주하여 쌀배급표에서 1일분을 공제하고 하루라도 무단결근 하면 1일 식량배급표를 떼이는 것은 물론 연 14일간의 휴가가 취소된다. 노동조합의 형태인 사로청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거나 보호해 주는 단체가 아니라 당조직 산하의 동원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파업은 허용되지도 않고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헌법 제71조는 근로자들이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시간외 노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하고 있으며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일성·김정일의 생일과 국가적 명절에만 1~2일 휴식할 수 있다.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급료와 한정된 식량배급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일하도록 강요받고, 각종 노력동원, 연장근무 등으로 인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휴식에 대한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여가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이다. 영화나 연극은 주체사상교양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스포츠 활동도 국가체육(state sports)의 일환으로서 국가적 관리와 통제하에 계획·운영되고 있다. 물론 최근 골프장이나 장기모임 등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기구 역시 체제고수를 위한 단결력 강화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열악한 사회보장 실태

북한은 헌법 제72조의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의료보호제, 사회보험제 및 사회보장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인민보건법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근거로 북한은 헌법상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봉급 생활자에게서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봉급의 1%를 공제하고 있다. 환자가 입원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받은 보수의 20~40%를 공제당한다는 보고도 있다. 그리고 농장원의 경우 도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별도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평양의 의료시설은 집단진료 위주의 다른 지역 의료시설보다 훨씬 양호한 편이지만, 현재는 경제난의 여파로 평양의 의료기관조차 필요한 상용약품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의사들은 환자의 병을 완치시키는데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노동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치료의 주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만성환자에 대한 치료는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환자를 일차 진료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강냉이를 주식으로 먹게 되고 당과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 중에는 간염·결핵·펠라그라(영양실조) 환자 등 북한당국이 '42호대상환자'라 부르는 격리 대상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단위마다 1개소씩 설치해 놓고 있던 결핵예방원

· 간염예방원·42호병원을 각 군마다 증설하여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42호환자 수용병원에서는 자체 의약품만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이 더디다.

일반적으로 감기, 위장병 등은 민간요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심할 경우에만 병원을 찾지만 입원생활은 불편하고 급식도 빈약하다. 환자가 변기청소를 비롯하여 병실을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도 있다. 농촌지역에는 폐결핵 환자가 많은데 약이 없어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민들이 해외 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약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많은데 결핵약, 간염약, 항생제, 비타민이 주로 요청하는 약품이다. 북한주민들은 정신적 긴장과 지나친 노동 및 영양실조로 인한 위궤양, 불임, 신경병, 치질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노동보수제를 시행하는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의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분배하고 있으나 노약자, 병자 등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분배가 실제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비록 노동능력을 잃은 무의탁 노인들과 불구자들을 국가에서 무료로 돌보아 준다고 하지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원칙하에서 국가가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무노동자의 제반 권리는 박탈되고 있다. 불구자가 있는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평양에서 신체불구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보고도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나 불구자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기는 커녕 이들과 가족들에게 물질·정신적 고통만 더해주고 있다.

경제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부작용

공민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주민의 계층분류(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에 따라 엄격한 제도를 통해 인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어 경제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경제적 기본권 침해와 함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북한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각종 부조리, 비리, 범죄 등도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식료품난, 생필품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반해 고위 간부들은 간부전용공급소(간부공급소)를 통해 물자를 배정받는 등 빈곤 속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있다. 간부들은 직위에 따라 차등 발급되는 공급카드를 간부공급소에 제시함으로써 생필품과 식료품을 국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 주민들과는 달리 보통 배정된 물품에 여유분이 있다. 이러한 여유분을 암시장에서 국정가격보다 20배 이상 비싸게 되팔수 있기 때문에 간부들은 그 차액만큼 불로소득을 챙기게 된다. 일반 주민들은 ‘꼴고루 살자는게 사회주의이다’ 또는 ‘똑같은 입인데 간부들만 많이 치먹는다’는 등의 불평을 늘어 놓으면서도 부족한 물품을 암시장에서 비싼 가

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 남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당원들에게 뇌물을 바치게 되고 당원들은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등 북한에서는 각종 비리가 성행하고 있다. 직장배치, 주택배정, 심지어는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외화, 시계, 옷감, 식료품을 주고 받는 등 뇌물이 보편화되고 있어 북한에서는 ‘맨입에는 안된다’는 식의 자조적인 말이 유행하고 있다.

식량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경제적 기본권이 유린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절도가 만연하고 있다. 부부가 직장에 나간 낮 동안 쌀, 된장 등 주·부식물과 닭, 개 등의 가축 도난이 증가하고 있고, 노력동원 중이거나 농촌 지원에 나간 돌격대 성원과 대학생들이 농장이나 목장에서 사육하는 가축들을 몰래 잡아먹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주민들은 절도방지를 위해 생필품을 집안에 들여 놓고 수확기에는 텃밭을 밤새 지켜야 한다.

조직적인 절도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예로는 공장 판매부 또는 자재공급소 등의 중간관리층과 상점판매원들이 생산 및 판매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고 각종 식료품 및 의류 등을 암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양식창고와 철도화물창고 등도 절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사회안전부원이 무장경비를 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주민들은 은행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예금은 이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인출이 어렵고 소유금액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주민들이 은행이용을 기피하자, 당국에서는 봉급생활자에게 매월 봉급액의 25%를 저금토록 권장하거나 결산 후 분배를 받게 되는 협동농장원에게는 현금대신 예금증서를 지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현금을 보유하려는 것은 암시장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주체경제의 폐단으로 심화된 경제난 속에서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생존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식량 및 생필품 등 생존에 직결된 부족물품은 암시장에서 국정가격보다 몇 십배 비싼 가격으로라도 구입해야 한다. 물품 구입에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내작업 등 부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업을 통한 여성들의 수입이 일반 노동자의 평균노임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직장보다는 부업에 더욱 열중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 전지역에서 경제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침해의 정도는 북한의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지역 간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외선전을 위한 북한의 평양우대정책으로 막대한 투자가 평양에 편중되고 생필품 등도 평양에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평양은 그런대로 형편이 나은 편이다. 평양과 지방 간의 경제생활에서의 격차로 평양주민은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 지역주민들은 심한 열등의식에 빠져 들게 되어 경제적 기본권 침해를 넘어서는 지역간 갈등과 위화감이 야기되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및 친인척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도 자기 먹을 양식을 지참하거나 아니면 양식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방문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가 말살되고 있는 것도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에 따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4.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성분차별정책에 의한 인권침해

북한은 헌법 제65조에 “공민은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형상 모든 주민의 평등한 권리 향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이 헌법상 규정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1958년 8월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완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전주민의 노동자화’를 목표로 그해 12월부터 전체 주민을 출신성분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는 전주민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소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북한이 시도한 사회주의적 계급정책이었다.

출신성분 구분작업으로는 1958년 12월~1960년 1월에 실시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그리고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1980. 4~1980. 10),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1981. 1~4)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80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실시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

사업'에서는 13개의 부류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러나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 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동요 계층과 적대계층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별로 새로운 사회집단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통치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1980년대 중반에 성분완화정책을 시달하고 당시의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부류를 폐지 내지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이같은 성분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성분정책 완화지침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성분정책으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북한이 1987년에 제작·상영한 영화 「보증」은 실제로 북한에서 차별적인 성분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이 영화는 김정일의 성분완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차별적 성분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남한에 가족을 둔 한 노동자가 성분문제로 각종 불이익을 겪으면서 사회적·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현상이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성분분류작업을 통해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사전에 색출하여 이들의 반당적·반혁명적 행위를

진압하고 반동계급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출신 성분에 따라 구분된 소집단은 의식주 배급에서부터 사회적 이동 및 범집행, 여행허가증 취득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북한의 전주민은 핵심계층(핵심군중), 동요계층(기본군중), 적대계층(복잡군중)의 3계층으로 분류된다. 핵심계층은 북한 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 30%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과 약 20만명(인구의 1%)으로 추산되는 고급간부들, 그리고 나머지 28~29%의 중하급 간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일제항일혁명투사와 그 가족,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 및 유가족들이다. 북한은 핵심계층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 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 학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급간부들은 호화주택에 살면서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최신 유행품 등을 소유할 수 있다. 개인전화도 소유하고 있고, 외국출판물도 구독하며, 외국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당·정·군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고,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리며 봉건적 세습신분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표 4> 3계층 51개부류 분류표

3계층	51개부류
핵심계층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당·정·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반일투쟁에서 희생된 자의 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6·25당시 비전투원으로 희생된 자의 유가족), 혁명인텔리(8·15이후 북한이 양성한 인텔리), 6·25당시 피살자 가족, 6·25당시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인민군 현역장병의 가족), 영예가족(6·25당시 부상한 상이군인)
동요계층	중·소상인, 수공업자, 소공장주, 하층집객업자, 중산층집객업자, 무소속 남한출신, 월남자 가족(제1부류),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제2부류), 월남자 가족(제3부류), 중국귀환민, 8·15이전 인텔리, 안일·부화·방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적대계층	8·15이후 중소기업가·부농·상공업자에서 전락된 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행위자, 반동관료배,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복무자, 체포·투옥자가족, 간첩판계자, 반당·반혁명 중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개인재산을 완전 몰수당한 자본가

* 출처 : 통일원, 「'92 북한개요」, p. 268.

동요계층은 북한체제의 기본계층으로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인구의 약 50%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극도로 제한된 수입과 배급식량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는데 보건

혜택도 불충분하며 특별 허가없이도 평양을 여행하지 못한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핵심계층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적대계층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적대계층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들은 과거 지주·자본가 가족, 일제시 공직자, 종교인 가족·부역자 가족 출신 등으로 대학진학, 입당, 군장교 등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탈된다.

출신성분에 따라 이와 같이 차별대우하는 성분정책은 동요계층에게도 사회적 진출을 억제하는 불리한 정책이지만 성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류는 역시 적대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적대계층은 위에 열거한 출신성분 외에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자, 간부에서 파직된 자, 체포·투옥자 가족, 정치범 출소자, 경제사범, 반당·반혁명종파분자 등 북한의 권력투쟁에서 희생당하거나 소외된 엘리트와 관료들도 포함하고 있다.

적대계층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의 대상이 되는 독재대상, 항상 동태를 감시당하는 고립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 순응적인 대상으로 교육하는 포섭대상 및 교양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표 5> 적대계층 분류표

독재대상	독재대상자는 현재 북한체제와 제도를 전복하려는 부류로 이들은 일반 주민들과 분리시켜 소위 '안전지대'로 불리우는 산간고지와 탄광지대 등 특수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있다.
고립대상	고립대상자는 상당히 위험한 대중으로서 일단 유사시에는 남한에 동조 내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들이며 일반군중에 공개하여 집단 감시케 한다.
포섭대상 및 교양대상	포섭대상자들은 일부 동요계층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탈정도가 경미하여 체제·이념에 다시 순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류이며, 교양대상자들은 사상교양을 강화하면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보는 유동적인 부류이다.

종교인에 대한 탄압

북한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맑스의 언명에 따라 건국 이래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무계급사회인 북한에서 종교는 무의미하고 더구나 주체사상이라는 '완벽한 종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종교는 존재의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 인식에 따라 과거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불량자로 간주되어 무자비하게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직전과 전쟁 중 많은 종교인들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실종되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의 대

상이 됨으로써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였다.

1958년부터 시작된 중앙당집중지도 사업으로 종교인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불교의 경우 400여 개의 사찰 가운데 60여 개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으며, 1,600여 명의 승려와 3만 5,000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기독교의 경우는 1,500여 개의 교회와 30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고, 천주교의 경우 3개의 교구와 5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천도교의 경우 12만여 명의 신도가 자취를 감추었다.

김일성은 1972년 사회안전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 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에는 명문으로 인정되어 있다(제68조).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 1972년 헌법은 신앙의 자유와 아울러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제68조 1항에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거행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형식적이거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제68조 2항에서 “누구든지 종교를 병자하여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종교의 자유가 갖는 제약 내지 한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199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북한종교단 일행은 과거 종교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북한당국이 많은 종교인들을 탄압했음을 솔직히 시인하였다. 1988년 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이 건립되었으며, 1992년 칠골교회가 완공되어 종교에 대한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1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와 500백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종교인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과 인권침해

북한은 헌법 제73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사회주의적 세계관의 확립, 노동당이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소유 및 노동당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체력을 함양하는데 두고 있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사상적 요새’ 점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인민의 인테리화’를 교육의 당면과제로 설정, 투자를 강

화하여 왔다. 따라서 197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11년 무료 의무교육제'나 1977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공산주의적 인간교육을 위한·목적에서 설치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참교육'을 위한 제도는 아니고 주조화된 '주체인간' 양성을 위한 김일성 유일사상 주입에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적 신분에 따라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당사자의 실력이나 본인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없이 지방대학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중앙당 부장, 정무원 부장 등 김정일의 측근이나 소위 간부 자녀는 무시험 특별입학이 허용된다. 1993년 10월 1일 귀순한 박수현은 고위간부의 자녀들은 김일성·김정일의 지시로 입학이 결정된다고 하면서 이런 학생들을 '교시받은 학생', '지시받은 학생' 또는 '말씀받은 학생' 등으로 부른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대학입학 예정자 중 김일성종합대, 김책공대 등 주요 대학의 경우는 직계 준비속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 경우는 직계 준비속 4촌까지 성분조사를 받는다. 성분조사 과정에서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되어 남자는 군대에 입대하여 7~10년간 복무하여야 하고, 대다수의 여학생은 생산기업소로 배치된다. 연좌제 등 출신성분에 따른 진학포기 피해실상은 많은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귀순자 임영선은 1988년 4월 '군관'(장교)이 된 후 총정치국 간부에게 대학진학을 위해 뇌물을 상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분이 좋지 않으니까 포기하라는 언질을 받은 바 있으며,

원산 남자고등중학교 김모 학생은 평양에서 열린 '전국 알아맞추기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2등을 한 수재였으나, 큰 아버지가 월남자라는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소련·동구 사회주의국가가 붕괴된 것은 청년들의 사상교육과 통제사업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여 신소가 제기된 대학생은 과감히 퇴학시키고 있는 한편, 대학입학도 실력보다는 출신성분에 의한 선발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분을 다시 볼데 대하여"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대학입학 예정인원 배정에서도 지역적 차별이 심해 성분이 좋고 간부가 많은 평양에 제일 많이 배정된다. 군 및 구역 행정위원회의 대학생 모집과는 군당 및 구역당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의 자녀들을 지명 추천하며, 최근에는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북송교포 자녀들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귀순자 김영성은 증언하고 있다. 북송교포들은 자녀의 대학입학을 위해 일류 대학일 경우 학교측에 방송차나 화물차를 기증하며, 이류 대학일 경우 몇 대의 칼라 TV를 기증하고 있다고 한다.

동요계층에 대한 대학입학 통제실상은 많은 귀순자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실제로 대학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정밀한 신원조사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입학이 허용된다. 연좌제 등 출신성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귀순자 김성은 자신이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전기간 동안 전교 1등을 했지만 1979년 3월초에

있을 대학시험에 파견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가 다니던 학교 교장선생님과 어머니가 재직하고 있던 학교 교장선생님이 대학교 모집처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학생의 외삼촌이 1946년 12월경 월남을 한 ‘10호대상’(월남자 가족)이기 때문에 파견장이 안나갔다”는 것이었다.

조직생활과 학습활동을 통한 주민통제

북한은 국가의 유일한 이념으로 주체사상을 설정하고 주체사상 이외의 어떠한 사상이나 문화도 허용하지 않으며, ‘주체사상에 의한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단속·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사회통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인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김정일은 각종 교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집단주의 가치에 충실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단주의적 조건과 사회환경에 맞도록 인간을 개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간개조란 공산주의적 품성을 갖춘 인간으로 주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간의 성격과 기질을 개조하자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타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 필요하다. 또한 주체사상의 수령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공산주의적 인간개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은 ‘인간개조’를 위해 각종 학습과 ‘따라 배우기운동’ 등으로 주민들을 조직 속에 얽어매고 있다.

북한은 인간개조운동을 통해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순응적 인간으로 양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상화정책을 실시하여 오직 1인에게만 맹종하도록 선전선동함으로써 탈정치화된 인간을 만들어 복종적인 인간을 주조해 내고 있다. 북한은 연례적으로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실천하고 청소년·학생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게 한다.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김일성·김정일화 가꾸기’, ‘쌍무지개 등장’ 등 수많은 상징조작을 통해 단세포적 인간개조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하여 언론매체들은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김일성과 인민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의식을 개조하여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자동반사적으로 찬양과 칭송을 하는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북한이 집단주의를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집단주의라는 명분 아래 공민의 기본권이 얼마든지 제약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 북한은 집단주의 생활원리를 설명하면서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당과 사회조직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북한은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요구에 희생시키는 것이 참된 집단주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은 당과 정부, 사회단체의 결정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다.

북한의 집단주의 사회통제정책은 학교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보호막이 없는 어린 학생들의 권리까지도 무시되고 있다. 북한헌법 제47조는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히 제공되지 않고 정치적·계급적 지위와 성분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김일성·김정일의 저작과 이데올로기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탁아소에서는 말을 알아듣고 배우기 시작하는 만 2세 정도에 이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장난감을 주면서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김일성 원수님 감사합니다’를 따라 하도록 반복시킨다. 유치원에서도 제공되는 모든 물품을 수령이 배푸는 것으로 교육하고 식사나 간식시간에 김일성에게 감사하다고 복창하도록 한다. 취학 전 가치판단이 서지 않은 시기부터 자극-반응의 조건반사적 교육을 실시하여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학습시킨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은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원칙’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소위 북한의 ‘10계명’으로 되어 있는 이 10대원칙은 북한의 모든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궁극적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1974년부터 당원들과 전주민에게 강요된 10대원칙에서는 헌법이 천명한 기본권의 보장을 발견할 수 없다. 10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 ③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 ④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 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⑦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 품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 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영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 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10대원칙은 각 원칙마다 3~10개의 세부조항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제3원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에서는 제6항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품,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1993년 4월 28일자 「로동신문」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불타지 않게 꺼내 오려다 불에 타서 사망한 두 젊은 여성의 죽음을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어 실천한 아름다운 소행이라고 극찬하였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강요하는 극도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제4원칙의 제5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을 비롯한 집체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여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원칙의 제1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원칙의 1항은 “정치적 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줄 알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조직 및 주민통제 실태

북한은 사회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

나 사회안전부 등 국가억압기구 이외에도 인민반, 5호담당제 등을 통해 상호 감시하도록 하는 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민반조직은 동인민위원회 산하에 15~20세대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이것은 행정의 가장 기초단위 조직으로서 행정의 효율화에 우선적 목적이 있겠지만 인민의 전·출입 감시, 노력 및 행사동원, 인민의 사상교양 등을 실시하는 기구로 활용하여 집단주의 강화와 체제보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농촌에서는 인민반 대신 전통적 리단위의 생활권을 유지하며 협동농장과 작업반 및 분조를 학습활동에 긴밀히 연결시킴으로써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인민반회의는 매주 토요일 저녁 또는 일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고 학습 및 제반 생활문제를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자아비판도 하고 있다. 인민반 감시·감독원들은 위의 임무와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소 등 직장에서의 간부라 할지라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반장으로부터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인민반에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에서 별도로 감시원(정보원)을 배치하여 반내 방문자 조사 보고, 특히 반내 적대계층의 주민동태와 그 주민과의 접촉자에 대한 행정을 내사·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5호담당제는 1958년 7월 김일성이 “유급간부 한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교양사업과 경제과업 등 일체를 지도하도록 해서 리사업을 추켜 세우며 리당위원회에서 그들을 모아 놓고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면 일이 잘된다”고 교

시함으로써 전세대를 5호씩 나누어 열성당원 1명을 배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작업반단위를 분조로 세분화시켜 분조를 중심으로 인민생활과 학습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 북한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결국 열성당원인 5호담당관이 타가정의 사상을 감시하고 교육함으로써 가정간의 인간관계를 파괴하였고 상호불신과 질투심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각종 ‘총화’를 통해 ‘비판과 자기비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비인간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인민반과 5호담당제는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동원에 이르기까지 북한주민들의 최소 단위의 사회통제조직이 된다. 이들은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의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억압하는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성조직, 종교결사, 노조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과 결사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며 정부는 이들 조직을 통해 노동당의 당원과 후원자를 양성한다. 독립적인 기관이나 결사의 존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주민은 자신의 직업, 성별, 나이에 기초하여 이들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은 10개가 넘는 각종 대중조직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14~30세),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31~60세 여성), ‘조선직업동맹(직맹)’(31~65세 사무원·노동자),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31~65세 협동농장원) 등 4개 단체는 1,000만이 넘는 회원을 갖고 있다.

직업동맹은 형식상 노동자, 사무원들의 조직체로 되어 있

으나 실제로는 노동당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 즉 간부는 당에서 지명하고 직맹회의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되며 그 사업은 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1968년에 수정된 직업동맹규약은 맹원들이 ‘김일성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할 것’을 제1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직업동맹은 모든 노동자·사무원들을 당의 통제 속에 몰아넣기 위한 기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비롯한 모든 노동제도와 노동질서, 노동자·사무원의 사생활까지도 일일이 구속하는 감독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사로청도 규약총칙에 6가지의 과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1과업을 “청년들을 당의 사상체계로 무장시키고 당을 목숨으로 지키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로청은 행정 및 생산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시·군위원회와 각 직장, 공장, 기업소, 군대, 학교에 조직되어 있다. 농근맹도 역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노동당의 명령과 지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농민을 감시·통제하며 농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여맹과 소년단 조직도 주민과 학생들의 개인생활을 통제하는 매개체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들 단체의 주목표는 노동당을 보좌하고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운동에 참여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충성을 바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천리마운동에는 생산성제고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청년, 여성, 노동단체, 기타 단체 등 전체 사회가 동원되었다. 어린이들도 ‘소년단’(7~13세)에 가

입하여 외국손님의 북한방문시 공항에서 평양까지 연도에 도열하는 작업에 동원된다. 이러한 행사의 준비과정과 행사자체, 그리고 다른 여러 모임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혁명열기의 결여로 간주되며, 심지어는 충성 부족으로 간주되어 보복의 위협을 받는다.

<표 6> 북한의 조직별 학습교양체계 현황

종 류	시 간	내 용
월요학습침투	월요일 저녁(요일변동 가능)	등급별 학습, 주체사상의 요구, 맑스즘과의 차이
수요강연회	수요일 저녁	국가정책, 국제문제, 자유주의적 행태 단속
주총화학습	토요일 오후	찬양가, 로작학습, 자아비판 등 '예배형식'
인민반학습	도시지역: 토요일 저녁 또는 일요일 저녁 농촌지역: 장마당 서기전날 저녁	주부, 노인대상: 생활정보교환, 로작학습
아침독보회	근무전 30분간	선동원 1명 주관, 로작 또는 로동신문

노동자들은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기본일과를 마치고 하루에 평균 2시간씩 사상학습을 실시한다. 학습은 직장별, 작업반별, 조직별로 각각 나누어 실시하기 때문

에 증첩적인 학습망으로 얽혀져 있다. 또한 요일에 따라 월요학습침투, 수요강연회, 토요일주총화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활동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사로청, 직맹, 농근맹, 여맹 및 소년단 등 각종 대중단체들은 학습활동의 핵심적인 매개체로 기능하는데, 이 조직들이야말로 북한주민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통제기구이다.

이동·여행·정보 통제

북한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능력과 기호에 따른 주거지 선택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가 없음은 물론, 당국의 허가없이 주민들은 자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으며 주거지를 허가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과 식량배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제56호에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은 사회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호에는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일시적 손님이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역시 사회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여행자가 유숙지를 떠날 때 주인은 그에게 유숙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여행자는 집에 돌아가면 이 증명서를 공안당국과 자기 고용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노동을 강조하여 여행을 곧 노동력상실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행기간 동안 심리적 해이가 일어나기 쉬우며 서로의 정보교환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치안을 이유로 이와 같이 여행을 최대한 제한하며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려면 소속 사회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여행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대부분 그들이 태어난 곳과 배치된 단위에서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여행이 불가능하고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공민증, 신분증, 신임장, 출장증을 갖추어야 하며, 비록 이러한 증명서류를 소지한다고 하더라도 여행범위는 크게 제한된다. 지방주민이 평양 여행 허가를 받는다는 대규모 집회나 행사참가, 대학입학 등 특별한 자격이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성분이 확실해야 한다.

1987년 귀순한 김창화, 어성일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의 여행신청은 14일전에 해당 단위의 직장장에게 제출하여 1차로는 노력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2차로 해당 지역 사회안전부 증명서 발급과에 3일전에 여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부를 검토받은 후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 이를 대조·확인한 후에 해당 직장 초급당비서를 경유하여 여행증이 교부된다고 한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

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사회안전부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에는 귀향일시가 기재되며 귀향 4일전에 여행지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타지에 있는 부모·형제·친지 등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은 여행 중에도 심리적 압박이 매우 심하다. 모든 직장성원에게 일정한 작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행으로 그 작업량이 완수되지 못할 때에는 성적평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성적평점이 나쁘면 태만자로 분류되고 그것은 배급, 자녀들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식량 및 주요 생필품을 '배급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조직(직장 및 사회단체)에 속해야만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배급제는 협동농장원을 제외하고 노동자와 비노동자(부양가족)간의 지급기준에 차등을 둬으로써 노력동원의 기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북한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이주를 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그 외에도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경제특

구와 같은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는 것은 보편화된 정책이다.

1993년 9월에 귀순한 안명진에 의하면, 1992년 10월 김정일의 “비사회주의 요소를 없애라”는 지시에 따라 평양시는 직장, 지역단위로 사회안전부원, 국가안전보위부원, 모범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비사회주의 제거 그루빠’를 조직하여 당지시 위반자, 당정책 불평불만자, 근무태만자들을 집중 색출하여 지방으로 강제 추방했으며, 20~30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에서의 위반자 발생시에는 연대책임을 물어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불구자들에 대해서도 강제이주를 시키고 이들을 집단 관리하고 있다. 북한에서 불구자들은 평양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평양을 국제도시로 꾸미기 위해 신체불구자를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게 지방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하에 평양 시내에 거주하는 병어리와 귀머거리는 물론 신체장애자·정신병자와 그 가족들까지도 지방으로 강제이주시켰다.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시에서도 장애인들을 산간 오지나 외딴 섬으로 추방하였다.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불구자들이 평양에 없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최근 귀순자들은 불구자는 불구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어 일정한 벽지에 살도록 제한받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국가가 불구자들의 배우자를 지정해 주며, 이들은 불구자를 보살피고 훈련시키는 일을 도와주며 작업장까지 교통편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런가 하면 신체적 특징에 따라 혹독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은 난쟁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난쟁이를 색출하여 특수지역으로 추방하고 있으며, 난쟁이가 유전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가족들과 함께 여진족형 마을이라고 불리는 함경남도 산골의 작은 벽촌마을에 집단 수용한다고 한다. 난쟁이들은 그 수가 줄어들어 이제는 약 30쌍만이 남아 있는데 당국은 난쟁이들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난쟁이들간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한다.

문학예술의 창작활동에 대한 통제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혁명의 완전한 달성을 위해 복무하는 중요한 사상적 무기이다. 즉 문학예술을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요한 이념적 동원 매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김일성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1인독재체제를 강화함에 있어 작가예술인들을 철저히 통제하여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1961년 3월 문화예술분야의 통일적인 조직체로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을 결성하였다. 문예총은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사진가

동맹 등을 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각 동맹산하에는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각 도에는 총동맹 지부와 부문별 동맹지부가 있다.

문예총 결성 이후부터 북한의 문예정책은 문예작품창작에서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준수, '당성·계급성·인민성' 원칙 관철,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면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문예작품의 내용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혁명전통물', '전쟁물', '사회주의 건설물', '조국통일물'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히 내세웠다.

문학예술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문학예술이 당의 요구에 의한 계획생산이어야 하고, 창조과정에서 당의 지령과 통제를 받아야 하며, 출판 및 공연에서 당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 당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66년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사회를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문예분야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즉 '주체문예이론'을 내놓게 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은 사회주의 문예이론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의 유일적 지도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논리하에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주체문예이론은 창작방법론으로 '종자론'과 '속도전'

이론을 도입하고 있다. 종자론은 김정일이 창안했다는 것으로 “문예학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정치를 개척하고 인류문예과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고 선전된다. 이로부터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주의를 체현한 ‘공산주의자의 절대적인 전형’으로서의 김일성을 직접 형상화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김일성을 절대화·우상화함에 따라 그의 가계 전체를 신성한 것으로 신격화할 요구를 내세우게 되었다.

그런데 김일성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형상화가 어느 한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집체창작’을 강요하게 되었다. 창작작업을 물질생산과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당의 정치사업과 혁명적 조직생활의 결합을 강조하게 되었다. 정치사업이란 쉽게 말해 사상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혁명적 조직생활이란 ‘4·15창작단’과 같은 문예인들을 집단화·조직화하여 집체창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 문예정책은 ‘문학예술혁명’이라는 구호 아래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체제를 확립·강화하고 합리화하는 김일성 일가족들과 그 추종자들의 ‘혁명성격’과 투쟁과정을 우선적으로 형상화하는데 핵심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북한 문예정책의 실현 과정은 무자비한 통제성을 보이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당 중앙위원회 문화예술부에서 직접 담당하며 명목상

사회단체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노동당의 산하단체인 문예총을 통하여 진행된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통제는 우선 그들의 창작 및 공연 활동에 대한 계획의 하달로부터 시작된다. 노동당은 각 예술분야와 작가 예술인들에게 창작계획을 연, 분기, 월별로 작성, 제출할 것을 강요하며, 또 이 계획은 주제별 할당의 범위에 반드시 준해야만 한다. 주제별 할당은 확고히 고정되어 있는데, ‘혁명전통 주제’(과거 김일성 일파의 반일투쟁 업적을 날조, 찬양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 작품 30%, ‘전쟁 주제’ 작품 30%, ‘사회주의건설 주제’ 작품 20%, ‘조국통일 주제’ 작품 20%로 되어 있다.

해당 동맹 단체에서는 제출된 계획을 종합하여 당 중앙위 문화예술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다.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은 이 계획에 무조건 의거해야 하며 각 동맹 지도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산업지구·공장·기업소 및 농촌으로 파견된 작가 예술인들(해방작가라고도 칭함)과 직장을 가진 작가 예술인들(문학예술총동맹, 각 출판기관, 당·행정기관에 현직을 두고 있는 자)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과 통제를 위하여 각 동맹별로 분기에 1회 ‘당생활총화회’를 소집하며 1년에 1회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총회를 소집하여 작가 예술인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업을 제시해 준다.

작품 출판 및 공연에 대한 통제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통제된다. 이 통제야말로 작품출판 및 공연의 현실화에 앞

선 최종적인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당은 출판 및 공연계획을 직접 통제한다.

출판 및 공연에 대한 주제 할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세한 비율로 정하고 각 출판사 및 공연단체의 연간계획서는 해당 동맹 상무위원회를 거쳐서 당 중앙위 정치국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출판 과정에 대한 통제·감독은 문학예술총연맹을 비롯한 해당 동맹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공연단체에 대한 일체의 통제·감독은 정무원 문화예술부와 공연담당 부문 사회단체에서 이중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작품의 회부과정, 작품의 검열과정, 작품의 출판 및 공연과정이 그것이다. 작품의 회부과정은 제출된 작품을 두고 편집부 또는 공연단체에서 작가와 편집원간의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 편집부 및 공연단체에서는 작품에 대하여 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작품의 사상, 예술성을 두고 편집부에서 작가에게로, 작가로부터 다시 편집부에서의 3~4차례 이상 원고수정을 거치게 된다.

편집부 및 공연단체에서 채택된 원고는 정무원 출판총국 검열국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검열은 매우 엄격하게 수행되는 바, 부분적으로 몇 곳만 수정 의견이 제출되어도 작가에게 반환하여 수정시킨 다음 다시 제출하게 한다. 검열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는가? 둘째, 국가 및 군사비밀을 노출시킨 부분이

없는가? 셋째, 사회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묘사된 곳이 없는가? 넷째, 자본주의적 사상 요소가 나타난 부분이 없는가? 다섯째, 대중의 공산주의 교양에 도움이 되는가? 여섯째, 전투성·혁명성·계급성이 충분히 발양되었는가? 일곱째, 예술적으로 지나치게 졸렬하지는 않는가? 여덟째, 단어 및 어휘 표현은 정확한가? 등이다.

검열에 통과되어 검열인을 받아야 비로소 출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미술작품이나 음악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소설, 시, 희곡, 무용극, 미술작품, 음악작품 등에는 검열인이 반드시 찍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의 투쟁업적을 날조찬양하는 혁명전통작품'에 대해서는 지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즉 북한지도층의 비위에 맞는 작품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가장 큰 검열기준이 된다. 잘못된 것을 통과시켜도 책임을 지지만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을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부결하여도 책임을 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문학예술은 당과 수령의 명령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에 충실히 복무하는 선전·선동·조직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5. 여성차별과 인권침해

북한사회는 1945년 정권 수립 이래로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표방하여 왔다. 사회주의 혁명정권 수립방법으로 “자산소유의 불평등한 경제적 하부구조를 와해하고, 가부장적 전통에 바탕을 둔 상부구조로서의 사회적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성해방은 전통적 가족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북한은 1946년 3월에 발표된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에서 토지분배의 원칙으로 여성을 포함한 노동능력을 가진 가족 수에 따른 원칙을 제시하였고, 같은 해 6월에 공포한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노동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법률적 조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1946년 7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였고, 9월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을 발효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청산하고 여성해방과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북한은 여성해방을 위한 법적 조처와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왔으며, 그 한 예로서 여성노동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탁아소나 유아원 건립을 통한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여 1945년 11월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을 창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의 사상적 혁명화와 계급교양을 추진

하였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해방 직후 몇 년 동안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성해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처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이후 40년 동안 수행된 제반 여성정책보다 질적·양적면에서 더 다양하고 철저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정책변화를 보면 초기의 여성해방을 표방하였던 정권의 의도가 변화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은 이중적인 여성정책을 취하여 왔다. 이 기간동안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표방하면서 가사 및 가정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김일성 유일체계를 구축하고 김정일 후계체계를 준비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부장제를 환원시키기 시작하였다.

전후 복구과정과 사회주의 경제건설과정에서 여성의 노동계급화정책과 가사노동의 사회화정책에 따라 북한여성의 노동참여율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것을 남녀평등의 실현으로 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문제를 남녀평등의 관점에서보다는 계급론적으로 환원하여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즉 실제적으로 북한여성의 경제참여가 특정 직업분야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결과(임금 및 사회적 인식도)는 남성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사회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이중적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동원하는 동시에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여성정책으로 명목상의 여성해방과 여성의 실제적인 삶에는 많은 괴리가 있어 왔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한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과정과 김정일의 후계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나 가부장제를 부활시키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 북한사회가 경제적 침체를 맞게 되고 김정일 후계체계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 개념을 도입하여 가부장적 국가관을 강화하여 왔다. 이 기간동안 경제사정의 악화로 여성실업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가구소득의 감소와 여성의 남성의존도 심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남성가장들의 제반 사회적 불만을 가정 내에서 희석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로 여성의 재가정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동시에 여성의 노동력을 가정생활과 연계시켜 이용하려는 발상으로 가내작업반을 강화하였고, 여성의 노력동원 등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 증대와 가부장적인 정책의 추구는 사회주의 여성해방의 기본원칙과 실질적으로 모순되는 것이었다.

경제참여에서의 성별 불평등 실태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위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

역(사회참여)과 사적 영역(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는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고정된 역할, 즉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구체적으로 경제활동과 정치참여로 구분지워질 수 있으며, 단순히 참여율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어떤 양태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여성의 경제참여를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이 기초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에 따른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가 사라지며, 남녀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노동을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는 평등한 구조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성원으로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노동할 의무를 지니고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주의적 근로여성이 되게 된다. 북한은 정권 초기에 “농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촌여성들이 농업생산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농촌여성들의 생산참여를 촉구했고, 공업생산노동에도 여성들의 참가를 유도하여 가정부인들까지 건국노동에 참가토록 하였다.

북한여성들을 농업 및 공업 생산에 동원하는 사업은 한국전쟁 중에 더욱 강화되었다. 여성들은 후방의 공고화와 전쟁승리를 위한 식량증산에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또한 전쟁기간 동안 공장, 기업소의 생산노동에도 여성들이 대규모로 동원되었다. 6·25 전쟁 후 복구건설에 노동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남성노동력의 부족으로 여성노동력을 동원시켰으며, 농업집단화 과정에서도 여성노동력이 강제로 배치되었다. 이와 같은 여성노동 동원은 “녀성로력을 광범히 끌어들여 우리의 로력전선을 보충하며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업, 체신, 보건, 문화, 교육 등에서 사무보는 일에 녀성로력을 대대적으로 써야할 것이며 그들의 근무를 위하여 여러가지 편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무기관에서 남성로력을 녀성로력으로 교체하여 남자들을 생산직장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1953년 8월 김일성의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라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의 보고에 잘 나타나 있다. 1953년부터 농업집단화가 완료되는 1958년까지 농촌여성들의 노동참여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여성노동력의 증대는 1차 5개년계획(1957~1961)과 외부 경제원조의 격감 속에서 노동력 강화를 통한 생산증대 방안으로 실시된 1957년의 ‘천리마운동’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다.

1958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집에 있는 노동자 및 사무원의 부양가족여성들이 생산노동에 참가할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군마다 1개 이상 지방산업공장 설치가 추진되었고, 1980년에는 각 군마다 평균 18개 이상의 지방산업공장이 설치되었다. 지방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기혼여성을 포함한 여성노동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

문에 지방산업공장 종업원들 중 압도적 다수는 여성이었다.

또한 김일성은 여성들의 생산노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공업기업소들과 경공업공장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배치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공업과 경공업을 한 지역에 배치하여 중공업기업소에 주로 종사하는 남성과 경공업공장에 주로 참여하는 여성 노동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노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정책이 노동력의 효과적 이용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력의 안정화를 제고시킴으로써 여성 고급기능공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제품의 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선전하였다. 또한 종업원을 위한 제반 부대시설면에서도 많은 자금과 자재를 절약할 수 있게 되어 공장도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은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여러 부문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행정적 조치(1962년 2월에 채택된 내각명령 제3호, 1967년 10월에 채택된 내각명령 70호)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여성을 더 많이 진출시키기 위하여 여성들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남성노동력을 다른 힘든 부문으로 돌리고, 여기에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도록 하여 방직공장의 수리공, 양수기운전공, 관리일군, 공장·기업소의 통계원, 부기원, 경리원과 같은 자리에 여성을 배치하고 탄광, 광산, 임업, 수산업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청·장년을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1983년 8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북한은 여성들을 특정 직종(흔히 여성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것으로 간주되는 직종)에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를 심화시켜 왔다. 그리하여 여성은 경공업부문과 단순사무직, 서비스(상업편의봉사)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은 여성문제해결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는 남자로 형상하지만, 농민은 언제나 여성이 벼단을 안고 있거나 낫을 들고 있는 것으로 형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성별 직종분리의 일면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다.

1970년에 들어서 6개년경제계획기간(1971~1976) 동안에 나타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3대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북한은 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직장을 떠나게 되고, 기존 기혼여성들의 비취업율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결혼으로 인한 여성노동력의 유실을 방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족법 9조에서 남 18세, 여 17세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결혼연령을 남 30세, 여 28세 이상으로 장려하였고, 각종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 정치적 사상교육 강화, 가정의 혁명화 등 여성을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여성들을

부업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1971년 10월 7일 여맹 제4차대회에서 김일성이 “녀성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참여 유도를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8년 4월 사회주의노동법에서 노동의 의무를 명시해 강제노력동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 주는 한편,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은 가내작업반과 가내협동조합을 조직토록 하여 55세 이상의 여성을 비롯한 부양가족의 유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분야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84년 이른바 ‘8·3 인민소비품 생산확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내작업반의 활동을 강화시키게 되었는데 유희노동력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던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여성노동력의 동원을 의미하였다.

가내작업반 강화정책은 당시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북한은 2차 7개년계획(1978~1984)을 추진한 이래 경제성장율이 2%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혼여성의 실업률은 증가되었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저하와 함께 경제구조 변화에 기인했다. 또한 북한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암시장으로 인해 여성들이 부업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

적으로 증가되었다.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연령층의 인구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직업노동에로의 강제적인 동원 필요성도 저하되었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산업예비군화' 현상이 사회주의 여성노동정책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북한의 경우 주목해야 할 점은 '산업예비군'인 기혼여성들이 실제상에 있어서 직업노동이 아닌 자원봉사대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동원·이용되어 왔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 여맹조직을 통한 당의 교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북한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별 직종분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유엔이 제시하는 표준분류방식에 따른 통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북한여성의 구체적인 직업별 비율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북한 중앙통계국의 직업분류방식을 보면, ① 국영농장 및 기업소의 육체노동자, ② 공무원 및 관리직, ③ 협동농장 농장원, ④ 협동단체공장 및 기업소의 육체노동자로 나누고 있어 세계 보편적인 분류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자료로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87년 여성비율은, 국영기업소 노동자 57%, 공무원 16.8%, 농장원 25.3%, 협동기업소 노동자 0.9% 등으로 나타났다.

1958년 7월 19일에 공포한 "인민 각 경제부문에 녀성들을 더욱 인입시킬데 대하여"에는 교육 및 보건부문에 여성비율

을 평균 60%이상, 기타에는 30%이상으로 제고시키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반드시 여성들을 배치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 및 보건분야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여성노동력을 개별적 특성에 맞게 배치한다는 내각결정은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이 중화학공업 중점육성이며 이를 위해 남성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성노동력의 역량은 '가볍고 쉬운 일'에 적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직종분리 현상이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1970년대 초 북한여성 인력은 경공업(70%), 인민교사(35%), 농업부문(60%)에 집중되어 있다.

1963년 북한내 29만 4,000여 명의 전문가 및 기술자 중 여자는 4만 3,000여 명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으나, 1989년에는 총 135만여 명 중 37%에 달하는 50만여 명이 여성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각 부문별로 차지하는 여성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문가 및 기술자의 직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북한여성의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27조와 사회주의 노동법 제37조에 “로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동일로동 동일임금원칙’을 공식화하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별,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공식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성의 평균 임금은 월 70원선으로 계층별 임금수준의 하위에 속한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의한 것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낮은 계급, 사회적으로 경시되는 직종, 보다 손쉬운 작업장에 비숙련노동자로 집중 배치되어 그에 따른 낮은 보수를 받는 직종분리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1979년 9월 김일성은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 “로동을 고착시키며 전문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대를 이어 한가지 직종에 정통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직종간의 이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노동력 구조가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직종은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섬유산업이다. 농촌협동농장 등에서는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지배인이나 관리위원장의 비율이 높지만 관리직 전체에서의 여성비율은 현저히 낮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여성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개인의 직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노동력 배치에 따라 규정된다. 정권 초기에는 비교적 직장이동이 용이했으나,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노동력은 중앙의 엄격한 통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노동력의 배치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노동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의 각 분야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결정하면, 노동

성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중앙으로부터의 노동력 배치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196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의 유일적 지도하에 도·시·군 노동행정기관들이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배치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명목상으로는 노동력 배치시에 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여성을 적당한 직장에 배치한다는 식의 배려적인 조치가 실제로는 여성의 직업을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층에 편중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하자면 84호 내각결정과 남녀노동력 재배치과정에서 제시된 배치의 기준은 여성을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하며 체질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의 적성”에 맞게 배치하고, 남성을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양성 능력 차이에 따른 성별분업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고, 여성들을 각 부문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초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구조가 악화되자 기혼여성을 가정으로 복귀시켜 상황에 따른 보조노동력으로 동원시켜 온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요약하면 북한은 정권초기에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여성노동력의 동원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가사의 사회화를 진행시켜 왔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여성해방을 표방하면서 주체사상 확립 이후에는 동시에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진행시켜 왔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참여가 남성들과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여성은 여성직종으로 간주되는 특

정 직종과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으며 임금면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여성들의 노동참여가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전체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예비인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치참여에서의 성별 불평등 실태

북한은 1946년 7월 30일에 선포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1조와 제2조에 여성의 정치적 평등(남성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을 규정하였고, 1946년 9월 14일 발표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 제1조에서는 "녀성은 남성과 같이 지방(도, 시, 군, 면, 리) 및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을 선거하며 또 위원에 피선될 권리를 가진다. 녀성은 남성과 같이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제적 정치평등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라는 문제를 통해 북한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북한은 정권 초기에 토지개혁과 인민위원회 구성 등 사회개혁 과정에서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운동조직이 주장하던 남녀평등을 위한 조치(일부일처제, 문맹퇴치, 동일노동 동일임금)를 수용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제도 수립과 함께 여성의 혁명화·계급화를 목표로 여성의 정치활동을 조정해 왔다. 또한 북한은 여성의

사회적 해방이라는 명분아래 정치부문에서 여성동원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였고, 이를 통하여 당노선과 국가정책을 철저히 지지하고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여성지지세력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여성의 정치사회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북한여성의 정치사회화 정책은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여성 정치사회화의 실상을 살펴보면, 여성정치교육은 여성들로 하여금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되어 왔다. 북한여성들은 주로 지도자(김일성과 김정일)가 제시하는 모범적인 여성상을 전체 여성의 표본으로 따르도록 교육받아 왔다. 북한여성의 학습대상인 모범적인 여성으로는 김일성의 어머니였던 강반석과 김일성의 아내이며 김정일의 어머니였던 김정숙을 들고 있다. 강반석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어머니이시며 우리나라 녀성해방운동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로, 김정숙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신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여성은 본인 자신이 공산주의 혁명가로 생활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혁명가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여성의 덕목(순종과 헌신)을 강요받아 왔다.

또한 여성의 정치사회화 정책의 한 형태인 사회주의 경쟁 운동은 모두 공산당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이 정책적으로 특정 운동을 결정하고 하급기관에 명령을 내리면 당 하부단체들은 그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쉼기대회나 충성결의 모임을 결성해 왔다.

여성의 정치사회화는 북한사회에서 유일한 여성전국조직인 여맹을 주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맹의 정치사회화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제1기(1945~56)는 공산주의 여성으로서의 개조를 위한 강조기로서 북한은 해방직후인 194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을 창당하고 조선노동당의 직접적 지도 아래 전여성을 교육, 단결시키기 위한 여성조직으로 11월 11일 조선민주여성동맹을 창립하였다.

제2기는 1957년부터 1971년까지의 기간으로 여성의 공산주의 사상혁명 강조기라고 볼 수 있다. 1957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여성들을 경제발전 전에 투입하였고,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위한 여맹의 중점사업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확립, 여성의 사상적 혁명화,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었다. 1961년부터 '전국어머니대회'와 '어머니학교'를 개설하여 여성의 사상개조와 가정의 사상개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68년부터 가정의 혁명화를 표방하면서 가정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여성들을 가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 아래 '밥공장' 및 '반찬공

장'들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제3기(1972~현재)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여성 확립기로 볼 수 있다. 1972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면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규정하고, 북한사회 전체의 주체사상화를 추구하였다. 북한식의 독자적 사회주의를 구축한다는 명분 아래 주체사상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세습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이었다. 또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의 점령을 목표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온 사회의 혁명화·노동계급화·인텔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맹은 여성들의 혁명화·노동계급화·인텔리화를 담당하였다. 3대혁명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여맹의 사상교양사업을 통해 북한여성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도덕적 의리로, 육친적 사랑을 동지적 사랑으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도덕적 의무"로 교육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여맹은 사회주의제도의 공고화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 가정의 혁명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북한은 가정을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며 사는 하나의 혁명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설정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혁명의 후대인 어린이

를 공산주의자로 양육하고 남편에게 순종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래 여맹조직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여맹이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에서 가두여성과 전업주부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맹조직의 축소경향으로 여맹의 역할이 전체 여성에서 가두여성과 전업주부 중심의 정치사상교육으로 전화되었고, 유희노동력 동원의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모든 여성이 일종의 정치조직인 근로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맹의 축소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권력기관과 근로단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관심도의 지표로 이용되는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에서 조선노동당은 실질적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상위에 군림하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 모든 사회기관, 단체, 직장에 각기 당위원회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 권력의 핵심체인 노동당에 입당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제약이 없다. 왜냐하면 18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출신성분과 사회주의건설에의 참여도에 따라 입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당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같이 일반적으로 당성과 가족배경 혹은 직장에서의 노력영용 등의 경력이 요

구되지만, 이러한 여성지도자들에게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당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임무만을 주로 하기 때문이다.

전체 조선노동당원 중 여성당원 비율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와 있지 않으나, 대략 최고인민회의나 지방인민회의 여성대의원의 비율과 비슷한 20~25%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내에서 지도부의 결정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당원 중 여성의 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 정책결정구조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 중앙위원회에서의 여성비율은 약 5% 미만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경우 중앙당에 의해 피선거권과 여성입후보자의 비율이 결정되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여성후보자가 그대로 당선되어 왔다. 다만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는 조선민주여성동맹을 포함한 제사회단체, 정당, 국가기관 기업소의 종업원회의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추천회의에서 추천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여성조직의 대표성을 명목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전문 직업정치인이라기보다 1년에 1~2회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는 자기 본래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어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며, 중앙당이 지역, 계급, 성별에 따른 비율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 대의원 입후보자가 정해진다. 여성대의원

의 일정 비율을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거의 20%선은 유지하여 왔다.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대의원 비율이 22~3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근로단체활동을 살펴보면, 북한주민들은 누구나 연령과 직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주의로동자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과 같은 근로사회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은 1개 이상의 근로단체에 참여하여 정치사회화 과정을 겪어 왔다. 근로단체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근로대중의 자발적 조직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상교양조직으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당의 보조자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명분상 이는 사회적 집단이 개인 생명의 원천이고, 집단의익 가운데 개인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집단이 발전하는 조건이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 근로단체 중 여성만이 참여하는 조직은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1983년 조직개편 이래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여성의 정치참여는 김일성 유일지도체계를 강화하고 전체 사회를 주체화하고자 하는 국가목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들의 정치참여(당,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 근로단체)는 공산당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형식적인 정치참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북한 여성정치인의

공식적(수치적) 대표성과 실질적 역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여성정치인은 독자적인 행동권과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다는 당과 상부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여성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정에서의 성별 불평등

위에서는 명목상의 평등과 실제적인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 참여 실태를 살펴보았다. 가정에서 북한여성의 위치도 사회주의체제에서 표방하는 사회주의 남녀평등과 실제의 삶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기존의 유교적·전통적 가족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혈연적 귀속성이 강하므로 사회주의 혁명에 장애가 되며, 봉건적 가족관계는 남성우월적 제도로서 여성을 정치·경제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즉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 속에는 가족상호간의 평등, 특히 남녀간의 평등이 확실하게 보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 가족제도 실현의 기틀을 1946년 7월 공포한 ‘남녀평등권 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타파하기 위하여 1955년 가족주의 내지 혈연, 문벌을 상징하는 호적제도를 없애고 신분등록제로 ‘공민

중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농지의 집단화 및 중요 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물질적 기반을 제거하였다.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추진하였으며, 가정의 혁명화를 강조하여 왔다.

한편 북한체제하에서 국가는 가족관계의 '원만한 조정자'로서의 역할과는 달리 '직접적인 간여자'의 역할을 하여 왔다. 결혼문제, 혼인연령의 규제, 이혼문제 등에 있어서 사실상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친권행사에 있어서 국가의 간여, 입양 및 후견에 있어서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은 초기의 전근대적 가족질서의 단절을 목표로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1970년대 주체사상의 등장 이후 가족관계에서 전통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의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평등한 가족질서를 표방하여 왔으나,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부권이 강조되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또한 폭넓은 금혼의 범위, 여성추종의 원칙, 넓은 가족부양의 범위, 경로사상의 표현 등이 1990년 가족법에 포함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그리고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사는 모두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잔재해 있기 때문에 북한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사회참여를

하면서도 근로의 과중한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가족 내의 전통적인 역할관계, 즉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철저히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부간의 역할분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같은 북한여성의 상황은 “본래 여자의 본분은 어린애들을 기르는 일”이라는 김일성의 언급과 “요리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이며 여성들의 타고난 의무이다”라는 여맹의 규정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정권 초기에 활발히 진행된 가사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위한 조치들이 1970년대 이후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여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북한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줄어 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사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퇴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직장생활, 사회교양에 더하여 가사노동을 전담하여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여가시간이 전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늘 과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남존여비사상의 잔존은 북한 여성의 삶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북한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은 전통적인 어머니, 아내, 며느리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으며, 가정의 화목은 며느리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왔다. 부권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폭력문제가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가정폭력이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이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식량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경제사정이 악화될 경우 여성의 삶이 더 위협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제한된 음식물은 아버지, 아들, 딸의 순서로 주어지게 되며, 어머니인 여성은 항상 마지막 순서가 되게 된다. 또한 귀순자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식구들의 식량을 구하는 것이 여성의 주요 책임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여성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여성의 성폭력 실태를 귀순자들의 증언으로 살펴보면, 입당 및 취업을 미끼로 한 강간과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당간부 등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하직원인 여성들을 유혹하여 성폭행을 한 뒤 그 대가로 당원자격을 주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정일의 경호조직인 호위총국 제5과가 여성들을 선발하여 위안여성조직(일명 '기쁨조')으로 특별 관리한다는 점에서도 여성을 성과 향락의 도구로 인식하는 풍토를 엿볼 수 있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인 처

별 및 비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여성의 순결의식에 따라 개인의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성폭행을 여성의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사회는 공식적으로 결혼전의 금욕을 표방하여 혼전 성행위와 간통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는 투옥 또는 처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군에 입대하면 제대할 때까지 결혼이 금지되기 때문에 북한사회 저변에 남녀간의 불륜사건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한 강박관념 속에서 별다른 오락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북한의 청소년층에서는 젊음의 발산을 흔히 남녀관계를 통해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혼인의 임신 등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를 '부화(불륜)'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같이 혼인의 임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임신한 여성이 인민병원에서 중절수술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했으며, 이로 인해 '부화사건에 연루된 여성'으로 구분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여성이 임신사실을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다 자살까지 하는 등 이같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980년대 초반 김정일은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의사들이 신분을 묻지 말고 무조건 시술해 주도록

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유화정책은 한편으로는 인구증가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산아제한 정책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불임시술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절수술 및 불임시술과정이 여성의 건강한 보건상태를 제대로 유지하기에는 미흡한 형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에 대한 보건규정 및 실제사업은 모성보호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산전·산후휴가를 150일로 공식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여성들 중에 휴가를 찾아쓰는 사람은 없고, 휴가를 반환하는 것을 당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서 영웅적인 행동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북한은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상담소와 산원을 설치하여 여성의 건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부인병의 예방과 치료, 임신부의 건강보호와 치료, 신생아에 대한 질병치료와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일반인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에 대한 의료사업도 실제적으로는 미흡하리라 추정된다. 한 예로서 북한은 세계 최대규모의 산부인과 병원으로 알려지는 '평양산원'을 갖고 있으나 일반인은 거의 평양산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조산원이나 이웃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여성들은 민족해방을 기본노선으로 추진해 온 정치체제하에서 군사력과 남성을 중시하는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문화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 남한과의 전쟁을 항상 염두에 둔

사회체제에서 분단상태를 빌미로 한 권위주의는 북한사회 전체에 확산되었다. 더욱이 공산당에 의한 독재체제하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의 사용이 정당화되고 일반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는 여성들의 삶에 근본적인 제약의 구조로 작용하여 왔다.

북한은 그들 사회가 사회주의 남녀평등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여성차별의 문제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선전하여 왔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가부장적인 의식과 여성억압적인 제반 구조가 병존하고 있어 실제 여성들의 삶은 평등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북한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 세대주의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남녀평등에 입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예를 들어 여성도 남성과 같이 노동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전반적인 여성에 관한 가부장적 사회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삶에 가중한 짐으로 작용해 왔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여성자신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사회는 철저히 통제된 사회로서 성차별철폐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세계적인 여성운동의 조류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자신들의 사회가 완벽한 성평등을 실현하였다는 국가적 사상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저항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여성들은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국가와 당의 명령에 따라 사회에 대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가부장적인 윤리에 충실한 여성으로 살 것을 강요당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조차 결여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유일한 여성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도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아닌 당과 국가를 위한 여성동원 및 여성사상교육조직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일종의 압력단체로 성장할 가능성은 현재 상태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6. 환경권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북한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하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은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산업화 및 공업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공업발전에 따르는 필수불가결한 동반 현상은 아니며,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 착취 계급들의 손에 주어져 있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최대이윤이란 관점에서만 환경을 보고 이윤만 얻을 수 있다면 환경을 훼손하는 일을 꺼리낌없이 하는 반면, 비생산적 지출이라고 여기는 공해방지를 비롯한 환경보호사업에는 자금과 설비를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환경오염과 파괴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획득을 위한 경쟁의 결과에서 빚어진 사회적 재난이며, 자본주의사회에서 추진하는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한 법규정 마련은 사회적 여론과 압력에 못이겨 채택하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한갓 선언과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진정한 환경보호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제도를 실현시킬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제도 중에서도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창조적인 '주체사상'을 구

현한 북한식 사회주의제도가 인민대중을 위한 환경보호사업을 철저히 실행하는 가장 우월한 체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 환경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모든 사업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예지있는 환경보호정책'에 의해 오늘날 북한은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변화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밑에서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부터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국가적 관심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견성있는 모든 대책을 취함으로써 공해없는 공업화를 실현하고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경제를 건설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한 결과, 환경보호의 기본 지표들인 공기, 물, 토양의 위생기준이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이르러 북한 전역이 노동당시대에 와서 옛 선조들이 한갓 꿈으로만 생각하던 '장생불로의 낙원'이 현실로 펼쳐졌고, 세상사람들이 것처럼 부러워 말하는 '공해없는 나라', '공원속의 도시', '인민의 지상낙원'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민들은 공해라는 말조차 모르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속에서 '육십청춘, 구십환갑'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선전영화인 「금수강산 내조국 노래부른다」, 「사계절 아름다운 나라」, 「새로운 경치를 찾아서」, 「오랜 문화의 나라」,

「국토건설의 새력사」, 「폐허위에 솟아난 조선」, 「조선의 새모습」, 「전진하는 조국」, 「평양의 모습」, 「우리가 본 평양」, 「평양을 찾아서」, 「조국기행 개성시」, 「조국기행 함경남도」, 「조국기행 함경북도」, 「조국기행 강원도」, 「조선지리 함경북도」, 「조선지리 함경남도」, 「백두산」, 「금강산」, 「금강산으로 가자」, 「금강산, 조선의 명산 묘향산」, 「묘향산」, 「오가산」, 「지하의 명승 석화궁, 창광원, 송도원」 등과 북한의 과학교육영화 「천연기념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동굴, 식물, 마양송어」, 「우리나라 노루와 사슴」 등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결같이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기본적 인권으로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1978년 4월 18일 채택된 노동법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문화위생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 외 북한은 1986년 4월 9일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잘 보호하며 적극 개조해 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새롭게 규제한다면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하였다.

1992년 4월 29일 개정된 헌법 제57조에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라는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여 국가가 인민을

위해 시혜적 차원에서 건전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인민에게 문화위생적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건전한 환경조성을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혜해 주면 수동적으로 혜택을 입을 따름이다.

북한의 환경권 침해 실태

북한은 대를 이어 가는 위대한 수령의 영도하에 사회주의국가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국민이 국가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인민을 위해 전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인민에게 훌륭한 자연환경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지상낙원을 이룩하였다는 북한에서 과연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없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북한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산림이 황폐화되고, 공기·물·토양이 오염되고, 동·식물이 남획되는 등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건강한 자연환경을 보장받기는 커녕 환경손상에 의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실태를 조사할 수 없고, 거의 모든 관련 정보가 차단되거나 제한된 상황 속에서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있어 신(神)적인 존재였던 김일성이 행한 그의 말 속에 환경오염과 파괴의 실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영화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북한을 현지 촬영한 영상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자연환경이 전반적으로 파괴되거나 오염되어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문화위생적인 환경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다. 두번째로 계급이 소멸하였다는 북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특권층인 지배계급과 소외된 일반 인민대중인 피지배계급이 차등적인 환경 속에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특히 선택된 자들만이 살 수 있는 평양과 그밖의 도시 및 농촌 간에 커다란 환경의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이다. 세번째로 북한은 인민들에게 훌륭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미명하에 환경보호를 각종 군중운동과 노동사업에의 동원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보호사업에 정치사상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환경보호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결국 건전한 자연환경을 보장하여 준다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없는 인민의 지상낙원을 이루었다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실제 어떠한 자연환경 속에

살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주민들의 환경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는가를 파악해 본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오염과 파괴 상태

북한은 공기와 물, 토양은 유기체 존재의 필수적인 3대 구성 요소로서 그것들의 오염은 인간의 건강과 발육,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국가는 공산주의자들의 의무로서 공기와 물, 토양의 정결도를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과학적이며 이상적인 환경보호정책을 통해 보장해 주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과는 달리 공기와 물질 및 토양이 오염되거나 파괴되는 환경손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주민들이 심각한 오염현상에 시달리고 있음이 실제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환경적 여건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동·식물도 제대로 보호·관리되지 못하고 남획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기오염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기오염

북한의 대기오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함흥지구의 공해현상이다. 함흥지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석유화학도시이다. 그 중에서 지역의 70%가 공장지대인 함흥시 흥남구역에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흥남제약공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

홍남모방직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염소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공해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해문제 해결을 거의 해마다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한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79년 6월 4일 “함경남도 도당위원회와 중요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함흥에 올 때마다 화학공장들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완전히 없애도록 강조하였으나 화학공장들에서 아직도 유해가스냄새가 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듬해인 1980년 7월 10일에는 “함경남도 경제사업을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과업”이라는 연설에서 전체 당원과 인민들이 달라붙어 함흥지구의 공해현상을 막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과 기업소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함흥시내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당간부들이 공해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장과 기업소의 지배인들은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인체에 어떠한 해를 주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다시 비판하였다.

함흥지구의 공해현상이 개선되기는 커녕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1989년 8월 27일 “마전유원지를 잘 꾸릴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동 연설에서 함흥시의 공해현상을 막으려면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저 공해현상을 막자고 구호나 부르면서 소극적으로 달라붙거나, 공장과 기업소의 낡은 설비를 보수할 때 현 바지를 깎듯이

땀질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함흥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77년 4월 29일 “토지법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김일성은 청진시 주민들이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외 문평제련소와 원산화학공장 등이 위치한 원산, 김책제철소가 있는 제철도시인 청진,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황해제철연합기업소가 있는 송림, 유색금속공업지대인 나진 등도 대기오염현상이 심각한 지역이다.

공해현상은 북한의 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폐허 위에 솟아난 조선」에서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는 평양, 함흥, 강계, 남포, 원산 등의 공장지역을 화면으로 보여 주면서 그들이 전후 폐허 속에서 현대적인 공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자랑하고 있다. 영화 「조국기행 함경북도」에서는 선철과 강철을 생산하는 김책제철소에서 솟아나는 매연을 볼 수 있으며, 영화 「조선의 새모습」에서도 공업화의 상징으로 공장에서 뿜어내는 검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2년 12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지역을 촬영한 남북문제연구소의 영화 중 「다시 찾은 함흥」편 역시 흥남비료공장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해로 안개가 낀 듯 흐릿한 함흥시를 확인할 수 있다.

수질오염

공기 외에 물도 오염되고 있다. 수질오염 실태 역시 김일성

의 연설에서 잘 나타난다. 김일성은 한 연설에서 “아직 우리의 하수도시설에는 갖추지 못한 것이 적지 않으며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보통강과 대동강으로 들어가는 오수관들을 다른데로 돌리는 공사가 잘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강, 대동강 같은 좋은 강에 계속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해전부터 투쟁하고 있지만 아직도, 광산, 탄광들에서는 나쁜 물을 강에 막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수질오염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광산, 탄광들에서 나오는 물에는 독이 있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독이 있는 물질을 강하천에 그냥 흘러 보내면 물고기를 몽땅 죽여버릴 수 있을뿐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도 해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1962년 9월 5일의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도 환경오염을 언급하고 있어 북한의 수질오염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은 또한 1963년 6월 30일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공장이나 광산에서 유독성물질을 내려보내지 말 것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아직도 광산들에서는 유독성물질을 강에 그냥 내려 보내고 있으며, 평양방직공장에서는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유독성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그냥 대동강에 내려 보내고 있어 그전에는 옥류교까지 무리를 지어 올라오던 물고기들이 지금은 만경대 앞까지 왔다가는 약냄새를 맡고 다시 바다쪽으로 내려간다고 다시 비판하였다. 1964년에 2월 10일의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도 황해북도 신평광산을 개발한

다음부터 광산에서 흘러드는 유독성물질 때문에 그전에는 많던 대동강의 송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970년대와 80년대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1972년 12월 5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이라는 연설에서 김일성은 “우리 당이 공해방지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유독성물질을 강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하였다. 1978년 11월 9일 “국토관리사업과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도 탄광이나 광산에서 버리는 산업 폐기물로 강물이 오염되고 물고기가 죽는 현상이 청천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1989년 4월 20일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과 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김일성은 “대동강물을 평양시에는 음료수로 리용하고 있으며 대동강과 그 지류들을 끼고 있는 곳에서는 관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시를 비롯하여 대동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잘 갖추어 놓지 않고 오수를 망탕 흘려보내기 때문에 대동강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수질오염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농약에 의한 수질오염 사실은 왕새우가 논 가까이 있는 바닷가에서는 논에 친 농약의 영향으로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1984년 4월 26일 “칠색송어를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파악할 수 있다.

1986년 제7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대동강의 생화

학적 산소요구량이 1.36mg/l이고,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은 8.3mg/l이라면서 대동강의 깨끗함을 최초로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면서 자랑하였다. 그러나 오수와 하수, 그리고 폐수에 의해 대동강이 오염되었음을 김일성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전술한 1989년의 연설에서 “평양시의 도시경영 사업에서는 상하수도관리문제, 오물처리문제, 공해방지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평양시 도시경영사업에서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외 북한의 남양, 회령 및 북한 제일의 철광산이 있는 무산시 등과 중국의 도문시 등의 철광산, 제철소, 시멘트공장, 펄프공장, 화학섬유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및 도시폐수로 인해 두만강의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압록강 역시 북한과 중국 양쪽의 탄광, 시멘트공장, 그리고 도시에서 나오는 산업 및 생활폐수에 의해 식수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 이들 산업시설과 도시에서 나오는 폐수와 유독성물질은 단순히 강과 하천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근해양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

북한은 해양오염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1992년 ‘북서태평양해양환경보존계획(NOWPAP)’의 제2차 전문가회의에서 북한이 ‘환경보호 및 토지관리총국’(General Bureau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Land Administration) 명의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북한측 동해와 서해의 해양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서 깨끗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만 함흥과 원산

만에서 가끔씩 기름층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해양오염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공업화가 진전되고 해양에 물질이 축적되고 생물학적 집중화가 진행된다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압록강의 입구에는 신의주지역과 중국의 단둥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대·소규모의 공장에 의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전술한 남북문제연구소가 촬영한 영화 중 「원산지역을 찾아서」편은 원산공단과 인근 함흥공단에서 배출하는 폐수로 인해 바다가 크게 오염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영화 「새로운 경지를 찾아서」에서는 “광산을 하나 개발하고 공장을 하나 앓혀도 강물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그 뜻이 있어 공장들에서는 오수정제시설들이 광산들에는 미광침전지들이 건설된 것이 아닌가,” “우리 당의 환경보호정책으로 수려한 산천에 맑은 공기, 맑은 물 넘치니 약동하는 모습 끝없이 안겨 옵니다,” “어딜가나 고기떼 흐르는 강, 이것이 바로 환경보호법의 위대한 생활력으로 공해를 모르는 우리 조국의 모습입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 이 사실은 김일성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1962년 9월 5일의 연설에서 그는 상수도시설을 제대로 하여 도시주민들이 음료수를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지시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였음을 1973년 4월 23일 “농촌수도화를 다그치며 산림 조성사업을 힘있게 벌리자”라는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연설에서 김일성은 숙천군 창동리의 농민들에게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평남관개공사를 지시하였으나, 숙천군 지방관리들은 평남관개공사가 끝난 지 15년이 지난 후에도 농촌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깨끗한 음료수 공급문제는 그 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술한 1978년 11월 9일의 연설에서 김일성은 “지금 도시와 농촌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많이 지어 놓았지만 상하수도시설을 잘 갖추어주지 못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도시경영부에서 상하수도시설을 잘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먹는 물을 원만히 공급해 주고 오물을 제때에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최근까지도 깨끗한 먹는 물 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방지 작업이 농촌은 물론 도시, 특히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는 수도 평양에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전술한 김일성의 1989년 4월 20일 연설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토양오염과 산림파괴

북한의 토양도 심각한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양이 오염되고 황폐해진 원인은 우선 다량의 비료와 농약의 사용에서 찾을 수 있지만 부족한 식량의 증산을 위해 벼와 옥수수만 계속 심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식량의

양적인 증산을 위해 비료를 가장 많이 빨아 먹는 작물인 옥수수를 대규모 재배하게 한 정책은 토양을 황폐하게 한 주범이 되었다. 그리고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되면서 지력이 떨어진 것은 물론, 농약의 다량살포는 토양오염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나타났다.

한편 토양은 광범위한 산림파괴에 의해 침식되거나 유실되었다. 북한에서의 산림손상과 파괴실태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연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4월 6일 김일성이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라는 담화에서 산림조성사업을 범국민적으로 벌릴 것을 강조한 이후 산림보호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파괴는 그치지 않았다. 김일성은 1958년 5월 11일 “량강도 당단체들의 과업”이라는 연설에서 “흔히 일제놈들이 나무를 망탕 찍어 썼다고 욕하지만 나라의 주인이 된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도 나무를 망탕 찍어 썼다”고 무단벌목을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4년 2월 10일의 연설에서는 산림조성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깊은 산골을 제외하고는 벌거숭이 산이 되었다고 시인했는가 하면, 1965년 5월 25일 “현시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는 평안북도 일부 지방에서는 송충이잡이를 한다고 하면서 산에 불을 놓아 산림을 몽땅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한심한 일을 하였으며, 경제림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본래 있던 나무를 다 베내고 조그마한 나무모를 가져다 옮기

는 등 산림조성사업을 형식적으로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같은 김일성의 연설은 산림파괴를 인정한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동 연설에서 김일성은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화전을 일구는 현상이 계속되어 “이번에 기차로 함흥에 가면서 보니 신성천에서부터 양덕고개밑까지 골짜기의 산들을 거의 다 벌거벗겼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사태가 나고 대동강바닥이 높아지며 룡라도 같은 섬들이 자꾸 커집니다”고 산림파괴에 의한 토지유실을 비판하였다. 화전에 의한 토지유실은 1966년 11월 30일 김일성의 “생물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계기술자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연설 속에도 파악할 수 있다. 동 연설에서 그는 “자강도에서는 내각결정을 어기고 화전을 일구어 숲한 산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올해에 위원군, 초산군, 우시군 일대를 돌아보았는데 화전을 일구느라고 나무를 망탕 찍었기 때문에 산이 못쓰게 되고 장마때 사태가 나서 산 밑에 있는 밭까지 못쓰게 되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산림파괴는 북한주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다락밭 건설이었다. 김일성은 1976년 10월 14일 “알곡 1,000만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알곡증산을 위해 다락밭 만들기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수년내에 20만 정보의 다락밭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1989년 4월 20일의 연설에서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들기로 계획한 것은 그만

두어야 하겠습니까. 망탕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들다가는 숲한 땅을 못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라며 진술함으로써 다락밭 건설이 산림을 황폐화시켰음을 시인하였던 것이다.

다락밭 외에 퇴기밭도 산림파괴의 큰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식량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모두 산에 올라가 화전민이 하는 대로 풀과 나무를 베고 무조건 밭을 만들어 옥수수를 심었던 것이다. 식량부족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행동을 당국도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증언이다.

산림남벌과 다락밭 및 퇴기밭 건설로 인한 산림황폐화의 실태는 남북문제연구소가 촬영한 영화중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토의 최북단 청진, 나진」편에서 평양에서 청진으로 가는 도중 차창 밖을 촬영한 장면들은 다락밭 건설로 인한 철로주변 야산의 황폐화와 이로 인한 산사태의 흔적, 그리고 취사용 등으로 산림을 남벌하여 주택가 주변에 나무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두고은 고향 신의주, 영산」편에서는 다락밭으로 인해 산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를 뚜렷히 볼 수 있다.

한편 나무는 정치적 목적으로도 훼손되고 있다. 김일성은 물론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하여 나무밑줄기의 껍질을 벗겨 충성의 글을 새긴 이른바 ‘구호나무’를 북한 곳곳에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일제시대 당시 항일유격대들이 김일성을 찬양하기 위해 새긴 구호나무가 백두산 일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

떠볼 때 정치적 목적으로 꾸민 것이 틀림없다. 북한영화 「백두산」에는 구호나무를 유리관으로 봉하여 혁명사적지로 정하여 놓고 일반인들이 참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과학영화 「오가산」은 충성의 글 ‘항일명장 김일성장군 천만년 장수 1938’, ‘백두광명성은 조선독립광명성, 광복조선명성은 세계의 광명성 전민항쟁 1944’ 등이 새겨진 나무가 오가산의 원시림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토지와 산림은 물론 자연의 바위까지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훼손하고 있다. 김일성은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 of 풀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고 바위 같은 곳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바위에 후대들에게 물려 줄 좋은 구호를 새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라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한 환경손상 행위는 예외임을 1947년 9월 28일 “금강산을 근로자들의 문화휴양지로 꾸리자”라는 담화에서 직접 밝히고 있다.

북한영화 「금강산으로 가자」에서는 수려한 금강산의 바위들에 ‘주체사상’, ‘김일성만세’, ‘참으로 금강산은 조선의 기상입니다. 김정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등의 수많은 구호 글들이 새겨져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문제연구소가 촬영한 영화 중 「해주지역 방문기」편에서는 수양산의 정상에 있는 거대한 바위를 깎아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등 장문의 김일성 찬양 문구와 더불어 김일성의 생가 모습까지 바위에 새겨놓았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금강산 등의 바위들은 김일성추도문으로 또 다시 수난

을 겪었다. 금강산에는 ‘조선아 자랑하자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었던 영광을’이라는 대형글귀 등이 새겨 졌다.

동·식물 남획

김일성의 연설에서는 동·식물에 대한 보호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1966년 11월 30일의 연설과 1973년 2월 28일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라는 연설에서 복작노루를 잡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보이기만 하면 잡아 번식이 되지 않는 다면서 동물보호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노루와 꿩과 같은 산짐승은 새끼를 낳고 알을 낳을 때에는 절대로 잡지 말아야 하는데도 가리지 않고 몽땅 잡아 먹어 지금은 얼마 없다고 김일성이 비판하였다.

또한 1959년 6월 11일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연설에서는 어족들을 계획적으로 보호증식해야 하는데도 닥치는대로 잡아서 물고기 종자를 없애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 외에도 바다의 물고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있는 풀을 베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풀이 영양가가 있다느니 그것을 섬유원료로 쓸 수 있다느니 하면서 바다속의 풀을 모조리 베어내 물고기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한 1963년 6월 30일 연설, 그리고 호수와 강하천의 물고기를 주민들이 치어까지 다잡아 물고기가 없다는 1966년 11월

30일의 전술한 연설 등에서 동·식물의 남획실태를 엿볼 수 있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오염·파괴의 구조적 요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끊임없는 질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오염과 파괴가 일어나는 원인은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책임하에 무슨 일을 하려들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계획경제체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위주의 할당량 달성만을 강요하여 생산수단의 투자에 있어서 환경보호적 설비마련과 환경보호적 산업구조 조정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의 경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환경오염을 가중시켰다는 점이다. 넷째, 폐쇄적인 자력갱생적 경제체제로 환경보호기술과 경험의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경보호분야의 국제적인 노동분업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자립경제체제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북한 내의 자원만을 써야 하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켰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북한의 기술수준과 약한 경제력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파괴방지를 위한 기술과 설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북한이 국가차원에서 추진한 주요정책들도 모두 비환경적이었던 사실은 지적할 수 있다. 에너지·금속·비철금속·비료·군수산업 등 공해유발산업에 대한 집중투자, 1960년대 이후 추진한 4대군사노선에 의한 군사화정책, 1970년대의 자연개조 5대방침에 의한 다락밭 건설, 1980년대의 10대전망 목표로 추진한 간석지 개간, 농산물 증산을 위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 등이 그 예이다. 특히 4대군사노선의 하나로 추진 하였던 '전국토의 요새화' 정책과 상시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실재없이 반복되는 대·소규모의 군사훈련은 토지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였다. 또한 '전인민의 무장화'와 '전군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적으로 파괴적인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무기, 탄약, 기타 군수물자들의 엄청난 생산은 또 다른 환경오염과 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계급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환경권 보장 실태

지배계급이 북한사회 내에서 누리는 특권은 사회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의·식·주생활에서 인민대중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윤택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생활환경과 그들이 작업하는 노동환경에서도 인민대중보다 문화위생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 넓은 공간의 주택을 배정받고 상하수도시설과 녹지공간이 잘 조성된 주택

지역에서 거주하며, 문화위생적으로 깨끗한 작업환경속에서 일과를 보내는 것이다. 반면 인민대중은 그렇지 못한 주거공간과 작업공간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생산보다 근로자의 건강을 앞세운다는 노동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들은 위생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노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영화 「전진하는 조국」에서는 북한이 현대적인 공업을 일으켜 세웠다고 자랑하는 장면속에 광산근로자가 방독면이나 다른 보호장비없이 먼마스크만을 쓰고 작업하고 있으며, 용광로근로자는 안면보호장비나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조그마한 안경만을 쓰고 허술한 작업복차림으로 작업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서의 차별성은 계급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존재한다. 특히 수도인 평양과 기타 도시 및 농촌 간에 이러한 차등이 두드러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양에는 사상이나 성분, 그리고 출신배경 등이 좋은 사람들만 살 수 있으며, 북한에서는 평양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다. 평양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양호한 식량배급을 받고 있으며, 거주환경과 노동환경이 훨씬 문화위생적이라는 사실은 평양의 잘 정돈 된 도로, 가꾸어진 가로수와 공원 등을 보여주는 북한의 선전영화 「평양의 모습」, 「우리가 본 평양」 등과 해외동포들의 평양에 대한 소감을 피력한 영화 「평양을 찾아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남북문제연구소가 촬영한 영화 중 「다시 찾은 함흥」편에서는 잘 정돈되고 깨끗하게 보이는 시중심가와와는 달

리 아파트 뒷거리나 골목을 찍은 화면은 불결한 거리와 우중충하고 초라한 슬라브주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 「해주지역 방문기」, 「원산지역을 찾아서」, 「국토의 최북단 청진, 나진」, 「두고온 고향 신의주, 영산」 등의 영화에서도 청진, 원산, 신의주, 나진, 해주 등의 도시가 한결같이 우중충하고 평양보다 청결치 못하다는 인상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북한에서는 계급과 지역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자연환경에 차이가 있어 상층의 지배계급은 문화위생적인 환경이 잘 가꾸어진 평양이나 기타 쾌적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반면, 피지배계급인 인민대중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당과 국가의 지시에 의해 정해진 지역에서 저급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환경권 보장의 정치적 이용 실태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환경파괴 실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에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개선과 개혁에서 찾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의 강화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가뜩이나 궁핍한 물질생활을 영위하는 북한주민들의 심신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문화위생적인 자연환경 보장사업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대중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으로 이용하여 인민대중운동의 자발성을 촉발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환경보호사업의 강화를 위한 사상교육의 강화와 통제

의 필요성을 이유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강화시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민들의 내면에 각인시키고 체제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오염과 파괴가 없는 인민의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의 선전이 자체의 수령에 의해 비판되어지고 있는 것이 북한 환경실태의 현주소이다. 또한 그 선전의 허구 속에서 살아 가고 있는 주민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동원되고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의 정신과 교시를 그대로 이어 받는다는 김정일체제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환경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지 못하며, 생활현실 속에서도 환경의 오염과 파괴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Ⅲ.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실태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정치범수용소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북한당국에서는 ‘00호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특별독재대상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이주구역’ 등으로 부르고 있다.

미 국무성이 공개한 한국전쟁 당시 노획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집단수용소를 해방 이후 194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악질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수용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 가담자가 수용되었다.

이러한 수용소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범 유배소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56년 ‘8월종파사건’ 이후이다. 북한당국은 연안파 등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처형을 면한 종파사건 연루자 및 그 가족들을 산간벽지에 집단수용시켜 특별 관리함으로써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에 대한 가혹한 보복과 함께 반김일성 분자들의 세력확산을 막고자 하였다.

그 이후 북한은 1966년부터 1년간 주민재등록사업을 통하여 100만 노동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을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전주민을 3계층 51부류로 나누었는데, 그 당시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 중 중

파분자 및 반혁명분자 약 6,000명은 인민재판에 의해 처형되었다. 당시 처형을 모면한 1만 5,000여 세대 종파연계자 및 가족 7만여 명은 내각결정 제149호에 의거하여 산간벽지에 설치된 149호 대상지역에 수용되었는데, 그 중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은 이들과 특별히 분리되어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었다.

초창기에는 수용소 면적이 남한의 면단위에 해당하는 1개 리 정도에 그쳤으나, 1973년부터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동이 시작된 이후 수용소와 수용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80년 노동당 6차대회에서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이후 세습체제를 반대한 당·군·정 간부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최소한 4개소가 더 늘어나 1982년에는 8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10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사회와 격리된 채 종신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이후 1980년대 말 동구의 붕괴로 자유와 개혁의 바람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더욱 늘어났으며, 수용인원도 약 20만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용소는 나치 독일제국하의 아우슈비츠나 구소련의 시베리아 유형장을 능가하는 가혹한 인권유린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상 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치사상범 범위 및 처벌

북한은 정치사상범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여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숙청해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죄목을 붙여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되살리려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강한 독재를 실시합니다”고 언급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정적들이나 사회주의건설에 비협조적인 자들을 정치사상범으로 몰아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현행 북한형법상 규정된 정치범 해당 죄는 죄질에 따라 ‘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동선전죄’, ‘조국반역죄’ 등이 있다. 44조의 국가전복음모죄는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에 해당되며, 주로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이 이 죄목에 해당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유배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김정일이 자신의 비판자나 정적제거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감한 인원이 1만 5,00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제46조의 반동선동선전죄는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

한 자”를 징계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는 주로 해외정보유입을 차단하여 내부동요를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초기에는 북송교포 및 월북자와 남북여류자들 중 불평분자들을 처벌하는데 활용되었으나, 동구 및 구소련 붕괴 이후 내부 단속을 위하여 해외유학생 및 해외근무자나 출장자 중 해외실정을 주위에 유포한 자들을 주로 처벌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제47조의 조국반역죄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일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최근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국외 탈주자가 늘게 됨에 따라 동 죄목으로 처형되거나 혹은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용되는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북한은 정치사상범을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44조로 부터 55조까지 12개조항에 처벌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들을 적법한 재판절차없이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심의와 재판절차를 밟아서 교화소에 보내는 여부를 판결하나, 정치사상범은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 심문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하기 때문에 설령 죄가 없더라도 무혐의 방면은 없다.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처벌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도 함께 처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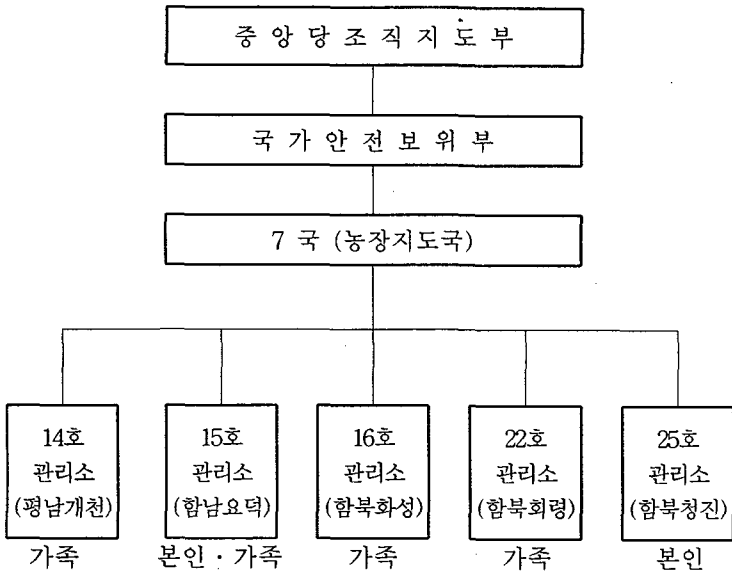
정치범수용소 현황 및 운영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및 자강도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현재까지 약 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치범수용소의 전체 규모와 정치범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함경북도 회령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하다 1994년 10월 귀순한 안명철은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농장지도국) 산하에만 10개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으나 중국 국경에 인접하여 위치가 탄로난 함북 온성군 2개소와 평양에 인접하여 비밀탄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5개소는 폐쇄되었고, 귀순 당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평남 개천의 '14호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관리소', 함북 화성의 '16호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관리소' 등 5개소로 통폐합되었으며, 전체 수용인원 약 20만명도 재배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수용소들은 대부분 오지나 탄광지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송호리수용소'(1991년 1월 폐쇄)의 경우처럼 비밀탄로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감옥 형태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명철은 이들 정치범수용소 중 '송호리수용소'와 함북 청진의 '25호관리소'는 정치범 본인이 수용되는 1급 정치범수용소라고 밝혔고, 이 외에도 국가안전보위부 '3국' 내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표 7>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해산된 수용소

명칭	위 치	해산일시	해 산 이 유
11호	함북 경성 관모봉아래	'89년 10월	김일성 별장건설
12호	함북 은성 창평로동지구	'87년 5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13호	함북 은성 종성로동지구	'90년 12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26호	평양 승호구역 화천동	'91년 1월	평양인접, 비밀탄로
27호	평북 천마	'90년 11월	이 유 불 명

* 귀순자 안명철의 증언에 따른 수용소 현황표임.

한편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여론이 높아지자 이창하 조선인권연구협회 서기장은 1995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국제사면위원회(AI) 조사단을 초청하여 '사리원교화소'를 방문케 하였다. 북한당국은 AI 조사단원에게 방문 당시 북한의 전체 죄수는 800~1,000명이며, 이들을 3개 교화소에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정치범 240명은 '형산재교육소'에 수용하고 있으며, 귀순자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북한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 가능하다. 출소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치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설사 강제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

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어 직업, 여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출소 후 일반 형사범죄를 범할 경우 10년이 가중되는 등 계속해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수용소 중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만이 유일하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수용소는 15호관리소 내의 혁명화구역뿐인 셈이다.

혁명화구역에는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와 조총련 간부와 인연이 깊은 북송자나 그 가족들이 수용된다. 이들을 수용소에 수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한 뒤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순응케 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층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사상범들은 모두 종신수용소에 수감된다. 이들 중 극히 일부는 종신수용소에서 혁명화구역으로 이감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귀순자인 안명철과 강철환씨의 증언에서 드러났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개의 경우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되면 다시는 사회로 돌아 올 수 없다는 것이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수용소 조직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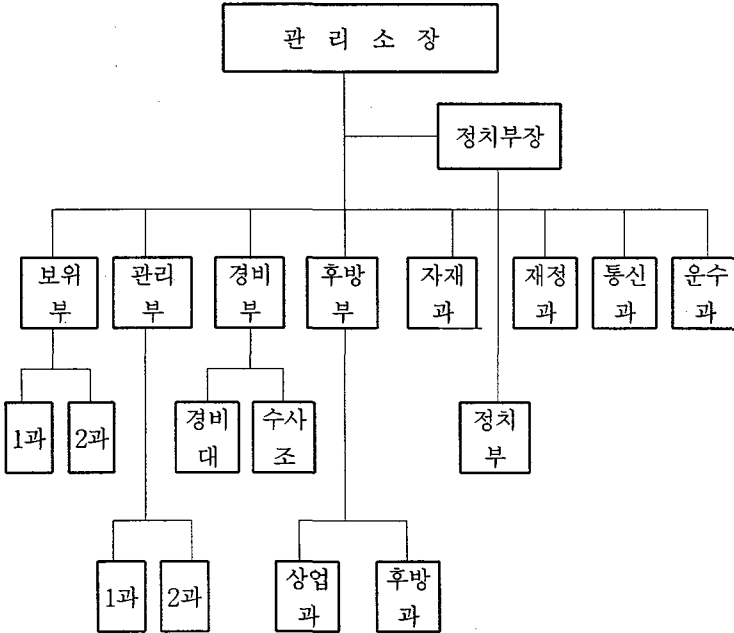
각 수용소 규모는 보통 50~250km² 정도이며 수용소당 약 5,000여 명 내지 5만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독재대상구역 수용대상 선정 및 관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관할지도부 지도하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7국 내의 각 수용소에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소장 예하에 정치부, 보위부, 관리부, 경비부, 후방부 등이 있다.

정치부는 보위부원, 경비부대의 사상동태 및 비리를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부서이며, 보위부는 수용자들의 사상동태를 계속 감시하여 이들 중 악질분자들(도주, 살인, 불평분자 등)을 잡아 내어 처형 또는 보다 강도높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역할을 한다. 관리부는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여 각 수용소에 주어진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경비부는 수용소의 외곽경비 업무와 함께 수용소 내부에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났을 때 무력으로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보위부원과 경비부원들의 식량이나 부식을 공급하는 후방부와 특별독재대상구역 안에 필요한 건설용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과와 탄광에 필요한 화약을 제공하는 화학과 그리고 재정과, 운수과, 통신과 등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들 부서 중 수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보위부와 경비부이다.

<표 8> 수용소 조직표



* 북한에서는 수용소라는 표현 대신 '관리소'라고 표현하며 정치범을 '이주자'로 부른다.

** 동 조직표는 안명철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것임.

수용소 경비 실태

각 수용소에는 외곽경비를 위하여 3~4m 높이로 이중 삼중의 철책선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조망을 따라 1

km 간격으로 약 7m 높이의 감시망루 초소가 설치되어 수용자를 감시하고 있다. 감시망루에는 AK자동소총과 수류탄 및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경비병이 지키고 있다. 이와 아울러 경비부의 중무장한 경비대원은 군견과 함께 수시로 외곽 순찰을 하고 있으며, 경비취약지역은 매복조를 통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따라서 탈출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간혹 열악한 수용소 환경을 참지 못하고 탈출하다 체포된 자는 재판도 없이 공개총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그 숫자는 매년 1개소에 약 15명~20명 정도나 된다. 도주자들은 반드시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되는데 이들을 잔인하게 죽여 다른 수용자들이 공포에 질려 탈출할 엄두를 못내도록 하고 있다.

수용대상 및 절차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할 반혁명분자 색출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장한다. 수용대상자는 각 지역의 담당보위부 지도원이 색출하여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심사만으로 결정하는데 평양시 용성구역 마람지구에 있는 '마람비밀초대소'가 대표적인 정치범 색출기관으로 악명높다. 색출 대상자는 주로 반당·종파분자, 반혁명분자 등 김일성·김정일체제 위협분자를 비롯해서 과거 지주, 종교인, 친일파 및 김정일 후계체제 반대자, 해외탈주기도자와 그 가족 그리고 불순복송교포 등이 그 대상이며, 동구 공산권국가들

의 붕괴 이후 내부 단속을 위해서 해외실정을 잘 아는 유학생과 해외근무자 및 출장자 중 주민에게 외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유포하는 자도 색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수용자도 많다. 예를 들면 고려호텔 안내원이었던 김명준은 외국방문객의 짐을 운반해 준 대가로 약간의 사례비를 받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첩혐의로 마람초대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를 간첩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결국 '조국배반죄'명을 억지로 붙여 요덕수용소에서 3년간 강제노동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1995년 2월 1일 국무부가 발표한 「'94 각국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정치범 중에는 김일성 사진이 들어 있는 신문위에 앉았다는 죄명으로 붙잡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도 있다.

1987년 3월 3일 귀순한 김광호는 인민반의 주민통제 정책으로 겪은 피해에 대해 증언하였다. 김광호 부부는 인민반 반장에게 열쇠를 맡기고 출근을 했다가 당에서 내려 온 유일 사상 검열성원의 점검을 받게 되었다. 검열성원과 인민반장은 모든 가정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김일성부자 초상화와 도서를 점검하였다. 당시 김광호의 집에는 아이의 오줌에 젖어 맨 앞장에 있는 김일성 초상화가 오손된 '로작'의 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발견한 검열성원이 김의 부부를 김일성 사진을 잘못 간수했다고 고발함에 따라 결국 김의 가족들은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이 세상 힘들어 못 살겠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상점에 비누 한 장, 치약 한 개 파는 것이 없으니 이 곳이 상점이나”라는 식의 항의 한 마디만 해도 정치범으로 몰아서 수용소로 보낸다. 1992년 10월 평남 순천 소재 배급소에서 식량배급을 받지 못한 여자 한 명이 “왜정시대보다 못하다”고 고함을 지르자 주위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집단항의 사태로 발전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결국 사회안전부에 의해 해산되었으나, 이 여인은 당일 밤 가족과 함께 행방불명되었다.

어떤 이유로든 일단 정치사상범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일체의 재산을 몰수당한 후 야간에 전가족이 함께 수용소로 이송된다. 아무런 사전통보나 재판절차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척까지도 그들이 어디로 왜 끌려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 안다고 해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화를 두려워 하여 당국에 항의하거나 보다 더 상세히 알아볼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날 이웃의 누군가가 야간에 가족과 함께 없어지면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끌려 갔나 보다 하고 추측만 할 뿐 더 이상 이들의 행방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극도의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김일성·김정일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있다.

수용자 대우 및 일과

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당하

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친지들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시켜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시킨다. 수용자들은 새벽 5시반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한 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으며, 인원점검시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는 경우 심한 구타를 당하고, 3회 이상 지각할 경우 월지급 식량에서 하루분을 공제당한다.

작업은 조단위로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5명이 1조가 되어 저녁 9시까지 연장작업을 실시한 후 10시부터 2시간 정도 김일성 부자 덕담이나, 김부자 찬양노래, 주체사상 학습을 받는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인데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밥으로 끼니를 떼운다. 저녁 6시경에 담당 보위부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당일 할당된 작업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작업이 당일목표에 미달된 경우 연장작업을 지시한다. 단체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소 내에는 일체 상호방문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작업과 학습시간 이외에는 2명 이상 짝지어 다니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한다. 주간에도 통행증이 있어야 수용소내 마을 간의 이동이 가능하며, 만약 수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 즉시 비상종을 쳐서 수용소 전체에 알리고 수색을 한다. 통행이 완전 금지되는 밤 10시 이후 이동하다 순찰자에게 적발되면 1개월간 중노동에 처해지며 3회 이상 적발시는 수용소 내 유치장에 수감된다.

통금 이후에는 보위부원과 작업현장 감독 3~4명이 조를 짜서 매일 순찰하면서 가택까지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시도 모자라서 보위부는 수시로 위장 수용자를 침투시켜 정치범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한다.

수용자의 식생활

북한의 일반노동자 배급은 노동의 강도에 따라 쌀과 잡곡을 섞어서 700g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특별 독재대상구역에 수감되면 일반노동자보다 더 강도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의 배급을 받는다. 가족세대 경우 성인 1인당 주식은 1일 강냉이 550g을 배급받고 있으며, 부식물로는 약간의 소금과 주 1회 정도 도토리로 만든 된장을 한 숟갈 정도 배급받는다. 그나마 이것도 작업을 태만히 했다고 판정되면 그 정도에 따라 수시로 배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결국 수용자들은 한 달의 반 정도는 산나물이나 나무열매 또는 풀뿌리 등으로 연명한다.

수용소에서 죄를 지어 독신중대에 수감된 수용자에 대한 주·부식지급은 더욱 열악해서 1일 강냉이 360g과 소금만을 제공하며 작업 태만시 90g을 더 공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돼지나 소 구유통속에 남아있는 사료찌꺼기를 먹기도 한다. 심한 경우 쇠뿔 속에 묻어 나오는 강냉이 알이나 콩 등을 씻어 먹기도 하고, 영양보충을 위해 개구리와 개구리알 또는 쥐, 뱀 등을 눈에 띄는

대로 잡아먹는다. 귀순자 강철환과 안혁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들은 수용소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나면 영양실조로 평균 15kg이상씩 몸무게가 준다.

봄철이 되면 산나물이나 버섯이 수용자들에게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긴요한 식량이 되는데, 도시에서 온 정치범들은 경험부족으로 어떤 나물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나물이 독풀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풀이나 독버섯을 잘못 먹고 온몸이 퉁퉁 부어 고생하는 사례가 많다.

수용소의 주거환경 및 생활상

수감자들이 사용하는 가옥은 독신자들의 경우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세대의 경우 흙벽돌, 판자, 거적등을 이용하여 수용자들이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실정이다.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만들었기 때문에 실내에는 먼지가 많다. 지붕은 판자위에 거적을 덮어 사용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판자가 썩어 비가 오면 새고 겨울에는 보온이 안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방바닥에는 피나무 껍질로 만든 다다미를 깔고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수감자들의 주거환경은 마치 원시인들의 생활환경과 흡사하다.

전기는 수용소 내에서 자가발전한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발전 용량이 미미하여 매가정마다 전구 한 개만 달게 하고 있다. 그나마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만 공급되고 있고, 전력이 약해 불을 켜

도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빛이 희미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소는 상급에 속하며, 어떤 수용소는 아예 전기공급이 없어서 식사시간에만 광솔로 불을 밝히는 곳도 있다.

수용소 내에서는 모두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데다 시설도 부족하여 아침에는 수십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 용변을 보아야 하고, 화장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강냉이 잎, 콩잎, 호박잎, 취잎 등을 화장지로 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료공급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겨우 밥이나 해서 먹을 정도의 연료밖에 없어 겨울에 추운 날은 온 가족이 한 데 모여 몸을 비비며 추위를 쫓느라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심지어 얼어죽는 사람도 있다. 식수도 하천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의복 공급 또한 충분하지 못해서 가족세대의 경우 수용기간 중 모포 1장과 상하누빈 동복 1벌이 지급되며, 3년에 한번씩 작업복을 지급하나 독신자수용소는 이것마저도 공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감당시 입고 갔던 옷을 출감될 때까지 기워가면서 입는다. 신발은 1년 6개월에 노동화 1켤레씩 지급되고, 겨울신발인 솜동화는 5년에 1켤레씩 지급되며 양말이나 속내의는 일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여름철에는 맨발로 노동을 하기 일췌이다. 겨울에는 천 조각으로 얼굴·팔·다리를 감고 생활하기 때문에 동상으로 발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생긴다.

따라서 수용자 대부분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동으로 폐렴, 결핵 감염 및 후진국에서나 생기는 펠라그라병 등의 질병에 걸려·시달리고 있으나, 모두 예외없이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또한 고환염이나 치질에 걸린 사람들도 작업장에 동원되는데, 이들은 엉덩이를 양손으로 벌려 잡고 걸거나 오리걸음으로 걸다가 숨이차 주저앉는 경우 걸음 속도가 늦다고 구타까지 당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작업반장은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정되는 수용자를 중환자가 수감되는 요양소로 보내는데, 여기서도 이들을 치료해 줄 의사나 약이 없기 때문에 단지 격리 수용되어 죽든 살든 방치될 뿐이다. 따라서 매년 1개 수용소에서 이렇게 방치되어 죽는 사람이 약 40명~50명에 이른다.

수용소내 집단학살 및 처형 현황

정치범수용소내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집단학살이 있었다는 점이다. 안명철에 의하면 1986년 10월 함북 온성의 12호관리소에서 정치범들이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소내 보위원 가족마을을 습격하여 보위원 가족 수백명을 살상하였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비대 1개 대대병력을 출동시켜 봉기가담자를 포함한 청장년 약 5,000여 명 이상을 사살하였다.

특별독재대상구역의 열악한 환경과 고통 등을 이기지 못하

고 도주한 자 및 보위부원에게 반항하거나 보위부원을 구타한 자는 반드시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하거나 총살한다. 강철환·안혁·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이 같은 처형과 작업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인원은 1개소에서 매년 수백명에 달한다.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폐쇄된 승호리수용소의 경우 1개월에 3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적도 있다.

공개총살 대상자가 발생하면 1~2일 감금해 두었다가 통상 아침 10시경 작업장에 있는 수용자들을 전원 강변에 집합시킨다. 보위부원 2명이 처형 대상자를 나무 말뚝에 세우고 눈과 가슴, 다리 부분을 포박하여 눈은 형겁으로 가리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 후 관리소장이 처형대상자의 처형식을 선포한다. 약 5분에 걸쳐 죄를 설명한 후 형법 몇 조에 의거하여 총살형에 처한다고 선언하면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보위부원 3명이 자동소총으로 머리와 가슴과 다리 부분에 각각 3발을 쏘아서 처형한다. 그리고 시체는 가마니에 말아서 인근 야산에 매장한다.

그러나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공개처형은 공포심을 조장하여 수용자의 순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처형이 너무 잦아 면역이 생긴 데다 처형에 대한 반발심과 분노만 조장됨에 따라 1984년부터는 말썽많은 공개처형 대신 비밀처형을 시작했다고 한다.

비밀처형 대상자는 보위부원의 비리를 알고 있는 자, 도주자, 살인기도자, 불평불만자, 임신한 여자 및 관련 남자 등인

데 비밀처형 집행은 보위1과 담당이다. 처형방법은 보위원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총으로 사살하거나 몽둥이로 타살, 돌로 쳐죽이기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한다. 또한 귀순자 안명철은 국가안전보위부 3국 관할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비밀처형과 함께 수용소 의사들이 일본의 731부대나 나치 수용소 사례와 비슷한 생체 실험을 한다는 증언을 하였으나, 귀순자들이 증언하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실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남북억류자 및 월북자 수용실태

북한은 휴전 이후 1955년 5월 28일 대성호와 어부 10명을 강제납치한 이후 1995년 5월 30일 제86 우성호의 어부 8명(3명 사망)을 납치하는 등 415명의 어부를 북한에 억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1995년 12월 26일 제86 우성호의 선원 5명과 유해 3구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시킴으로써 1995년 12월 현재 총 407명의 어부를 억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70년 6월 5일 납치한 해군 I-2정 승무원 20명 전원을 선박과 함께 억류하고 있고, 1969년 12월 11일 납치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과 승객 중 39명은 66일만에 송환하고 12명은 계속 억류하고 있다. 그리고 1979년 4월 노르웨이에 연수 중 북한 공관원에 의하여 강제 납치된 고상문과 1995년 7월 중국 연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강제 납치된 순복음교회 안승운 목사 등을 포함하여 현재 총 442명(사망

자 포함)을 강제 납북하여 억류하고 있다. 이들 중 KAL기 스튜어디스였던 성경희와 정경숙 등 일부 납북억류자들은 대남방송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사실이 공개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1994년 7월 30일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특별보고서에서 동 위원회가 입수한 1990년 당시까지 ‘송호리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 49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명단 중에는 재일교포가 26명, 납북 또는 월북자가 1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995년 12월 국제사면위는 1993년과 1994년에 이어 북한에 관한 세 번째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부록에서 63명의 정치범 명단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국제사면위에서 발표한 정치범 명단 중 조호평과 시바타 고조(한국명 김호남)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수감되었던 사실이 없으며, 북한이 수감사실을 인정한 두 사람마저도 탈출 시도나 열차사고로 인해 모든 가족과 함께 사살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북한당국이 답변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사면위가 발표한 명단 중에는 최연단, 이성남, 최경호 등 러시아 등지로부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제사면위는 이들이 수감되었거나 탈출죄 등의 죄명으로 사형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9> 남북억류자 및 월북자 수용현황

성명	전직 및 입북경위, 수감 실태
강중석	서독광부. 1971년 북한 정보원에 의해 강제납북.
고상문	전 수도여고 교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연수중 여권분실을 신고하려 한국대사관을 찾던 중 택시기사의 착오로 북한대사관에 들어갔다 북한 공관원에 의하여 강제 납북. AI가 송호리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발표한 직후 북한은 1994년 8월 「평양방송」을 통해 고씨가 자진 월북하여 지리학연구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고씨 가족이 유엔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북한은 고씨가 북한에서 재혼하여 살고 있다는 회신내용을 유엔을 통해 1995년 고씨의 가족들에게 통보해 옴. 그러나 정부는 북한측 답변의 신빙성에 의의를 제기하고 고씨의 송환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김보겸	택시기사.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강제 납북.
노준우	농부.
신숙자	간호원. 남편 오길남을 따라 1985년 11월 북한대사관을 통해 월북. 평양 창광거리에서 살다가 1986년 11월 오길남이 북한을 탈출하자, 딸 2명과 함께 요덕수용소에 수감. 1988년 1월 부터 1989년 2월까지 요덕수용소내 결핵 요양소 간호원으로 일함. 북한당국은 수감사실 부인.
염규환	제약회사 직원. 1981년 국제회의 참석차 일본에 출장갔다 조총련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 납북
유성근	주서독 한국대사관 노무관. 1971년 4월 서베를린을 여행하다 북한 공작원에게 강제 납북됨. 당시 부인 정순섭씨와 두 딸 경희(7살), 진희(1살)양도 함께 납북.
이장수	조병욱과 함께 월북.
이준광	육군 중령. 진급 누락에 불만을 품고 월북.
이치수	농부.
정종도	재미 과학자. 인도네시아를 여행중 북한 공관원에 의해 강제 납북. 북한당국은 1989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조병욱	해군 수송기지창 근무원. 1976년 10월 월북.

* 국제사면위 보고서 및 귀순자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

승호리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남북·월북자 명단과 당시 직업 및 입북경위는 <표 9>와 같다.

전직 당·군·정 간부 및 가족 수감 실태

일단 정치범으로 낙인 찍히면 당 고위간부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강제수용소로 연행되는데, 이들이라고 수용소 내에서 특별 대우를 해주지는 않는다. 국제사면위원회 및 안혁과 강철환, 안명철 등에 의해서 확인된 북한의 주요 전직 고위층 및 그 가족 수감자는 <표 10>과 같다.

<표 10> 주요 전직 당·군·정 간부 및 가족 수감현황

성 명	전직 직책 및 수감 이유, 수감 실태
권성철	외교부 참사실장. 1988년 5월 대양무역회사 사장 김정민과 함께 자이레에 출장갔을 때 김정민의 남한 귀순을 막지 못한 죄로 1988년 요덕수용소에 수감. 1991년에 출소하여 양강도 백암산골의 농장원으로 배치.
김경련	중앙당 재정경리부장. 1982년 남한으로 탈출기도한 혐의로 체포, 직계가족 및 동생가족 등 8명이 수용. 본인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나머지 가족은 요덕수용소에 수감.
김경숙	인민무력부 상좌 딸. 김창봉 부수상 숙청시 가족들이 1973년 12호 수용소에 수감. 1987년 5월 22호로 이감. 탄광 채탄공
김광협	당비서. 반당·증파분자.
김길화	국가안전보위부 간부 딸. 김병하 숙청시 가족이 수감. 22호 운수직장차 도색공.

성명	진직 직책 및 수감 이유, 수감 실태
김도만	당비서. 당정책에 불만 제기하다 수감.
김동규	부주석. 김정일 후계체제 반대하다 수감.
김병하	국가안전보위부장. 진가족 및 친척 4세대와 함께 1987년 요덕수용소에 임시 수감, 조카 사위들은 강제 이혼시켜 석방하고 친척들은 다른 정치범수용소로 이감.
김상철	전 인민무력부 군관 아들. 김창봉 부수상 숙청시 가족이 수감. 22호 운수직장 하체수리공.
김상일	북한무역부 참사관. 북한당국은 1991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김성호	인민무력부 중장. 김창봉 부수상 숙청시 함께 수감. 13호 판리소 운수대 전기수리 조장으로 있다가 22호로 이송되어 식료공장 수리조장으로 배치.
김양춘	7집단군사령관. 종파·유일사상체계 문란죄.
김영수	여맹 부위원장.
김창봉	부수상, 민족보위부장. 종파·유일사상체계 문란죄.
김형락	김일성 전용기 비행사. 1977년경 김평일 측근으로 지목되어 진가족과 함께 요덕수용소에 수감.
김희철	당간부 아들. 부친이 김정일 지시사항을 왜곡·집행한 죄로 가족이 모두 수감, 22호 운수직장 하체수리공.
박금녀	남편이 중앙당 간부. 간첩혐의로 수감. 13호 운수대 재봉공으로 일하다 1990년 12월 16호로 이감.
박금철	부수상. 당정책에 불만 제기하다 수감.
박원호	평양외국어대 학장 아들. 자이레 유학중 그리스여자와 가까워져 탈출을 기도한 혐의로 2년간 요덕수용소 수용 후 정평탄광으로 배치.
방철갑	해군사령관 상장. 1984년 수감, 아들(방철)·딸(방정숙) 등 가족 7명과 함께 수용. 1989년 출소하여 요덕군 도시건설대 경비원으로 배치.
양승룡	리비아대사. 1988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요덕수용소에 수감, 가족들은 양강도 백암산골로 배치.
오희성	건설건재대학 부학장 아들. 동독에 연구생으로 파견된 후 독일여자와 관계를 맺고 '자유주의'를 했다는 이유로 1988년부터 2년간 요덕수용소에 수용.

성 명	전직 직책 및 수감 이유, 수감 실태
유장식	당비서국 비서, 당정치국 후보위원. 김정일후계 반대하다 숙청. 북한당국은 1987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윤순달	당중앙위 연락부 부부장. 종파. 북한당국은 1981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이기석	남로당 부위원장. 종파.
이나영	역사학자, 북한 최고의 역사이론가. 김일성 우상화와 역사날조 작업 동참 거부. 북한당국은 1977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이동호	인민군 중장, 노동당 중앙위 위원. 1982년 방북한 군사대표단 영접 이후 숙청.
이만호	부주석 이종욱의 막내아들. 핵물리학 연구를 위해 소련에 유학 중 동료연구생들에게 북한체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1987년부터 요덕수용소에 수감.
이진우	시나리오작가. 「이름없는 영웅」 등 다수 창작. KGB에 포섭된 간첩혐의. 가족 5명은 분산 수용.
장옥희	만수대 창작사 작가 딸. 부친이 자본주의 찬양.
전승훈	중국대사 전명수 아들.
정병갑	3집단군사령관. 종파. 유일사상체계 문란죄.
조복애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의 애첩. 북한당국은 1984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최순애	인민무력부 상좌 딸. 부친 발언실수로 1974년 수용소로 수감. 22호 탄광 채탄원.
최덕환	만수대 창작사 과장, 김일성 인물조각 전담예술인. 1986년 3월 김일성 인물조각을 잘못 만들었다는 죄명으로 수감. 1988년 12월 불평분자로 낙인찍혀 완전통제구역으로 이감.
한상일	함흥시 당조직비서 아들. 부룬디 농업고문단 통역으로 파견되었다가 귀국후 주민들에게 외국실정을 전파한 죄로 1987년부터 3년간 요덕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백암협동 농장원으로 배치.
한창해	외교부 통역관.
허강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아들. 1986년 북한체제 비판과 중국 개방정책을 찬양했다는 아버지의 신고로 요덕수용소에 수감. 3년만에 아버지 힘으로 출소.

성명	전직 직책 및 수감 이유, 수감 실태
허봉학	대남사업 총국장. 종파. 유일사상체계 문란죄.
허익	노동당 고급당학교장, 북한당국은 1976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홍성률	부총리.
홍순호	당군사부장. 김정일과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동창생. 1986년 김정일의 특별지시에 의거 전가족과 함께 혁명화구역에 수용되었다가 1988년에 출소하여 맹산군 말단 농장원으로 배치.

* 귀순자 증언과 국제사면위 보고서에 의거하여 작성.

이 외에도 수많은 당·군·정 간부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해외 유학생 출신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하루아침에 정치사상범으로 전락하여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지금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2. 시베리아별목장내 인권침해 실태

1995년 12월 현재 북한은 별목공 약 5,000명 이상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근로자를 러시아에 주재시키고 있다. 러시아 관계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은 하바로프스크주와 아무르주의 별목장 외에 러시아측과의 계약에 의해 영농(아무르주), 탄광(시베리아의 노보·쿠즈네츠크 노천탄광), 서비스 분야와 후생편의시설 건설분야(케메로보, 연해주)에서 일하고 있다.

이 중 시베리아별목장은 북한노동자들이 외화벌이 수단인 하나로 1967년부터 일해 오고 있는 곳이다. 별목장 내에는 러시아 행정권의 통제가 미치지 않아 일부 별목공들은 갖은 인권탄압과 최악의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을 탈출하여 현재까지도 러시아와 중국 등을 전전하고 있다.

북한은 별목공의 탈출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경제관계의 강화와 외화벌이를 위해 근로자들의 러시아 진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또한 1년 이상을 끌어온 북·러시아간 임업협상이 1995년 2월 합의에 도달하여 새로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북한은 다시 종전 수준만큼 근로자들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별목장내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탈출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벌목장 운영실태

북한은 1967년부터 구소련과 5년 단위로 임업협정을 체결하면서 1만 5,000여 명 이상의 벌목노동자를 파견해 왔다. 러시아측에서는 임지·설비·수송수단·유류·자재 등을 제공하고, 북한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다.

재러 임업사업소는 크게 대표부와 연합기업소 및 각 산하 사업소로 구분된다. 대표부는 당위원회, 안전부, 업무부, 후방부, 대외부, 동력부, 생산부 및 기타 대표직속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대표부 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직위를 갖는 사람은 총지배인이 아니라 당비서이다. 당이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이 안전부장이고, 그 아래에 총지배인이 있다. 이런 체계는 산하 사업소와 중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연합기업소나 산하 사업소도 비슷한 편제를 보이고 있다.

사업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1개 사업소당 600~800여 명의 벌목공이 있고, 이를 중대와 소대로 나눈다. 1개 중대는 60~70명, 1개 소대는 5~7명으로 구성된다. 중대는 벌채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산지중대, 적제한 나무를 운반하는 운재중대, 나무를 치수별로 절단하고 크기별로 분류해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상차중대, 작업후 남은 나무를 제재가공하는 목편중대, 목재운송용 도로를 개설·보수하고 사업소내 소요건물 등을 건설하는 도로중대, 각종 차량설비를 수리하는 수리

중대, 부식물을 생산·공급하는 부업중대 등으로 구분된다. 산지 및 운재중대와 같이 벌목현장에서 가까운 쪽을 ‘산판’이라 부르고, 나머지 기차 정거장에 가까운 쪽은 ‘바닥’이라 부른다.

벌목공들의 작업실태 및 임금

‘산판’쪽은 일하기 좋은 동절기의 경우 평균 12시간 이상의 작업을 한다. 동절기에는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나, 눈이 덮히고 해충이 없어 도로상태와 작업환경이 하절기보다 양호하며 벌목·목재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절기의 경우 작업능률이 매우 저하되어 평균 8시간 이상으로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날씨가 고온다습할 뿐만 아니라 우기에 눈이 녹아 도로상태가 불량하고 각종 해충이 많아 작업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동절기의 가혹한 노동조건과 안전관리의 허술로 인해 작업 중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매년 150명당 1명꼴로 벌목공이 사망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체그도문 중앙병원에서 20여년간 북한 노동자를 진료해 온 체레파노프 외과과장은 “(이 병원의) 북한인 입원환자는 연간 10~15명이다. 그 중 반수는 목재에 깔려서 입원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체부검과 사망진단서 작성을 북한측 의사가 전담한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시사

주간지 「아에라」(AERA)는 1994년 3월 28일자 보도에서 러시아 인권위원회가 한 달에 10명꼴로 사망하는 북한 벌목공에 대해 러시아 검찰과 내무부의 조사가 있었야 한다는 서한을 엘친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전한다.

벌목공의 임금은 소대별로 작업량에 따라 도급제로 지급되며, 동·하절기 임금이 상이하다. 임금 중에서 식대·조직비·출판물 보급비 등은 원천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바꾼 돈' 형식으로 재북가족들에게 송금된다. 벌목공이 받는 바꾼 돈과 일반 돈은 암거래시장에서 대개 몇 배에서 몇 십배로 교환되기 때문에 이들이 받는 임금은 실제로는 북한 일반노동자가 받는 평균 임금의 몇 배에서 몇 십배에 달할 수 있다. 또한 바꾼 돈이나 달러가 있어야 '외화상점'이나 '재쓰립업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내 일반상점에 상품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벌목공에게 주어지는 바꾼 돈은 아주 큰 특권이다.

벌목공들의 의·식·주 및 기타 생활실태

벌목공들이 지급받는 피복류는 작업복(여름용·겨울용) 2년에 1벌, 모자 3년에 1개, 장갑 매월 1켤레, 신발(여름용·겨울용) 1년에 1켤레 등이다. 속내의 및 외출복 등은 벌목공으로 파견시 북한에서 구입한 1~2벌씩을 휴대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러시아상점 등에서 구입한다. 치약·칫솔·비누 등은 개인별로 구입하고, 주로 러시아산이나 남한산

을 쓰고 있다. 대표부 및 연합기업소 노동자들에게는 작업복 지급이 제외된다. 따라서 별목공들의 의복상태는 매우 불결한 상태이며, 동절기에는 기본적인 체온 유지마저 힘든 형편이다. 최근에는 경제난의 악화로 공급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별목공들은 북한에서 수송해 온 백미(1일 650g), 콩·된장 등의 부식물을 10일에 1회 정도 중대별로 배급받고, 현지에서 자체 생산한 무, 배추 등을 부식으로 먹고 있어 북한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식량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북한내 식량난이 심각하여 절약미 명목으로 식량을 공제하고 간부들이 밀주제조용 등으로 식량을 착복하고 있어 중노동을 하는 동절기의 경우 절대량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리고 중대·각 사업소 등은 간부식당과 노동자식당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 노동자들의 식생활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한편 산지중대의 경우에는 이동용 막사에서 노동자는 7~8명이 1실, 중대간부는 3~4명이 1실을 사용하고 있고, 기타 일반 중대의 경우에는 고정막사에서 노동자는 3~4명이 1실, 중대간부는 1명이 1실을 사용하고 있다. 별목공들은 주로 자체적으로 제작·개조한 기구를 이용하여 취사·온수·난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생활과 관련한 세면장·목욕탕 등 부대시설의 미비와 각종 해충이 들끓는 등 위생상태 불량으로 별목공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별목공들은 열악한 의·식·주와 작업환경, 중노동,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영양실조, 피부병, 결핵, 간염 등에 걸린 환

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벌목장내 병원에는 치료시설이나 약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벌목공들은 러시아약국에서 직접 약을 구입하여 치료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벌목작업 중이나 싸움 등으로 사망하는 자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사망하는 자도 많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화장하여 북한으로 호송하였으나, 1990년경부터는 관에 넣어 냉동보관하였다가 연 2회 북한으로 호송하고 있다.

한편 재러임업대표부·연합기업소·각 사업소에서는 생활총화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총화는 10일·월·분기 등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생활총화에서는 사업실적 및 진척상황, 계획 등을 보고·토론하고, 미진사항 등은 관련부서에서 협조·독려를 하고 있다. 또한 1985년까지는 각 사업소별로 전원을 대상으로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에서 매주 토요일 4시간 이상 정치사상학습을 실시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벌목공들의 작업시간 및 능률을 고려하여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신 매주 토요일 각 사업소의 노동자문화회관 등에서 작업종료 후 노동자 전원을 집결시켜 2~3시간 정도 정세와 관련한 강연회 및 지시사항 등을 하달하고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등을 관람시킨다.

벌목장내 부패실태

벌목장은 북한의 일반 노동자들이 선망하는 일자리이다. 벌목공들은 북한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식사형편도 낫다. 따라서 혹독한 별목작업과 높은 사망율을 알면서도 별목공 지원률이 높다.

그러나 별목장 내에는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다. 별목공의 선발과정에서부터 부패한 관료주의의 폐악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임업과 관련한 담당부서는 정무원 산하의 임업부이다. 별목공은 반드시 '당성이 투철하고 처자가 있으며 부부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가려 뽑는다고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공정가격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뇌물은 일반화되어 있다. 귀순한 별목공들이 제시하는 뇌물액수는 북한내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을 상회한다.

부패한 관료주의의 폐악은 선발과정에서 그치지 않고, 별목장내 보직 및 징계, 체류기간 연장 등 인력관리와 외화벌이 및 보급 등 곳곳에 만연해 있다. 특히 안전부원들은 별목공들의 구급, 송환 등을 결정하는 생사여탈권을 지니고 있어 가장 많이 뇌물을 챙긴다. 안전부원들은 구류장에 수용된 범죄자까지도 뇌물을 제공하면 방면하고 있다.

한편 재러임업대표부는 자체적인 경비조달을 위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 외화벌이란 별목장 바깥에서 러시아인에게 품을 팔거나 장사 등 부업을 해 루블이나 달러를 버는 것을 말한다. 외화벌이는 러시아법에 저촉되는 것이나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이라 북한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1993년 "재러임업대표부는 자력갱생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각 사업소 단위별로 외화벌이에 많은 노동자들을 투입하고 있다.

외화별이는 대부분 임금이 적은 '바닥'쪽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1개 중대에서 대략 5~6명이 중대장과 중대 세포비서의 추천에 따라 사업소 안전부장의 허가를 받아 외화별이에 나설 수 있다. 이들은 20일쯤에 한 번씩 중대에 복귀해 소재지를 알린 뒤 다시 나오는데, 1개월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으면 탈출로 간주되어 수배대상이 된다. 외화별이를 나가게 되는 경우에도 중대장, 당세포, 안전부원 모두에게 뇌물을 상납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몫은 크게 줄어든다. 특히 안전부장 등 간부들은 외화별이 허가과정에서 많은 뇌물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외화별이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상적인 외화별이 외에 사향노루, 들소 등을 밀렵·밀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이후 해마다 '하바로프스크 국립동물 및 어류연구소'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북한 벌목공의 불법사냥 실태와 이에 따른 환경파괴를 정부요로에 진정하고 있고, 러시아당국도 재러임업대표부에 사냥행위를 정식 항의한 바 있다.

벌목장내 가혹행위

최근 시베리아 벌목공의 인권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러시아 주간지 「모스크바 뉴스」가 1991년 3월에 최초로 채그도

민 벌목장내 벌목공의 인권실태를 보도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국내외 여러 언론기관 및 단체들이 시베리아벌목장의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있다. 이같은 보도를 종합해 보면 벌목공들은 러시아 행정권의 통제 밖에서 군대보다 더 엄격한 관리 하에 힘든 벌목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2년 5월 영국 ITN방송은 시베리아벌목장 내에 존재하는 20여개의 사설감옥과 사형(私刑)제도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 의하면 이들 감옥에서는 정식 수사당국의 결정이나 판결없이 북한 관리부의 독자적 판단하에 강제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벌목장 내에서 발생하는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및 린치는 이곳에 파견되어 있는 사회안전부 요원들에 의해서 자행된다. 사회안전부 요원 모두는 실제로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다. 구류장은 1993년 현재 대표부·연합기업소·각 사업소에 약 20여 개 존재했던 것으로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곳에는 체제비판자, 당·간부 지시위반자, '무직업자'(일을 제대로 않고 노는 사람)나 범법행위자, 탈출시도자 등이 몇 개월씩 구금된다. 죄질이 가볍거나 벌목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상개조 후 석방되지만, 죄질이 무겁거나 탈출할 가능성이 있으면 북한으로 송환된다. 특히 탈출시도자 등 중범죄자는 가혹한 구타와 고문을 받으며, 북한으로 송환시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도록 발목에서 무릎위까지 족쇄를 채운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5월 국제사면위원회(AI)는 북한에

대해 시베리아벌목장에 구금되어 있는 북한 벌목공을 모두 석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러시아당국에 대해서도 국제인권기준과 러시아국내법을 적용하여 북한 노동자들이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면위에 따르면 지난 1992년의 경우 63명의 북한 벌목공이 벌목장을 탈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최소한 19명이 북한당국에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고, 탈북자 중 최소한 15명이 남한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구금된 벌목공들 중의 일부는 다른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는 시도만으로 감금되었기 때문에 양심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됨으로써 인권 침해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벌목공들이 송환되지 않도록 러시아당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의 「아에라」지(誌)에 의하면 러시아 인권위원회 측은 시베리아벌목장 내에 ‘특별한 건물(감옥)’이 있으며 검찰승인과 관계없이 북한 관리부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벌목공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인권위원회측의 항의에 대해 북한은 “이 건물은 ‘재교육’ 장소이며, 죄를 범한 사람은 6일~6개월간 이 곳에 수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적인 불법감금은 러시아 내에서의 외국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한편 러시아 최고회의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시베리아벌목장의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을 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

우 북·러간 임업협정을 폐기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러시아정부도 1993년 6월 북한측에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베리아 별목장을 폐쇄할 것임을 경고하고 새로운 임업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2월 24일 북한과 러시아는 별목공에 대한 여행의 자유, 별목장 공개의 의무화, 근로조건 개선 등 시베리아 북한별목장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별목장내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합의를 한 후 새로운 임업협정(1994~1996년간 유효)에 서명하였다. 또한 러시아정부는 1995년 발효된 '정치망명 절차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면서 이 법률을 북한별목공 문제와 연계시켜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러시아정부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탈출별목공들은 러시아정부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망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탈출 별목공

시베리아별목장 등을 탈출한 북한인들 가운데 현지 한국 공관을 통해 귀순의사를 타진한 사람은 현재까지 수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1995년까지 별목공 40여 명이 구소련 지역 등으로부터 한국으로 귀순하였다.

탈출 별목공들의 탈출동기는 일정하지 않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경제적 궁핍이나 빈곤 때문에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범법행위자는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에서도 제외된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환멸과 한국에 대한 동경을 느끼면서 한국으로의 망명을 고려하고 있다.

북한 벌목공들의 잇단 탈출사건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1994년 3월 30일 조사단 파견 및 망명허용 방침을 발표하자, 북한은 동년 4월 9일 임업부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일심단결의 위력을 훼손시켜 보려는 또 하나의 계획적인 민족반역 행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 담화에서 “지금 우리 벌목공들에게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떠드는 것과 같은 인권문제란 있어본 적이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벌목노동자 몇몇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납치해 간 것으로 인정하고 즉시 그에 상응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북한은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탈출 벌목공문제가 심각해지자 탈출 벌목공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회유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체포활동을 강화하였다. 회유성 조치로 대표적인 것은 김정일이 탈출하여 귀환한 벌목공에 대해서는 미처벌을 지시하였다고 선전하는 것으로서 탈북자들은 이 선전을 탈출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조치로만 인식하고 있다.

또한 1994년에는 중앙당의 책임 아래 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등지에 대규모 체포조를 파견하는가 하면, 별목장에 탈출 방지를 위한 ‘국가안전보위부 그루빠’를 파견하여 탈출 가능성이 있는 자는 북한으로 송환하였다. 그리고 탈출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탈북자를 현상수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인권위원회는 엘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러시아연방 내에서 (북한) 사회안전부가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러시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 별목공들은 은신처 확보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94년 4월 14일 한·러 외무장관회의 결과로 러시아 외무장관이 탈출 별목공들의 한국망명 허용 조치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탈출 별목공들은 러시아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체포되면 북한당국으로 인계되었다.

그러나 1995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시베리아별목장을 탈출한 별목공에 대해 최초로 ‘국제적 난민지위’를 부여하여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한국으로 망명을 허용하였다. 유엔기구가 국제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탈출 별목공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간 북한이 강력히 제기해 온 한국정부에 의한 탈출별목공 납치라는 ‘주장’의 근거는 상실되었다.

3.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북송교포들을 방문한 사람들과 귀순자들의 증언,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하면, 북송교포와 그 가족들은 북송과 함께 형편없는 음식과 의복·주택을 제공받았고, 이들의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중노동에 배정되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송된 교포들은 북한관리들에 의해 멸시적인 어조로 ‘귀포’, ‘재포’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북송교포들은 현재까지도 주민들로부터 경멸적인 대접을 받고 있다. 이같은 처우 때문에 일부 북송교포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북송교포와 ‘일본인 처’의 인권문제는 북·일 수교협상의 진행과 맞물려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고, 국제사면위원회(AI) 등 국제인권단체 등은 실종된 북송교포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같이 북송교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그간 활동해 오던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운동회」, 「일본인 처 자유왕래 촉진 의원연맹」 등에 이어 1993년 이후 북한의 민주화와 북송교포 인권개선을 위한 민간인권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도쿄), 「구원하라! 북

조선민중·긴급행동 네트워크」(RENK : 오사카) 등이 대표적인 단체이다.

북송교포 현황

제일 한국인의 북송은 1959년 8월 일본적십자와 북한적십자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거하여 1959년 12월 처음 시작되었다. 북송교포들의 비참한 삶도 1959년 12월 16일 하오 북송선 제1선이 청진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1984년 7월까지 187차에 걸쳐 일본인 처 6,630여 명(이 중 1,830여 명은 일본국적이었다)을 포함한 일본거주 한국인 9만 3,000여 명이 북한당국과 조총련에 의한 민족주의적인 호소와 '지상낙원'이라는 거짓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갔다.

북한당국은 북송 당시 일본인 처들이 2~3년에 한 번씩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돌아오거나 방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오히려 많은 북송교포 일본인 처들의 소식은 단절되었다.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처형당했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유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 복송교포 연도별 추이

연 도	계	복송교포	수반가족	
			일본인	중국인
1959	2,942	2,717	225	
60	49,036	45,094	3,937	5
61	22,801	21,027	1,773	1
62	3,497	3,811	186	
63	2,567	2,402	165	
64	1,822	1,722	99	1
65	2,255	2,159	96	
66	1,860	1,807	53	
67	1,831	1,723	108	
71	1,318	1,260	58	
72	1,003	951	22	
73	704			
74	479			
75	379			
76	256			
77	180			
78	150			
79	126			
80	40	38	2	
81	38	34	4	
82	26	24	2	
83	0			
1984	30			
합 계	93,340			7

* 1985년 이후에는 복송사업에 의한 집단 복송은 없었음.

** 내역의 공백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임.

북송교포의 생활실태

북송교포에 대한 처우는 북한당국과 조총련에 의한 선전과는 다르게 초기부터 가혹한 것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경험·능력·희망과는 관계없이 노동당이 정한 거주지와 직장에 강제 배치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송교포라는 이유로 노동당 입당이 불허되었고, 입당의 지름길이었던 인민군 입대를 거부당했다.

또한 북송된 교포들은 훌륭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거나 북한당국에 돈이나 물품을 제공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주민성분분류시 대부분 동요계층 혹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1981년 1월~4월까지 북송교포 요해사업을 실시하여 북송교포에 대한 성분을 세분화하고 항시 동향을 감시하여 왔다.

북송교포의 생활수준은 평양과 지방 거주자 간에 차이가 크고, 일본 및 해외 거주 친척의 '바라지'(돈이나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지방의 경우 강제수용소에 수감되거나 행방불명, 처형된 사람을 제외하고도 60~70% 이상의 북송교포들이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이 없어 생활수준이 보다 나은 북송교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북한주민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북송교포들의 자녀들도 엄격한 규제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일본인 방문자가 북송교포 김원조에 대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김원조는 대학입학 승인

을 담당한 위원회가 내린 불공정한 결정에 관해 김일성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한다. 그의 견해로는 그가 당과 관계가 없고 위원회에 대한 그의 가족의 기부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위원회가 그의 입학원서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그는 반혁명분자라는 혐의를 받아 공안부대에 체포되어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그 후 귀국한 교포들은 그의 소재를 찾았으나 허사였다. 그가 강제노동수용소에 억류되어 있거나 벽지 형무소에서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북송교포들은 믿고 있다.

이같은 북송교포들의 인권유린 실태는 방문자들에 의해 조금씩 외부로 전달되었다. 어느 한 재일교포가 북송된 친척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친척들은 자신들의 억눌린 삶을 다음과 같이 털어 놓았다고 폭로하였다.

우리는 살아 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는 시체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우리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모든 자유를 빼앗겼다.……만일 내가 지역경계를 넘어가고 싶으면 배속되어 있는 농업연구소의 주재원에게 정식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 일은 아주 불가능하다.……생활은 일종의 지옥인 셈이다. 밀이나 콩으로 만든 묽은 죽으로 며칠간은 버틸 수 있다. 물만 마시며 계속 일한 나날도 있었다. 나는 노예로서 살도록 강요받았다.……그래서 나는 풀, 땀, 개구리 등을 먹어 보기도 했다.……처음에는 설사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익숙해졌다.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서울: 고려원, 1990) 중에서>

이들의 이러한 실태가 일본으로 알려지자 북송자의 수도 격감하게 되었다(<표 11> 참조). 그리고 북송교포들은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점차 불평 불만의 목소리와 정치적 발언을 높여 갔다.

이에 따라 초창기 감시만 하던 북한당국은 북송교포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1995년 귀순한 오수룡의 일가족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1960년 말부터 일제 단속을 시작했고, 소원이나 항의를 제기한 북송자들을 수용소에 수감 내지는 공개처형시켰다고 한다. 또한 북한 내에서 정치적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입지가 약했던 북송교포들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귀순자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체포되어서 처형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 외에도 현재까지 강제수용소에 수감 중인 북송교포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송교포와 현금 강요

북한당국은 조총련간부나 상공인의 북송 가족을 ‘인질’로 조총련을 제어·통제하고 ‘자금원’(현금)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북송자의 재일 가족들에게도 입당, 진학, 거주지·직장 배정을 ‘미끼’로 현금모집이나 물자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북송교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보내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트럭, 엔진, 경

공업기계, 기타 장비같은 물건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기부’는 북한의 친척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도록 해주고, 거액을 현금하면 평양으로 이주가 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송교포 중 어떤 사람은 국가에 재정적으로 거액을 기부한 덕택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된 경우도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정치범 석방과 북송교포와 재일친척들을 상봉시켜주는 대가로 재일 가족·친지들에게 거액의 기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당 간부나 국가안전보위부원들이 적극 부추기고 있다고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치범 석방을 위한 ‘기부’ 금액은 5천만~1억여 엔이라고 한다. 또한 귀순자 진광호에 따르면 북송교포들이 재일 친척과 상봉하기 위해서는 5천만엔 이상의 현금이나 물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북한당국은 김부자의 생일 등 국가행사 등으로 지출의 증가가 예상될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송금을 자주 받는 북송교포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각종 훈장 등을 수여하는 대가로 현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금액폭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상봉을 조건으로 북한당국이 거액의 현금 강요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일본인 처

재일 조총련의 북송사업으로 한국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건너 갔다가 현재까지 한 번도 재일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일본인 처' 문제는 북·일간의 수교논의 초기 단계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여 일본의 '과거 보상' 문제에 버금가는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북송된 일본인 처들은 북한의 비인도적인 폐쇄정책과 성분차별로 인해 유형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재일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곤궁과 부자유, 질병의 고통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들 편지의 주내용은 식료품, 의류, 문구류, 의약품 등 생필품 요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생필품 지원 요청은 북한에서의 어려운 생활고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들의 편지에는 생필품 지원 요구 외에 일본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송금 요청은 단순히 일본인 처들의 개인적 필요도 있겠지만 북한당국이 대외채무와 외화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북송 일본인 처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인 처들이 가족·친지뿐만 아니라 약간의 지면이 있는 일본인들에게까지 일본돈이나 물품을 보내달라고 사정하는 편지들을 많이 보내왔다는 사실들은 이같은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갑자기 편지를 보내어 아저씨, 아주머니는 누군가 하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는 요시에의 딸 구미꼬입니다. 아실런지요.....여러분이 입던 헌 것이라도 좋으니 양복 상의, 바지하의, 춘하추동 무엇이든 좋으니까 보내 주십시오...
...돈은 정월전에 꼭 30만엔 보내 주세요. 소포로 보내 주세요. 소포는 어른과 아이들이 입을 것 옷감이라도 좋습니다.....돈도 금년에는 30만엔, 내년에는 그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보내 주세요.

<1990년 8월 20일 구미꼬로부터>

또한 이들 편지들은 공통적으로 제일 가족들과의 상봉과 귀향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북한적십자사를 통해 일본적십자사에 조회된 가족 안부문의가 1990년 1년 동안만도 771건이나 되었다.

이들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일본에서는 1974년 4월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운동회」가 결성되었다. 이 모임에는 2,000여 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공산당을 제외한 164명의 의원들이 「일본인 처 자유왕래 촉진 의원연맹」을 발족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운동회」(회장 이케다 후미코)는 1988년 1월부터 일본공산당을 제외한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들의 후원 아래 식료품, 의류, 문구류 등의 생필품을 북송 일본인 처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동 단체가 매년 450~600여 상자의 구호품을 보낸 결과 일

본인 처들이 일본에 보내 오는 감사의 편지의 수도 늘기 시작했다. 편지 중에는 “30년만에 설탕을 맛보게 해주어 고마웠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후미코씨라고 하는 분은 대체 누구십니까? 정말 고마웠습니다.……우동, 통조림, 설탕은 설날 먹으려고 숨겨 두었습니다. 30년만에 처음 대하는 것들입니다. 옷도 없어진 것이 많습니다. 바지 2, 원피스 1, 슈미즈 1, 스커트 2, 연장 등도 없습니다. 옛은 5개 있었습니다.……이제부터 보내실 때는 절대로 우편으로 부쳐서는 안됩니다. 세금이 너무나 비싸 찾을 수가 없습니다.……미제와 남조선 것은 전부 압수되니 넣지 말아주십시오.

<1989년 11월 황해북도 은파군에서 스즈키 다케노 올림>

이와 같은 편지의 내용은 북송 일본인 처들이 제일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북한에 구호품을 발송한 첫 해인 1988년 약 70%가 물품을 받았다고 답장을 보내왔으나 1990년 이후로는 답장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케다는 “북한당국이 서신연락조차 막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련·동구의 자유화물결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송교포 정치범수용소 수용실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북송교포의 현황과 실태를 보고하는 자료는 정치범수용소에 함께 수용되었던 귀순자의 증언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면위원회(A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승호리수용소’ 등에 북송교포의 명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요덕수용소’(15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가 최근 귀순한 강철환과 안혁의 증언에 의하면, 요덕수용소에 많은 북송교포가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곳에는 1974년 초 약 100여 세대 600여 명이 처음 수용된 이후 매년 약 100~200세대씩 수감되어, 1987년 혁명화구역인 ‘구읍 및 입석지구’ 북송교포 수용마을에는 일가족 수용자 약 800여 세대 5,000여 명과 범죄자 300여 명 등 5,300여 명이 집단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북송교포들 역시 정치범으로 몰려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끌려올 때는 아무런 재판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간에 강제 연행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날 동네에서 없어지게 되면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북송교포들은 대개 간첩혐의나 일본 및 남한 상황 등 외부사정을 북한주민들에게 유포하여 내부교란을 획책했다는 죄명으로 잡혀 오게 되나, 수용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수용소에 오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는 보위부원들은 이들을 ‘반쪽밭이’라고 냉대를 하고 북한주민 출신 수용자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하고 있다. 북송교포들은 다른 수용자들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어지는 데다 열악한 수용소 환경에 북한주민 출신보다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율이 높다고 한다.

국제사면위원회와 귀순자들을 통해 파악된 북송교포 수용자의 명단은 <표 12>와 같다.

<표 12> 북송교포 수용현황

성 명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강대용	생존불명.
강덕현	일본밀항후 북송. 아들(강명일, 강명학) 생존
강수호	출소. 북한당국은 1991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강용수	노동교양소로 이동.
강태휴	1977년 행방불명(조총련 교토본부 상공회 회장, 귀순자 강철환의 조부). 아들 강지명(강철환의 부) 영양실조로 사망. 아들(강화정, 강복남, 강창남), 손자(강미호) 생존.
고대기	생존불명.
고철립	조총련간부 아들. 1977년부터 수용소생활. 父 행방불명.
고 흠	조총련간부(교토본부 간부). 妻·아들(고철공, 고철영, 고철배, 고철립)·딸1 생존.
곽승일	母(일본인) 수용소내에서 행방불명. 父(조총련간부)·妹(곽성혜, 곽성아)생존.
곽 철 (곽종구)	조총련 오오사카 정치부 부부장. 弟(곽영호)·妻(신성옥)·아들(곽성일, 곽성균)·딸(곽향숙, 곽인숙, 곽지숙) 생존. 父는 펠라그라병으로 수용소에서 사망.
권봉학	조총련 중앙간부. 노동교양소로 이동.
김금치	가족 나고야 거주.

성명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김병훈	노동교양소로 이동. 북한당국은 1969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김성치	조총련간부. 14년 동안 수용소 생활, 출소후 자살.
김애량	남편 행방불명. 아들(백덕수) 생존.
김순란	남편(조총련 교토본부 간부) 행방불명.
김영길	오페라 가수. 북한당국은 1986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김영원	일본밀항후 복송. 아들(김광성)·딸(김순옥, 김순복) 생존.
김옥량	남편(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딸(허민향, 허민애, 허민희) 생존.
김점명	일본밀항후 복송. 월남참전용사.
김진호	1990년 현재 생존확인. 북한당국은 1977년 출국했다고 AI에 답변.
김천해	일본공산당 중앙위원. 북한당국은 1969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민영일	조총련 니이가타본부 부위원장(조직부장). 폐결핵으로 사망가능성. 북한당국은 1973년 출국했다고 AI에 답변.
민홍식	父(조총련 오사카본부 간부) 1976년 행방불명. 母·弟(민권식) 생존.
박강태	복송 이후 신의주에서 기자로 활동
박기영	학자. 妻(일본인)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딸(박순옥) 폐결핵과 영양실조로 사망가능성.
박기현	조총련 교토본부 조청위원장. 1976년 피검후 행방불명. 妻 사망. 맏아들 행방불명. 아들(박태운)·딸(박명숙, 박남숙, 박유숙) 생존.
박 무	사망가능성. 북한당국은 만수대 창작사 지도원으로 평양에 거주하고 있다고 AI에 답변.
박상기	김재원(함흥 경영위원회) 등과 1년간 수용소 생활중 간첩혐의로 행방불명.
박순달	남편(조총련 오사카본부 간부) 행방불명. 아들(현룡, 현덕룡)·딸(현인순, 현정순, 현덕순) 생존.
박순대	妻(일본인)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아들(박주식)·딸(박영미) 생존.

3.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213

성명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박은철	일본공산당 간부. 북한당국은 1973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박재호	父(조총련간부) 행방불명. 母·弟 생존.
박태종	母 일본 교토 거주.
배영삼	자살. 妻 영양실조로 사망. 아들(배정철, 배정광)·딸(배영화) 생존.
변주미	도로건설단으로 북송되었던 다른 교포들과 함께 수용.
서영칠	출소.
서일선	父(조총련 중앙위 간부) 행방불명. 母·妹(서혜원, 서혜옥, 서혜숙) 생존.
서정복	일본밀항후 북송. 간첩혐의로 수용.
성신희	父(조총련 상공인) 행방불명. 母·妹(성명화, 성경란, 성정화, 성정미) 생존.
성호일	父(조총련간부) 행방불명. 母(일본인) 영양실조로 사망. 弟(성의호, 성영호)·妹(성현숙, 성영숙) 생존.
손재석	출소.
손정	父(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母·弟(손구, 손령)·妹(손정옥) 생존.
손정의	妻·아들(손천기)·딸(손천혜) 생존. 일본에 있는 처가도움으로 출소.
송관호	조총련 니이가타출장소장. 북한당국은 1988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송귀익	노동교화소로 이동.
신목	사망가능성.
신재화	북한당국은 1975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신학식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처(중국교포)·아들(신용범)·딸(신도연, 신채연, 신서연, 신수연) 생존.
안암준	조선신용조합협회 간부. 1990년 현재 생존
안이준	생존불명.
안홍갑	조총련간부.
안홍복	母(교도본부 여맹위원장) 체포후 행방불명. 조모·삼촌 일본 거주.
엄기성	父(조총련 교도본부 간부) 1975년 피검후 행방불명. 母·弟(엄기영) 생존.

성명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오철신	교포2세.
오현 (김시택)	1990년 현재 생존.
윤덕우	1976년 행방불명(조총련 교토본부 위원장). 妻(고명옥) 사망. 아들(윤상렬)·딸(윤영희, 윤정희) 생존.
윤신의	아들(윤충남, 윤충성) 생존.
이대철	이태출(女)일 가능성. 노동교양소로 이동.
이명수	조총련 교토본부 간부.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妻(김조이) 생존.
이상천	1979년 행방불명(조총련 상공인). 妻(임춘산)·아들(이우, 이성우, 이천우) 생존.
이춘용	독신귀국. 후에 가족을 조국방문단으로 유인, 妻(이춘화)·아들(이세봉, 이철해, 이성해) 생존. 딸(이미화) 일본 동경 거주.
임팔구	妻(일본인)·아들(임덕원, 임화원) 생존.
장덕순	딸과 의사. 남편(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아들 3 생존.
장 덕	일본밀항후 복송.
장백일	父(조총련 교토본부 상공회) 1977년 행방불명. 母 생존.
장병렬	사망.
장혜영	부모 생존.
정길송	레슬링 세계선수권 보유자. 妻·아들 생존.
정우택	조총련 중앙외무 부부장. 노동교화소로 이동. 사망가능성.
정진일	일본 가라테 선수.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아들(정태봉) 생존.
정철진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妻·아들(정일봉) 생존. 딸(정영미)은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조삼량	아사.
조성기	학자.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妻(일본인)·딸(조성미, 조성에) 생존.
조인철	대학재학중 피검.
조종갑	1990년 현재 생존.
조진환	父 행방불명.
조호평	북한당국은 국제사면위원회(AI) 조사방문시(1995. 4) 조호평일가가 1974. 10 탈출 도중 사살되었다고 답변.

3.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215

성 명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천태종	아들(천홍의, 천홍대) 생존.
최경립	남편과 이혼후 수용소생활. 아들 1 생존
최성우	김일성 생일축하단으로 북송. 父 행방불명. 兄·弟 생존.
최중원	일본인(오키나와 출신). 조총련 간부의 양자로 북송.
최철호	父(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母·孀(신수임)·弟(최성진, 최순희, 최정순)·아들 3·딸 1 생존
한영덕	父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母 생존.
한학수	1976년 행방불명(조총련 오오사카본부 교육회장). 妻 사망. 아들(한성민, 한성우) 1986년 2월 출소.
허정숙	父(역사학자) 사망. 母(일본인)·弟(허영숙) 생존.
홍만득	영양실조로 사망. 妻·아들(홍룡원)·딸(홍정미) 생존.
홍박선	妻(일본인). 출소.
홍충일	父(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母·弟(홍충명, 홍충주, 홍충세)·妹(홍정미) 생존.
황정옥	妻 사망. 아들(황영수, 황영호) 생존.

* 국제사면위원회(AI)의 보고서와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거 작성.

빈 면

부 록

빈 면

1. 남북 및 남북억류자 현황

구분	계	어부	KAL	I-2정	기타
남북	3738	3662	51	20	5
억류	442	407	12	20	3

* 상기 통계는 제3국을 통한 미확인 남북억류자는 미포함
 ** 상기 통계는 사망자도 포함

2. 연도별 남북억류자 현황

연도	억류자수	누계	연도	억류자수	누계
1955	10	10	1971	16	324
1957	2	12	1972	66	390
1958	23	35	1973	6	396
1964	16	51	1974	28	424
1965	22	73	1975	(1)	425
1966	2	75	1977	(1)	426
1967	43	118	1979	1	427
1968	131	249	1980	(1)	428
1969	21	270	1987	13	441
1970	38	308	1995	1	442

* () 수치는 미확인 사항임

3. 해상납북억류자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	대성호	'55.5.28	김순귀	47	경기 용진
2	"	"	김장현	44	"
3	"	"	박표만	41	황해 해주
4	"	"	유의택	42	"
5	"	"	유장화	49	경기 용진
6	"	"	윤성우	41	황해 해주
7	"	"	이산음	41	"
8	"	"	정태현	41	"
9	"	"	조종일	40	"
10	"	"	황득식	42	경기 용진
11	해룡호	'57.11.9	마승섭	44	강원 고성
12	덕길호	'57.11.9	김성주	48	경남 통영
13	명규호	'58.4.28	박동근	33	전북 남원
14	"	"	홍복동	20	경기 용진
15	평화호	'58.4.29	김영복	20	경기 부천
16	"	"	박영근	32	강원 고성
17	다복호	'58.4.30	김명선	47	경기 연백
18	"	"	김창현	32	평북 철산
19	풍영호	'58.4.30	한진용	24	경기 부천
20	신흥호	'58.4.30	박세운	19	경기 강화
21	신복2호	'58.5.14	장순중	18	경남 삼천포
22	신명호	58.11.7	송상인	49	함남
23	"	"	송성락	52	강원 고성
24	"	"	신광필	37	함남
25	금구호	'58.11.7	박동준	49	"

번호	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6	금구호	'58.11.7	이용택	46	함남
27	"	"	허 준	45	"
28	어성호	'58.12.6	김범주	18	강원 고성
29	"	"	김여훈	18	"
30	하영호	'58.12.6	김명은	46	경북 울릉
31	"	"	김운택	34	강원 고성
32	"	"	엄광섭	46	경북 울릉
33	금능호	'58.12.6	김개락	28	함남
34	"	"	윤승범	42	강원 홍천
35	광영호	'58.12.6	김원로	53	강원 고성
36	보승2호	'64.3.1	곽종효	36	"
37	"	"	곽형주	32	"
38	"	"	권오동	34	"
39	"	"	박태길	31	"
40	"	"	송은석	48	미상
41	"	"	이종윤	34	강원 고성
42	"	"	임귀복	47	"
43	"	"	최동길	17	"
44	"	"	최문길	23	"
45	"	"	최석용	43	"
46	"	"	최준수	39	"
47	강화호	'64.7.19	박기정	26	경기 강화
48	"	"	한상준	28	"
49	부영호	'64.7.29	문성천	38	황해 장연
50	신성2호	'64.10.16	김광호	22	경남 밀양
51	"	"	유한복	20	경기 평택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52	광명호	'65.5.8	최동기	41	경북
53	대영호	'65.5.31	이정웅	22	경기 용진
54	승리호	'65.10.29	나용열	28	인천 동구
55	"	"	현근화	33	강원
56	용복호	'65.10.29	김분임	61	경기 강화
57	"	"	문정숙	25	"
58	용미호	'65.10.29	정영남	38	"
59	춘곡호	'65.11.15	정창규	35	경남 통영
60	"	"	천태옥	34	경북 영덕
61	명덕호	'65.11.20	김경수	18	강원 명주
62	"	"	김성만	32	강원 양양
63	"	"	김장원	16	강원 속초
64	"	"	김정구	19	경북 영덕
65	"	"	이병기	16	강원 고성
66	"	"	이창영	18	강원 명주
67	"	"	주인복	46	강원 고성
68	"	"	최영중	17	"
69	"	"	한동순	26	경북 영덕
70	덕삼호	'65.11.20	서봉래	43	강원 고성
71	대양79호	'65.11.26	김태운	50	미상
72	행영호	'65.11.30	김중옥	28	강원 양양
73	"	"	서석민	18	경남 거제
74	영농호	'66.1.26	황창섭	54	미상
75	대성호	'66.6.24	박팔만	17	전남 해남
76	천대11호	'67.4.12	김대곤	27	경북 경주
77	"	"	김상수	30	미상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78	천대11호	'67.4.12	김영일	23	경남 삼천포
79	"	"	김장훈	31	경북 경주
80	"	"	김홍일	25	경남 산청
81	"	"	남복이	36	경북 영덕
82	"	"	이정식	34	미상
83	"	"	장길용	27	"
84	"	"	장영식	33	"
85	"	"	정학명	37	"
86	"	"	진정팔	26	경북 영일
87	"	"	최명환	34	전남 완도
88	"	"	최종등	25	경남 거제
89	"	"	최효길	29	미상
90	창성호	'67.5.23	윤경구	18	충남 서산
91	"	"	홍승균	16	충남 태안
92	승용호	'67.5.28	이선일	17	전북 옥구
93	태영호	'67.5.29	김옥준	25	충남 서산
94	"	"	최창의	19	충남 태안
95	풍복호	'67.6.5	문경식	16	전북 군산
96	"	"	최원모	57	"
97	부성3호	'67.6.15	김봉수	27	서울 용산
98	정진호	'67.7.22	이기출	18	경북 칠곡
99	어성호	'67.11.3	오원섭	41	강원 고성
100	거성호	'67.11.3	이진영	25	"
101	금윤호	'67.11.3	김자준	37	"
102	"	"	박규채	36	경남 남해
103	"	"	박락선	28	강원 고성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04	금윤호	'67.11.3	이창식	29	강원 고성
105	"	"	이태수	32	강원 명주
106	"	"	장재천	26	강원 고성
107	해양호	'67.11.3	김상준	23	강원 고성
108	"	"	김성재	39	강원 삼척
109	"	"	마기덕	26	경남 창원
110	"	"	박능출	37	경남 거제
111	"	"	홍순권	19	강원 명주
112	청진호	'67.12.20	김남현	27	강원 고성
113	"	"	김성호	29	"
114	"	"	기양덕	29	"
115	"	"	오명복	29	강원 명주
116	"	"	이정해	48	강원 속초
117	"	"	이춘식	30	강원 고성
118	광명호	'67.12.25	한해진	40	강원 고성
119	경호	'68.1.6	김주철	29	강원 동해
120	홍익호	'68.1.6	양상을	41	강원 명주
121	행덕호	'68.1.11	박복택	21	경남 충무
122	기성호	'68.3.10	서수중	27	강원 속초
123	창영호	'68.4.17	강명보	18	경남 통영
124	"	"	김학래	26	강원 양양
125	"	"	김홍록	16	강원 고성
126	"	"	이영석	18	경남 남해
127	"	"	이옥진	43	전남 여수
128	"	"	이태용	49	강원 양양
129	"	"	정장백	19	강원 고성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30	종진호	'68.4.27	김용봉	17	강원 고성
131	"	"	윤무출	38	"
132	"	"	임규철	25	강원 강릉
133	"	"	정연태	27	강원 삼척
134	신진호	'68.5.9	김정일	32	강원 명주
135	"	"	오성재	37	서울 성동
136	대성호	'68.5.23	김홍균	24	강원 명주
137	"	"	임병혁	40	강원 양양
138	"	"	한기돌	14	강원 명주
139	춘덕3호	'68.5.29	김재구	21	전남 목포
140	성운호	'68.5.29	김명학	47	경북 울진
141	"	"	김수근	32	경북 영일
142	"	"	박만복	43	강원 명주
143	"	"	이상원	42	"
144	"	"	장창수	35	강원 강릉
145	순덕호	'68.6.1	공문익	37	경기 강화
146	부길호	'68.6.6	김경두	34	전남 여천
147	"	"	김길오	32	전남 완도
148	"	"	김일오	26	전남 여천
149	"	"	박명옥	16	"
150	영신호	'68.6.6	고주봉	30	전남 영암
151	"	"	김이배	31	전남 진도
152	"	"	오판철	32	전북 장수
153	"	"	최동진	20	충남 보령
154	덕산호	'68.6.6	고종현	21	경기 부천
155	"	"	김용길	18	전남 해남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56	덕산호	'68.6.6	서종술	37	경기 부천
157	"	"	이선주	26	충남 당진
158	"	"	이일남	27	경기 부천
159	풍년호	'68.6.8	고준수	25	강원 고성
160	"	"	김병호	17	경남 김해
161	"	"	김영옥	13	강원 고성
162	"	"	김용기	19	경북 예천
163	"	"	신성옥	26	강원 삼척
164	"	"	박형중	15	전남 고흥
165	"	"	이운길	13	강원 고성
166	"	"	전인만	15	"
167	"	"	조문호	33	"
168	"	"	주재근	25	"
169	"	"	최동일	26	전남 완도
170	영신호	'68.6.12	김도경	23	전남 목포
171	"	"	서용식	27	전남 영광
172	해양호	'68.6.16	김광운	36	경기 부천
173	취영호	'68.6.17	김광근	24	경기 용진
174	"	"	손은주	22	경기 부천
175	"	"	손철순	19	경기 용진
176	복성6호	'68.6.17	김영구	21	경기 강화
177	"	"	유병춘	31	인천 동구
178	"	"	홍상표	20	경기 강화
179	성북2호	'68.6.21	김창현	45	인천 중구
180	"	"	심광식	28	전북 군산
181	경흥호	'68.6.23	김진경	37	경기 용진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82	경흥호	'68.6.23	오남문	30	서울
183	"	"	이기준	27	경기 용진
184	"	"	이일환	41	인천 중구
185	경북호	'68.6.29	김대만	25	전남 광주
186	"	"	이상은	21	경기 강화
187	"	"	차종석	22	전남 신안
188	금용호	'68.7.2	고종환	16	북제주 우도
189	"	"	김남호	18	강원 양양
190	"	"	김명희	13	경기 가평
191	"	"	김용수	15	강원 고성
192	"	"	윤능산	17	북제주 우도
193	"	"	윤두찬	39	전북 완주
194	"	"	이은권	42	경남 울산
195	"	"	주영삼	17	강원 속초
196	"	"	함태천	29	강원 고성
197	신양호	'68.7.2	곽도상	13	충북 영동
198	"	"	김용권	19	경남 통영
199	"	"	박성문	25	강원 고성
200	"	"	장 면	14	"
201	"	"	황두호	18	전북 남원
202	창명호	'68.7.2	김철규	14	강원 고성
203	"	"	선우석	52	서울 성동
204	"	"	이종범	47	강원 고성
205	"	"	이춘만	31	서울 성동
206	"	"	유강열	32	강원 고성
207	"	"	조규영	13	"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08	백구17호	'68.7.4	윤귀남	21	전남 진도
209	"	"	이영철	27	전남 신안
210	태양호	'68.7.10	김진영	48	경남 울주
211	"	"	조석원	15	전북 김제
212	만복호	'68.7.10	강봉운	64	강원 고성
213	"	"	박홍식	17	경북 영덕
214	"	"	장진구	13	강원 고성
215	"	"	최승복	13	"
216	"	"	최원수	16	경북 영일
217	가덕호	'68.7.10	김상윤	35	충북 보은
218	"	"	박종업	55	강원 고성
219	"	"	이해준	34	충남 부여
220	"	"	전석구	24	강원 인제
221	덕성호	'68.7.12	김남국	20	전남 진도
222	"	"	김춘식	26	전남 신안
223	"	"	여인억	46	인천 중구
224	"	"	이양진	23	전남 신안
225	대복1호	'68.8.6	김재욱	47	강원 고성
226	"	"	한택선	35	"
227	"	"	황명삼	25	경북 울릉
228	덕수2호	'68.8.7	강명화	25	경남 남해
229	"	"	김광수	25	"
230	"	"	김인철	17	경남 충무
231	"	"	엄기만	12	강원 속초
232	"	"	장을선	49	충북 청주
233	"	"	정한수	37	경남 진양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34	용명호	'68.10.30	함기남	20	강원 고성
235	해진호	'68.10.30	김종우	27	경북 월성
236	영창호	'68.10.30	김이득	22	경북 영일
237	"	"	임재동	29	경남 거제
238	"	"	진기봉	22	강원 강릉
239	어재호	'68.10.30	전만수	27	강원 고성
240	양진호	'68.11.7	고순철	29	강원 명주
241	"	"	이영기	22	"
242	동일호	'68.11.7	이태운	25	경북 영덕
243	해승호	'68.11.7	김동주	22	강원 명주
244	준호	'68.11.7	문원표	46	"
245	원일호	'68.11.7	이기석	26	"
246	영덕호	'68.11.8	안수선	21	경북 영덕
247	수진호	'68.11.8	전도민	17	강원 양양
248	"	"	정연배	42	경남 진주
249	풍성호	'68.11.8	김종순	22	강원 고성
250	신흥2호	'69.5.1	한종남	19	전남 진도
251	홍덕호	'69.5.5	이광원	18	전남 신안
252	순호	'69.5.10	이동우	27	충남 홍성
253	"	"	임판길	31	전북 옥구
254	"	"	정홍해	28	충남 보령
255	신성호	'69.6.10	이덕표	37	충남 서천
256	"	"	정오석	30	전북 옥구
257	"	"	천문석	38	전북 부안
258	"	"	최두수	35	경남 남해
259	봉산21호	'70.4.29	강병일	29	충남 당진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60	봉산21호	'70.4.29	김태량	27	전남 완도
261	"	"	엄승영	34	경남 울주
262	"	"	정영철	15	전남 진도
263	"	"	최종을	19	전남 강진
264	봉산22호	'70.4.29	박휘만	22	경북 포항
265	"	"	이재근	33	경남 울산
266	"	"	황석균	30	충남 태안
267	금강산호	'70.6.22	권혁근	33	강원 속초
268	"	"	김홍동	14	강원 정선
269	"	"	오관수	28	광주 광산
270	"	"	이순봉	28	경북 울진
271	남일7호	'70.6.30	김일영	36	경남 마산
272	만복1호	'70.7.8	사명남	33	경기 용진
273	만복2호	'70.7.8	최상일	36	"
274	무진호	'70.7.8	민경신	33	"
275	"	"	변호신	33	"
276	"	"	장춘빈	47	"
277	휘영37호	'71.1.6	김상대	28	경남 거제
278	"	"	김인천	27	경기 용진
279	"	"	김창덕	19	경남 거제
280	"	"	박길윤	23	경남 남해
281	"	"	박동순	38	"
282	"	"	박정구	34	전북 군산
283	"	"	박천향	42	경남 남해
284	"	"	송옥천	29	"
285	"	"	정목살이	28	"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86	휘영37호	'71.1.6	정세울	48	경남 거제
287	"	"	정완상	19	"
288	"	"	황영식	50	"
289	창동1호	'71.5.14	김재수	26	강원 양양
290	해행1호	'71.12.25	강흥기	39	전남 여천
291	"	"	김봉식	32	경남 통영
292	"	"	황영천	26	경기 가평
293	동진호	'72.1.10	김정옥	26	전남 여천
294	안영35호	'72.2.4	김계홍	57	전남 완도
295	"	"	김달영	36	"
296	"	"	김소웅	28	부산 영도
297	"	"	김철주	39	경남 남해
298	"	"	박달모	23	"
299	"	"	박장현	20	전남 여천
300	"	"	신태용	27	전남 보성
301	"	"	위춘환	35	전남 완도
302	"	"	이상록	19	경북 영풍
303	"	"	이평일	44	전남 여천
304	"	"	전승철	22	부산 서대신
305	"	"	정동배	18	서울 종로
306	"	"	정태갑	33	경남 남해
307	"	"	최부영	19	"
308	안영36호	'72.2.4	공순경	41	"
309	"	"	김동식	36	경북 칠곡
310	"	"	김두선	33	경남 남해
311	"	"	김석만	25	전남 보성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312	안영36호	'72.2.4	김일봉	21	경남 남해
313	"	"	김임권	31	"
314	"	"	김취남	23	전남 완도
315	"	"	동병순	18	경남 남해
316	"	"	배현호	29	"
317	"	"	박복만	40	경남 통영
318	"	"	박상국	26	"
319	"	"	이홍섭	32	경남 남해
320	금해11호	'72.5.4	강여진	16	경기 용진
321	해영2호	'72.5.12	김순식	48	경남 김해
322	유풍호	'72.6.9	김정길	30	강원 명주
323	"	"	남무수	32	강원 평창
324	"	"	남정열	39	강원 속초
325	"	"	방승도	37	경남 창원
326	"	"	배민호	48	경남 진해
327	"	"	이수석	30	강원 속초
328	"	"	이원재	32	전남 해남
329	"	"	임창규	19	강원 명주
330	"	"	최성현	44	경북 경주
331	금성3호	'72.8.14	김영식	21	경남 남해
332	"	"	송래규	35	경북 영일
333	일진6호	'72.8.21	김대봉	31	"
334	"	"	이석룡	38	경남 거제
335	오대양61호	'72.12.28	김옥률	17	"
336	"	"	김용철	45	경기 수원
337	"	"	김의준	25	경남 거제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338	오대양61호	'72.12.28	김일만	17	경남 거제
339	"	"	김종원	47	"
340	"	"	김천구	39	"
341	"	"	김태준	17	"
342	"	"	박두남	38	"
343	"	"	박양수	14	"
344	"	"	박영석	34	"
345	"	"	박영종	22	"
346	"	"	박용갑	32	경남 남해
347	"	"	서석기	32	경남 거제
348	"	"	이공희	20	서울 영등포
349	"	"	이재명	34	경남 거제
350	"	"	최영근	49	"
351	오대양62호	'72.12.28	강소동	29	"
352	"	"	박두현	35	"
353	"	"	서영구	38	부산 영도
354	"	"	안수영	37	전북 전주
355	"	"	유경춘	45	경남 거제
356	"	"	정건목	20	경남 남해
357	"	"	정도평	26	경남 거제
358	"	"	정형래	20	"
359	신진1호	'73.7.27	김순남	25	경기 용진
360	"	"	김영희	47	미상
361	"	"	나기용	52	경기 용진
362	"	"	서득수	37	경북 상주
363	"	"	조순래	32	경기 용진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364	신진1호	'73.7.27	조인우	18	경기 용진
365	수원32호	'74.2.15	김근식	19	전남 진도
366	"	"	김생림	49	"
367	"	"	김월근	26	전남 광주
368	"	"	김용기	34	전남 진도
369	"	"	김용길	18	전남 완도
370	"	"	김종관	23	전남 해도
371	"	"	박경원	31	전남 진도
372	"	"	송민경	53	경남 남해
373	"	"	안병진	28	경북 상주
374	"	"	유용석	22	전북 완주
375	"	"	이대홍	20	경북 남해
376	"	"	이성용	28	전남 영암
377	"	"	이천석	28	경북 영덕
378	"	"	정유석	30	전남 고흥
379	수원33호	'74.2.15	고광희	34	인천 북성
380	"	"	기노석	18	전남 무안
381	"	"	김용건	27	경북 군위
382	"	"	김재봉	21	전남 진도
383	"	"	김중식	27	"
384	"	"	김현남	24	"
385	"	"	박남주	36	"
386	"	"	박종주	45	인천 남구
387	"	"	백홍선	27	전남 장흥
388	"	"	임태환	44	부산 영도
389	"	"	장영환	27	경기 군포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남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390	수원33호	'74.2.15	정중윤	34	전남 진도
391	"	"	최복열	33	"
392	"	"	최영철	18	충남 청양
393	천광호	'75.8.8	김두익	45	강원 원주
394	통영호	'77.5.10	최장근	35	경남 충무
395	해왕7호	'80.1.26	김환용	22	전남 완도
396	동진27호	'87.1.15	강희근	35	경기 강화
397	"	"	김순근	44	전남 여수
398	"	"	김상섭	35	전남 고흥
399	"	"	김영현	22	부산 진구
400	"	"	노성호	25	충북 청원
401	"	"	박광현	38	경남 함양
402	"	"	양용식	27	전남 담양
403	"	"	임국재	32	경북 안동
404	"	"	정일남	30	전남 고흥
405	"	"	진영호	26	경남 합천
406	"	"	최종석	40	부산 사하
407	"	"	추영수	55	인천 동구

4. 해군 1-2정 승무원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408	해군 I -2정	'70.6.5	권덕찬	22	전남 광주
409	"	"	김기강	28	강원 원주
410	"	"	김태종	23	경기 평택
411	"	"	도종무	22	경북 청도
412	"	"	맹길수	24	전남 해남
413	"	"	문석영	23	제주
414	"	"	박재수	23	경남 밀양
415	"	"	서금성	22	인천 동구
416	"	"	신영훈	24	서울 중구
417	"	"	이덕주	29	경남 진양
418	"	"	이재영	23	전북 정읍
419	"	"	임성우	37	경북 의성
420	"	"	전해열	21	경북 청도
421	"	"	정광모	23	서울 중구
422	"	"	정수일	41	"
423	"	"	정원석	24	부산 서구
424	"	"	조진오	23	부산 해운대
425	"	"	조태봉	34	경기 연백
426	"	"	최응호	25	인천 중구
427	"	"	함영주	24	서울 중구

5. 항공납북억류자

번호	항공기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428	KAL	'69.12.11	김봉주	33	충남 아산
429	"	"	성경희	28	서울 종로
430	"	"	유병화	42	서울 용산
431	"	"	이동기	53	강원 강릉
432	"	"	임철수	55	강원 양구
433	"	"	장기영	48	서울 종로
434	"	"	정경숙	28	서울 중구
435	"	"	제현덕	43	서울 성북
436	"	"	조옥희	48	경기 평택
437	"	"	최석만	42	서울 영등포
438	"	"	최정웅	32	강원 원주
439	"	"	황 원	38	인천 동구

6. 기타

번호	납북장소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주소)
440	노르웨이	'78.4.13	고상문	29	서울 성동
441	오스트리아	'87.7.20	이재환	24	경남 마산
442	중국	'95.7.9	안승운	50	(서울 구로)



R0005809

민족통일 연구원